(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67회

총회회순

■ 표 제 ■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1~3)

일시 : 2017년 9월 19일(화) 오후 3시 ~ 9월 22일(금)

장소 :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강당

주소 :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삼룡동)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빈종이)

제67회
총회 회순

차 례

1. 총회 순서 ---------- 4

1.1 집회시간 ---------- 4

1.2 성찬예식 ---------- 4

1.3 날짜별 총회 순서---------- 5

2. 총대 명단 ---------- 9

2.1 노회 총대 명단 ---------- 9

2.2 자문위원 명단 ---------- 14

3. 공천위원회 보고 ---------- 15

3.1 상임위원 · 협력위원 ---------- 15

3.2 총회 재판국 ---------- 22

3.3 총회 감사국 ---------- 22

3.4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 22

3.5 총회 교육원 ---------- 22

3.6 고신총회세계선교회 ---------- 22

3.7 총회 은급재단 ----------23

3.8 노회별 분류 ---------- 24

4. 헌의위원회 보고 ---------- 36

4.1 발의한 노회 및 기관 중심으로 제목분류 --- 36

4.2 배정받은 위원회 및 부서 중심으로 제목분류 -- 43

4.3 배정받은 위원회 및 부서 중심으로 상정안건 전문 - 52

1. 총 회 순 서

1.1 집회시간

(1) 새벽 기 도 회 : 매일 06:00-06:30
(2) 오전 회의시간 : 매일 09:00-11:50
(3) 경 건 회 : 매일 12:00-12:30
(4) 오후 회의시간 : 매일 14:00-17:30
(5) 저녁 회의시간 : 매일 19:00-21:30
(6) 휴 식 시 간 : 매 사무처리 시간 중 10분씩

1.2 성찬예식

(1) 배병위원, 배잔위원

심홍섭(거 창) 김봉영(경 기) 강기삼(경 남) 윤대산(경남남부)
하종선(경남중부) 최낙종(경 동) 이승교(경 북) 김성기(경 서)
조대형(경 인) 박병윤(김 해) 천헌주(남마산) 강윤판(남부산)
박종묵(남서울) 조동래(대 구) 신경철(동대구) 박재길(동부산)
윤범진(동서울) 김휘안(마 산) 윤강석(부 산) 이석창(북부산)
이광연(서 경) 최연주(서부산) 손정률(서울남) 전덕수(수 도)
조진호(수도남) 서만훈(영 남) 이광수(울 산) 변충섭(울산남)
황지선(전남동부) 조춘호(전 라) 최영철(전북호남) 채원석(중 부)
김종대(중부산) 석대중(진 주) 배은환(진 해) 임태정(충 청)

◉ 배병, 배잔위원은 개회예배 20분전에 강당(개회예배 장소)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배병, 배잔 위원은 매년 장로 부노회장, 총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진행 준비 담당은 총회 부서기입니다.
◉ 성찬준비는 안양일심교회에서 담당하였습니다.

1.3 날짜별 총회 순서

제 1 일 : 9월 19일(화)

1. 개회예배 (15:00 - 16:00) **인도: 총회장 배굉호 목사**

묵상기도	----------	다 같 이
찬 송	---------- 35장(큰 영화로신 주) ---------	다 같 이
기 도	----------	부총회장 이계열 장로
성경봉독	---------- 히브리서 12:1~3 ----------	인 도 자
찬 양	----------	대 양 교 회 찬양대
설 교	---------- “예수를 바라보자” ----------	부총회장 김상석 목사
찬 송	----- 94장(주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다 같 이
성찬예식	----------	총회장 배굉호 목사
헌 금	---- 디아스포라 고신교회 세우기 후원 -----	다 같 이
헌 금 송	----------	대 양 교 회 찬 양 대
축 도	----------	총회장 배굉호 목사

2. 사무처리 1 (16:10 – 17:30)

1)회원점명 ----------	서 기 권 오 헌 목사
2)개회선언 ----------	회 장 배 굉 호 목사
3)절차보고 ----------	서 기 권 오 헌 목사
4)선거관리위원회 보고 ----------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5)공천위원회 보고 ----------	서 기 권 오 헌 목사
6)선거위원 선정 ----------	회 장 지 명
7)임원 · 유지재단 감사 · 학교법인 감사 선거 ----------	회 원
8)은급재단 이사 · 감사, 세계선교회 이사 선거 --------	회 원
9)임원 이 · 취임 ----------	신 구 임 원
10)인사(유지재단 감사, 학교법인 감사, 은급재단 이사 · 감사, 세계선교회 이사) ----------	신 구 이 사 · 감 사
11)광고위원(1인).안내위원(2인).출결점검위원(2인) --------	회 장 지 명
12)회의 진행 안내 ----------	서 기

3. 사무처리 2 (19:00 - 21:30)

1)헌의위원회 보고
2)유안건 보고
3)감사국 보고
4)상임위원회 조직 및 안건 심의
※ 조직보고는 서기에게 서면보고로 대신함

제 2 일 : 9월 20일(수)

1. 새벽기도회(06:00-06:30)

인 도 : 서기　　설 교 : 서상기 목사 (대양주총회 총회장)

2. 사무처리 3 (09:00-9:50)

1)운영위원회 보고　　2)임원회 보고
3)각 노회 상황 보고　　4)사무총장 보고
5)교계 연합기관 상황 보고

※ 특별부(재판국, 감사국, 선거관리위원회, 세계선교회, 교육원) 조직 및 안건 심의

3. 사절단 및 내빈 인사 (10:00-11:50)

1)외국 친선 사절 인사　　2)재미, 대양주, 유럽총회 총회장 인사
3)교계 연합기관, 기관장 인사　4)교단 파송 군목 인사
5)해외 파송 선교사 인사

4. 경건회(12:00-12:30)

인　도 : 목사 부총회장　　설 교 : 박의석 목사 (유럽총회 총회장)

★ 기 념 촬 영

5. 사무처리 4 (14:00-15:00)

1)회원 점명 ---------- 서　　기
2)재판국 보고　　3)교육원 보고　　4)고신총회세계선교회 보고 5) 본회 배정안건 처리

6. 사무처리 5 (15:10-17:30)

1)부회 조직 및 안건 심의

※ 조직보고는 서기에게 서면보고로 대신함

7. 수요 예배 및 종교개혁500주년 대회 (19:00-20:00)

인도 : 김상석 목사　　기도 : 안재경 목사(종교개혁500주년준비위원회 서기)
설교 : 이상규 교수(고신대 교수)　선언문 발표 : 박영호 목사(종교개혁500주년준비위원장)

※ 총대 은퇴하시는 분 송별인사

8. 사무처리 6 (20:10-21:30)

1)특별위원회 보고　(1)종교개혁500주년준비위원회 (2)단군상대책위원회
(3)찬송가위원회 (4)고신재난긴급구호단 (5)고신총회설립60주년기념성경주석간행위원회
(6)통일한국대비위원회 (7)이사 · 감사추천위원회 (8)총회성경연구소
(9)합신과의교류추진위원회 (10)고신대학교신학연계과정조정위원회
(11)헌법해설수정위원회 (12)SFC조사위원회 (13)통합기념교회설립추진위원회

제 3 일 : 9월 21일(목)

1. 새벽기도회(06:00-06:30)

인 도 : 부서기　　설교 : 윤대식 목사 (재미총회 총회장)

2. 사무처리 7 (09:00-11:50)

1)부회 보고

(1)행정법규부

(2)신학교육부

(3)전도선교부

(4)재정복지부

3. 경건회(12:00-12:30)

인도 : 목사 부총회장　　설교 : 주준태 목사 (송도제일교회, 전임 총회장)

4. 사무처리 8 (14:00-17:30)

1)회원 점명 ----------서　　기

2)유지재단 감사 및 이사회 보고

3)고려학원 감사 및 이사회 보고

4)은급재단 감사 및 이사회 보고

5. 사무처리 9 (19:00-21:30)

1) 미진 안건 처리

제 4 일 : 9월 22일(금)

1. 새벽기도회(06:00-06:30)

인 도 : 회록서기　　설교 : 김일훈 목사 (동서울노회 노회장)

2. 사무처리 10 (09:00-12:30)

1)회원 점명 ----------서　　기
2)미진안건처리
3)내회장소결정
4)회록채택 ----------회록서기

3. 폐회 예배

인　　도 : 목사 부총회장
기　　도 : 장로 부총회장
설　　교 : 총회장
축　　도 : 총회장

■ 표　　제 ■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1~3)

2. 총대 명단

2.1 노회 총대 명단

(1) 거창노회(8명)

목사 : 윤길수 손부익 정영화 정신선

장로 : 심홍섭 정종균 황원조 강성문

(2) 경기노회(14명)

목사 : 신민범 박성대 문재섭 최성은 김승제 박성규 김윤종

장로 : 김봉영 민병현 구본철 강덕중 이정창 남효순 김현호

(3) 경남노회(18명)

목사 : 황규용 박영호 황은선 박갑태 제인호 박규남 강만구 황권철 남일우

장로 : 김수중 박광석 송선규 강기삼 양재한 박두양 이종선 정남진 이수준

(4) 경남남부노회(18명)

목사 : 김희종 최학무 박정곤 임현택 이태석 강광만 이성만 김종철 김영일

장로 : 옥부수 여종환 옥금석 박칠수 옥순련 장세봉 황삼도 심영식 윤대산

(5) 경남중부노회(10명)

목사 : 이석종 박은득 김월목 김경수 오성주

장로 : 하종선 구양서 이우석 손희철 신영기

(6) 경동노회(12명)

목사 : 김경걸 권인영 오상열 김경영 박재훈 박용철

장로 : 최낙종 김호용 양용원 윤경우 김태환 이상태

(7) 경북노회(10명)

목사 : 강학근 황금산 신성현 정용달 김종대

장로 : 신대종 이승교 윤진보 김태열 허영명

(8) 경서노회(10명)

목사 : 오인수 천석길 유흥식 박희재 장종환

장로 : 김성기 배 흡 이진태 최광배 여영목

(9) 경안노회(6명)
목사 : 황장수 정원대 이우근
장로 : 전상준 김명한 이은호

(10) 경인노회(10명)
목사 : 김윤하 옥경석 정연규 김광주 최원국
장로 : 조대형 마인호 김성회 김상철 김석규

(11) 김해노회(26명)
목사 : 하영운 손현보 이수재 안진출 신철성 김갑수 강동명 김세중 권준오 박현근
이일기 이성우 신성철
장로 : 조익래 김안식 이성만 강성구 최종립 신말성 박병윤 차문식 이학찬 송재철
심영석 정시조 정인규

(12) 남마산노회(8명)
목사 : 원대연 박성실 진창설 김원기
장로 : 박흥석 천헌주 이선광 최용주

(13) 남부산노회(14명)
목사 : 권종오 김상석 윤현주 신수복 이국희 유연수 박진용
장로 : 강윤판 김병조 김신명 최효섭 서상열 박신득 김갑식

(14) 남서울노회(12명)
목사 : 한진환 이한식 이영한 정현구 강영진 김낙춘
장로 : 박종묵 장상환 박익천 오정웅 김성식 민형기

(15) 대구노회(18명)
목사 : 김은식 이상일 조승희 김덕오 장지철 박평식 이문근 민병욱 이규익
장로 : 박영호 송호문 박용길 최수우 배종규 조동래 이신득 박은주 조성용

(16) 동대구노회(12명)
목사 : 김종석 구빈건 김하연 윤창규 소재운 오현기
장로 : 신경철 최교윤 하칠태 김정수 강봉수 변경진

(17) 동부산노회(18명)
목사 : 배굉호 김성복 정영락 김승욱 황만선 박성배 김윤근 김재은 강필중
장로 : 이선영 박재길 오준현 임정식 나성대 김광진 김종화 박팔만 황선열

(18) 동서울노회(8명)
목사 : 김일훈 한상귀 김광석 권오헌
장로 : 윤범진 추경일 이계열 박명수

(19) 마산노회(14명)
목사 : 강영구 허성동 김종인 오승균 이상선 이병권 김희신
장로 : 김휘안 박영태 박두용 하수룡 김시갑 조우성 김맹환

(20) 부산노회(30명)
목사 : 이한의 주준태 박삼우 제인출 김희택 정우진 박재수 이태백 김창도 김인수
김종선 김용로 곽용동 이은수 양승기
장로 : 서일권 주석근 성경옥 강충만 김점태 윤강석 강흥식 김시환 주수언 배영철
박호영 윤해근 김상윤 임종섭 박태규

(21) 북부산노회(6명)
목사 : 신수인 임경학 김규환
장로 : 박규하 이석창 박종호

(22) 서경노회(12명)
목사 : 김수구 서영국 이성열 전종철 조원근 유상현
장로 : 최철수 이광연 안승현 김영훈 이교선 김영현

(23) 서부산노회(32명)
목사 : 김현규 안영호 우남복 정은석 최정일 박래영 오세우 손규식 김경헌 박흥석
고신원 이용창 김문훈 김병수 김은태 배병택
장로 : 배동환 김진욱 박윤봉 윤재식 김광웅 손영도 최연주 허성렬 강동헌 김범중
성민제 강수청 정성옥 강정석 김성배 문병철

(24) 서울노회(22명)
목사 : 손덕현 조현철 황신기 허남수 한영만 구동도 안경환 김길배 김명수 최영완 남교희
장로 : 우신권 이재욱 김수관 민병문 이문규 김정민 심병귀 윤이중 이상덕 김현진 이윤복

(25) 서울남노회(6명)
목사 : 오성재 박창환 김관태
장로 : 손정률 박수덕 이계배

(26) 수도노회(10명)
목사 : 김홍석 윤광중 김성규 정진철 신원하
장로 : 김충무 전덕수 신진목 임상열 박동언

(27) 수도남노회(14명)
목사 : 문천회 문용만 박은조 안병만 진민현 박진섭 정재호
장로 : 전우수 조진호 유재무 심봉식 이정만 이덕명 박선규

(28) 영남노회(2명)
목사 : 신병철
장로 : 서만훈

(29) 울산노회(20명)
목사 : 신상현 이우탁 이종관 송성근 정근두 이광수 김두삼 김경호 조국현 옥재부
장로 : 박동출 이광수 류서희 박은환 배동한 강영기 김홍주 김광현 황석주 정성수

(30) 울산남노회(10명)
목사 : 김형태 권동화 남신현 김영용 이영춘
장로 : 전종철 김승렬 박근수 변충섭 최영식

(31) 전남동부노회(6명)
목사 : 김종민 김종철 임진웅
장로 : 황지선 박종윤 김연조

(32) 전라노회(10명)
목사 : 안점수 전원호 김수천 송희영 김영두
장로 : 조춘호 이주영 윤복현 박영성 한인국

(33) 전북호남노회(4명)
목사 : 양문화 이성국
장로 : 정기영 최영철

(34) 제주노회(2명)
목사 : 강성조
장로 : 김형길

(35) 중부노회(6명)
목사 : 송병국 천 환 이성용
장로 : 이상백 채원석 최석용

(36) 중부산노회(20명)
목사 : 김철봉 옥수석 안용운 정명운 박문철 정은일 지원기 인태웅 박성도 하정오
장로 : 김종대 한길윤 안 민 강상균 안경섭 정기준 박호준 임재복 김시근 김현수

(37) 진주노회(20명)
목사 : 이성남 송신영 정태진 최연철 정영도 전부경 공은성 김선엽 최은장 하태경
장로 : 석대중 김재현 박명상 황성진 양현식 강달수 한신조 이경수 강도훈 박대식

(38) 진해노회(6명)
목사 : 박화열 황봉린 강영민
장로 : 배은환 박남지 이춘근

(39) 충청노회(14명)
목사 : 곽창대 오병욱 정영호 방영남 김기오 진영부 손종환
장로 : 임태정 김동수 강명기 김명한 이용식 조용운 여병안

목사 249명/ 장로 249명/ 합계 498명

2.2 자문위원 명단

(전임 총회장, 부총회장 다음 가나다 순)

(1) 은퇴목사(20명)

류윤욱 박치덕 정판술 이금조 정순행 조긍천 원종록 이 선 조재태 이한석
권오정 김성천 이용호 윤희구 박정원 조석연 이무영 원현호 김명석 이경렬

(2) 은퇴장로(20명)

강경숙 박종석 한상철 김정남 김봉갑 이우성 김국호 김삼관 신주복 성보경
김창대 엄송우 차철규 김종익 오성률 정규태 박승호 박영석 정하율 석차륭

(3) 해외 은퇴목사(3명)

김만우 박재영 홍관표 (가나다 순)

3. 공천위원회 보고

총회 공천위원회는 총회규칙 제14조 2항에 의하여 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 각 노회장으로 구성되며, 2017년 7월 27일 대구 성동교회당에서 소집되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보고합니다.

3.1 상임위원•협력위원

(목사 장로 구분 후 노회 가나다 순)

1-행정법규부

1-1 행정위원회

1년조 : 오인수(경서)	최낙종(경동, 장로)	전우수(수도남, 장로)
2년조 : 최학무(경남남부)	김갑수(김해)	곽용동(부산)
3년조 : 박성배(동부산)	김현규(서부산)	박용길(대구, 장로)

♣ 행정위원회 협력위원

손부익(거창)	김윤하(경인)	김은식(대구)
구빈건(동대구)	남교희(서울)	김홍석(수도)
옥재부(울산)	권동화(울산남)	양문화(전북호남)
안용운(중부산)	이성남(진주)	이정창(경기, 장로)
김수중(경남, 장로)	하종선(경남중부, 장로)	조익래(김해, 장로)
강윤판(남부산, 장로)	박종묵(남서울, 장로)	김시환(부산, 장로)
박규하(북부산, 장로)	이교선(서경, 장로)	김진욱(서부산, 장로)
정성수(울산, 장로)	한길윤(중부산, 장로)	이경수(진주, 장로)
강명기(충청, 장로)		

1-2 섭외위원회

1년조 : 정진철(수도)	남신현(울산남)	민병현(경기, 장로)
2년조 : 박정곤(경남남부)	최원국(경인)	이우석(경남중부, 장로)
3년조 : 한진환(남서울)	김수천(전라)	박명상(진주, 장로)

♣ 섭외위원회 협력위원

제인호(경남)	권인영(경동)	정원대(경안)
김상석(남부산)	김승욱(동부산)	박삼우(부산)
이성열(서경)	김문훈(서부산)	문천회(수도남)
정명운(중부산)	곽창대(충청)	장세봉(경남남부, 장로)

여영목(경서, 장로) 이성만(김해, 장로) 박영호(대구, 장로)
최교윤(동대구, 장로) 박팔만(동부산, 장로) 이계열(동서울, 장로)
김점태(부산, 장로) 김광웅(서부산, 장로) 김수관(서울, 장로)
손정률(서울남, 장로) 박은환(울산, 장로) 채원석(중부, 장로)
강상균(중부산, 장로)

1-3 미래정책연구위원회

1년조 : 김광주(경인) 이태백(부산) 나성대(동부산, 장로)
2년조 : 조승희(대구) 정영호(충청) 김성기(경서, 장로)
3년조 : 한영만(서울) 하정오(중부산) 김휘안(마산, 장로)

♣ 미래정책연구위원회 협력위원

문재섭(경기) 박영호(경남) 김영일(경남남부)
오성주(경남중부) 손현보(김해) 김낙춘(남서울)
박래영(서부산) 김경호(울산) 공은성(진주)
심홍섭(거창, 장로) 이상태(경동, 장로) 신대종(경북, 장로)
정시조(김해, 장로) 최효섭(남부산, 장로) 하칠태(동대구, 장로)
임종섭(부산, 장로) 윤재식(서부산, 장로) 우신권(서울, 장로)
전덕수(수도, 장로) 이정만(수도남, 장로) 전종철(울산남, 장로)
윤복현(전라, 장로) 임재복(중부산, 장로) 박남지(진해, 장로)

1-4 법제위원회

1년조 : 박규남(경남) 임현택(경남남부) 김신명(남부산, 장로)
2년조 : 임경학(북부산) 최은장(진주) 이은호(경안, 장로)
3년조 : 김하연(동대구) 오세우(서부산) 조진호(수도남, 장로)

♣ 법제위원회 협력위원

황금산(경북) 박희재(경서) 안진출(김해)
유연수(남부산) 강영구(마산) 제인출(부산)
안점수(전라) 정은일(중부산) 박화열(진해)
구본철(경기, 장로) 정남진(경남, 장로) 옥순련(경남남부, 장로)
신말성(김해, 장로) 천헌주(남마산, 장로) 조동래(대구, 장로)
이선영(동부산, 장로) 강흥식(부산, 장로) 이광연(서경, 장로)
배동환(서부산, 장로) 이재욱(서울, 장로) 배동한(울산, 장로)
김형길(제주, 장로) 정기준(중부산, 장로) 한신조(진주, 장로)

2-신학교육부

2-1 신학위원회

1년조 : 박성실(남마산)	전원호(전라)	옥수석(중부산)
2년조 : 허성동(마산)	신병철(영남)	오병욱(충청)
3년조 : 김세중(김해)	장지철(대구)	정근두(울산)

♣ 신학위원회 협력위원

정신선(거창)	황은선(경남)	김종철(경남남부)
김경수(경남중부)	오상열(경동)	정용달(경북)
천석길(경서)	황장수(경안)	옥경석(경인)
윤현주(남부산)	정현구(남서울)	윤창규(동대구)
김윤근(동부산)	권오헌(동서울)	주준태(부산)
신수인(북부산)	정은석(서부산)	허남수(서울)
신원하(수도)	문용만(수도남)	이영춘(울산남)
임진웅(전남동부)	이성용(중부)	김선엽(진주)

2-2 이단대책위원회

1년조 : 신민범(경기)	허영명(경북, 장로)	이신득(대구, 장로)
2년조 : 안영호(서부산)	이성국(전북호남)	박익천(남서울, 장로)
3년조 : 김종선(부산)	안경환(서울)	임태정(충청, 장로)

♣ 이단대책위원회 협력위원

박용철(경동)	장종환(경서)	이수재(김해)
권종오(남부산)	김덕오(대구)	서영국(서경)
박흥석(서부산)	송성근(울산)	박문철(중부산)
방영남(충청)	이수준(경남, 장로)	여종환(경남남부, 장로)
김태환(경동, 장로)	마인호(경인, 장로)	박병윤(김해, 장로)
김광진(동부산, 장로)	윤범진(동서울, 장로)	김맹환(마산, 장로)
박호영(부산, 장로)	강수청(서부산, 장로)	이계배(서울남, 장로)
유재무(수도남, 장로)	김연조(전남동부, 장로)	박호준(중부산, 장로)
강도훈(진주, 장로)		

2-3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

1년조 : 강영진(남서울)	안병만(수도남)	강충만(부산, 장로)
2년조 : 강만구(경남)	이상선(마산)	김관태(서울남)

3년조 : 이국희(남부산) 김영훈(서경, 장로) 조춘호(전라, 장로)

♣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 협력위원

이성만(경남남부)	이석종(경남중부)	김종대(경북)
신철성(김해)	김원기(남마산)	정영락(동부산)
이은수(부산)	손규식(서부산)	이종관(울산)
하태경(진주)	강덕중(경기, 장로)	박광석(경남, 장로)
김호용(경동, 장로)	이진태(경서, 장로)	강성구(김해, 장로)
박신득(남부산, 장로)	배종규(대구, 장로)	김정수(동대구, 장로)
최연주(서부산, 장로)	김정민(서울, 장로)	강영기(울산, 장로)
박근수(울산남, 장로)	안 민(중부산, 장로)	김명한(충청, 장로)

2-4 교육지도위원회

1년조 : 유흥식(경서) 김성복(동부산) 황봉린(진해)

2년조 : 김경걸(경동) 우남복(서부산) 류서희(울산, 장로)

3년조 : 송신영(진주) 양재한(경남, 장로) 차문식(김해, 장로)

♣ 교육지도위원회 협력위원

박성규(경기)	김희종(경남남부)	정연규(경인)
강동명(김해)	이영한(남서울)	이규익(대구)
김종인(마산)	이한의(부산)	손덕현(서울)
지원기(중부산)	강성문(거창, 장로)	황삼도(경남남부, 장로)
이승교(경북, 장로)	전상준(경안, 장로)	김갑식(남부산, 장로)
김종화(동부산, 장로)	박명수(동서울, 장로)	서일권(부산, 장로)
허성렬(서부산, 장로)	심병귀(서울, 장로)	박동언(수도, 장로)
한인국(전라, 장로)	최영철(전북호남, 장로)	강달수(진주, 장로)

3-전도선교부

3-1 국내전도위원회

1년조 : 박은득(경남중부) 김안식(김해, 장로) 민병문(서울, 장로)

2년조 : 신상현(울산) 김종철(전남동부) 천 환(중부)

3년조 : 윤길수(거창) 김종석(동대구) 조대형(경인, 장로)

♣ 국내전도위원회 협력위원

남일우(경남)	김경영(경동)	권준오(김해)
한상귀(동서울)	박재수(부산)	김경헌(서부산)

윤광중(수도) 박은조(수도남) 정태진(진주)
김기오(충청) 강기삼(경남, 장로) 윤대산(경남남부, 장로)
최광배(경서, 장로) 김성식(남서울, 장로) 최수우(대구, 장로)
오준현(동부산, 장로) 하수룡(마산, 장로) 윤강석(부산, 장로)
박종호(북부산, 장로) 안승현(서경, 장로) 정성옥(서부산, 장로)
김홍주(울산, 장로) 변충섭(울산남, 장로) 김현수(중부산, 장로)

3-2 다문화선교위원회

1년조 : 김병수(서부산) 서상열(남부산, 장로) 김동수(충청, 장로)
2년조 : 황권철(경남) 신성현(경북) 강성조(제주)
3년조 : 김윤종(경기) 김광석(동서울) 옥부수(경남남부, 장로)

♣ 다문화선교위원회 협력위원

박현근(김해) 박평식(대구) 황만선(동부산)
정우진(부산) 조현철(서울) 오성재(서울남)
조국현(울산) 김종민(전남동부) 송희영(전라)
인태웅(중부산) 구양서(경남중부, 장로) 김성회(경인, 장로)
이학찬(김해, 장로) 최용주(남마산, 장로) 오정웅(남서울, 장로)
강봉수(동대구, 장로) 김시갑(마산, 장로) 윤해근(부산, 장로)
김영현(서경, 장로) 김범중(서부산, 장로) 윤이중(서울, 장로)
김충무(수도, 장로) 심봉식(수도남, 장로) 석대중(진주, 장로)

3-3 군경목선교위원회

1년조 : 이광수(울산) 김형태(울산남) 배은환(진해, 장로)
2년조 : 이우근(경안) 김희택(부산) 유상현(서경)
3년조 : 박재훈(경동) 추경일(동서울, 장로) 김종대(중부산, 장로)

♣ 군경목선교위원회 협력위원

박성대(경기) 강광만(경남남부) 이성우(김해)
소재운(동대구) 오승균(마산) 김규환(북부산)
이용창(서부산) 김길배(서울) 진민현(수도남)
전부경(진주) 남효순(경기, 장로) 박두양(경남, 장로)
손희철(경남중부, 장로) 배 흡(경서, 장로) 송재철(김해, 장로)
이선광(남마산, 장로) 박은주(대구, 장로) 박재길(동부산, 장로)
배영철(부산, 장로) 성민제(서부산, 장로) 이상덕(서울, 장로)

서만훈(영남, 장로) 황석주(울산, 장로) 여병안(충청, 장로)

3-4 농어촌위원회

1년조 : 진창설(남마산) 최연철(진주) 박동출(울산, 장로)
2년조 : 양승기(부산) 전종철(서경) 최영식(울산남, 장로)
3년조 : 강학근(경북) 이일기(김해) 강동헌(서부산, 장로)

♣ 농어촌위원회 협력위원

정영화(거창) 황규용(경남) 신수복(남부산)
이한식(남서울) 민병욱(대구) 강필중(동부산)
김희신(마산) 배병택(서부산) 황신기(서울)
손종환(충청) 심영식(경남남부, 장로) 신영기(경남중부, 장로)
양용원(경동, 장로) 김명한(경안, 장로) 김석규(경인, 장로)
심영석(김해, 장로) 주수언(부산, 장로) 강정석(서부산, 장로)
김현진(서울, 장로) 박선규(수도남, 장로) 박영성(전라, 장로)
정기영(전북호남, 장로) 김시근(중부산, 장로) 양현식(진주, 장로)

3-5 통일한국대비위원회

1년조 : 하영운(김해) 김철봉(중부산) 옥금석(경남남부, 장로)
2년조 : 최정일(서부산) 김명수(서울) 박영태(마산, 장로)
3년조 : 박진용(남부산) 김재은(동부산) 신진목(수도, 장로)

♣ 통일한국대비위원회 협력위원

김승제(경기) 원대연(남마산) 김인수(부산)
조원근(서경) 박진섭(수도남) 김두삼(울산)
김영두(전라) 정영도(진주) 강영민(진해)
황원조(거창, 장로) 이종선(경남, 장로) 김태열(경북, 장로)
민형기(남서울, 장로) 조성용(대구, 장로) 변경진(동대구, 장로)
김상윤(부산, 장로) 문병철(서부산, 장로) 이윤복(서울, 장로)
박수덕(서울남, 장로) 이광수(울산, 장로) 김승렬(울산남, 장로)
최석용(중부, 장로) 박대식(진주, 장로) 이용식(충청, 장로)

4-재정복지부

4-1 예결산위원회

1년조 : 정종균(거창, 장로) 임정식(동부산, 장로) 박윤봉(서부산, 장로)

2년조 : 김성규(수도)	송병국(중부)	성경옥(부산, 장로)
3년조 : 이문근(대구)	송선규(경남, 장로)	박종윤(전남동부, 장로)

♣ 예결산위원회 협력위원

최성은(경기)	이태석(경남남부)	신성철(김해)
오현기(동대구)	김일훈(동서울)	김용로(부산)
고신원(서부산)	최영완(서울)	김영용(울산남)
박성도(중부산)	김현호(경기, 장로)	윤진보(경북, 장로)
최종립(김해, 장로)	김병조(남부산, 장로)	장상환(남서울, 장로)
송호문(대구, 장로)	박두용(마산, 장로)	주석근(부산, 장로)
최철수(서경, 장로)	손영도(서부산, 장로)	이덕명(수도남, 장로)
김광현(울산, 장로)	황성진(진주, 장로)	조용운(충청, 장로)

4-2 사회복지위원회

1년조 : 정재호(수도남)	이문규(서울, 장로)	안경섭(중부산, 장로)
2년조 : 박창환(서울남)	신경철(동대구, 장로)	김재현(진주, 장로)
3년조 : 김월목(경남중부)	김봉영(경기, 장로)	이석창(북부산, 장로)

♣ 사회복지위원회 협력위원

박갑태(경남)	이상일(대구)	배굉호(동부산)
이병권(마산)	김창도(부산)	김수구(서경)
김은태(서부산)	구동도(서울)	이우탁(울산)
진영부(충청)	박칠수(경남남부, 장로)	윤경우(경동, 장로)
김상철(경인, 장로)	정인규(김해, 장로)	박흥석(남마산, 장로)
황선열(동부산, 장로)	조우성(마산, 장로)	박태규(부산, 장로)
김성배(서부산, 장로)	임상열(수도, 장로)	황지선(전남동부, 장로)
이주영(전라, 장로)	이상백(중부, 장로)	이춘근(진해, 장로)

3.2 총회 재판국

밑줄은 새로 공천된 분

1년조 : 이태석(경남남부) 유연수(남부산) 윤광중(수도)
이성남(진주) 오준현(동부산, 장로)
2년조 : 정우진(부산) 조국현(울산) 박두용(마산, 장로)
최영철(전북호남, 장로) 한길윤(중부산, 장로)
3년조 : 박갑태(경남) 김경수(경남중부) 김낙춘(남서울)
김덕오(대구) 이계열(동서울, 장로)

3.3 총회 감사국

1년조 : 권동화(울산남) 박규하(북부산, 장로)
2년조 : 박문철(중부산) 서일권(부산, 장로) 김진욱(서부산, 장로)
3년조 : 권오헌(동서울) 우신권(서울, 장로)

3.4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1년조 : 황신기(서울) 최수우(대구, 장로) 최철수(서경, 장로)
2년조 : 정신선(거창) 곽창대(충청) 박신득(남부산, 장로)
3년조 : 박규남(경남) 구빈건(동대구) 조우성(마산, 장로)

3.5 총회 교육원

*총회파송이사
1년조 : 이영한(남서울) 김하연(동대구) 정영도(진주)
윤진보(경북, 장로) 조익래(김해, 장로)
3년조 : 박영호(경남) 권종오(남부산) 오성재(서울남)
박흥석(남마산, 장로)

3.6 고신총회세계선교회

2년조 : 황은선(경남) 원대연(남마산) 천석길(경서)
옥부수(경남남부, 장로) 김태환(경동, 장로)

당연직이사 : 이성구(서부산) 곽창대(충청) 김성운(신대원)
김종국 본부장

■목사 이사 4명 선출 (2배수, 득표수 4위는 2년조)

하영운(김해, 동서남북) 소재운(동대구, 대구샘물) 정영락(동부산, 동항)
강영구(마산, 마산동광) 이한의(부산, 은항) 안영호(서부산, 환희)
이성용(중부, 수원사명) 공은성(진주, 삼천포)

■장로 이사 2명 선출 (2배수)

심홍섭(거창, 함양중앙) 장상환(남서울, 잠실중앙) 이정만(수도남, 샘물)
김승렬(울산남, 울산한빛)

3.7 총회은급재단

2년조 : 황권철(경남) 권동화(울산남) 신인범(부산)
김태호(경남중부, 장로) 박순천(수도, 장로)

■목사 이사 2명 선출 (3배수 6명)

손부익(거창, 거창제일) 이태석(경남남부, 신명) 박용철(경동, 창대)
이우근(경안, 안동서남) 정연규(경인, 석천) 하태경(진주, 삼한)

■장로 이사 2명 선출 (3배수 6명, 득표수 2위는 2년조)

임정식(동부산, 범내) 이석창(북부산, 금산공원) 우신권(서울, 서울보은)
박은환(울산, 새샘) 박영성(전라, 광산) 조용운(충청, 서촌)

■목사 감사 1명 선출 (3배수 3명)

오인수(경서, 초곡) 이성우(김해, 조눌) 박평식(대구, 강북중앙)

■장로 감사 1명 선출 (3배수 3명)

박두용(마산, 마산성산) 박호준(중부산, 부곡중앙) 배은환(진해, 진해동부)

3.8 노회별 분류

1) 거창노회(8명)

목사 : 윤길수(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3) 손부익(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은급이사후보) 정영화(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협력) 정신선(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협력, 선거관리위원회2)

장로 : 심홍섭(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협력,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이사후보) 정종균(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1) 황원조(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협력) 강성문(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협력)

2) 경기노회(14명)

목사 : 신민범(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1) 박성대(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협력) 문재섭(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협력) 최성은(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협력) 김승제(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협력) 박성규(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협력) 김윤종(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3)

장로 : 김봉영(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3) 민병현(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1) 구본철(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협력) 강덕중(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협력) 이정창(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남효순(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협력) 김현호(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협력)

3) 경남노회(18명)

목사 : 황규용(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협력) 박영호(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협력, 총회교육원3) 황은선(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협력, 고신총회세계선교회2) 박갑태(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협력, 재판국3) 제인호(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박규남(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1, 선거관리위원회3) 강만구(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2) 황권철(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2, 은급재단2) 남일우(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협력)

장로 : 김수중(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박광석(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협력) 송선규(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3) 강기삼(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협력) 양재한(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3) 박두양(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협력) 이종선(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협력) 정남진(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협력) 이수준(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4) 경남남부노회(18명)

목사 : 김희종(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협력) 최학무(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2) 박정곤(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2) 임현택(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1) 이태석(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협력, 재판국1, 은급이사후보) 강광만(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협력) 이성만(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협력) 김종철(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협력) 김영일(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협력)

장로 : 옥부수(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3, 고신총회세계선교회2) 여종환(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옥금석(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1) 박칠수(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협력) 옥순련(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협력) 장세봉(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황삼도(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협력) 심영식(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협력) 윤대산(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협력)

5) 경남중부노회(10명)

목사 : 이석종(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협력) 박은득(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1) 김월목(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3) 김경수(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협력, 재판국3) 오성주(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협력)

장로 : 하종선(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구양서(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협력) 이우석(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2) 손희철(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협력) 신영기(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협력)

6) 경동노회(12명)

목사 : 김경걸(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2) 권인영(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오상열(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협력) 김경영(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협력) 박재훈(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3) 박용철(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은급이사후보)

장로 : 최낙종(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1) 김호용(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협력) 양용원(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협력) 윤경우(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협력) 김태환(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고신총회세계선교회2) 이상태(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협력)

7) 경북노회(10명)

목사 : 강학근(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3) 황금산(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협력) 신성현(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2) 정용달(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협력) 김종대

(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협력)

장로 : 신대종(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협력) 이승교(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협력) 윤진보(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협력, 총회교육원1) 김태열(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협력) 허영명(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1)

8) 경서노회(10명)

목사 : 오인수(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1, 은급감사후보) 천석길(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협력, 고신총회세계선교회2) 유흥식(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1) 박희재(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협력) 장종환(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장로 : 김성기(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2) 배 흡(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협력) 이진태(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협력) 최광배(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협력) 여영목(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9) 경안노회(6명)

목사 : 황장수(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협력) 정원대(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이우근(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2, 은급이사후보)

장로 : 전상준(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협력) 김명한(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협력) 이은호(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2)

10) 경인노회(10명)

목사 : 김윤하(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옥경석(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협력) 정연규(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협력, 은급이사후보) 김광주(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1) 최원국(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2)

장로 : 조대형(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3) 마인호(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김성회(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협력) 김상철(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협력) 김석규(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협력)

11) 김해노회(26명)

목사 : 하영운(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1,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이사후보) 손현보(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협력) 이수재(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안진출(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협력) 신철성(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협력) 김갑수(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2) 강동명(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협력) 김세중(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3) 권준오(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협

력) 박현근(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협력) 이일기(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3) 이성우(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협력, 은급감사후보) 신성철(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협력)

장로 : 조익래(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총회교육원1) 김안식(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1) 이성만(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강성구(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협력) 최종립(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협력) 신말성(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협력) 박병윤(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차문식(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3) 이학찬(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협력) 송재철(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협력) 심영석(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협력) 정시조(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협력) 정인규(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협력)

12) 남마산노회(8명)

목사 : 원대연(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협력, 고신총회세계선교회2) 박성실(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1) 진창설(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1) 김원기(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협력)

장로 : 박흥석(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협력, 총회교육원3) 천헌주(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협력) 이선광(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협력) 최용주(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협력)

13) 남부산노회(14명)

목사 : 권종오(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총회교육원3) 김상석(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윤현주(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협력) 신수복(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협력) 이국희(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3) 유연수(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협력, 재판국1) 박진용(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3)

장로 : 강윤판(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김병조(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협력) 김신명(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1) 최효섭(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협력) 서상열(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1) 박신득(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협력, 선거관리위원회2) 김갑식(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협력)

14) 남서울노회(12명)

목사 : 한진환(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3) 이한식(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협력) 이영한(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협력, 총회교육원1) 정현구(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협력) 강영진(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1) 김낙춘(행정법규부, 미래정

책연구위원회협력, 재판국3)

장로 : 박종묵(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장상환(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협력,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이사후보) 박익천(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2) 오정웅(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협력) 김성식(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협력) 민형기(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협력)

15) 대구노회(18명)

목사 : 김은식(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이상일(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협력) 조승희(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2) 김덕오(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재판국3) 장지철(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3) 박평식(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협력, 은급감사후보) 이문근(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3) 민병욱(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협력) 이규익(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협력)

장로 : 박영호(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송호문(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협력) 박용길(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3) 최수우(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협력, 선거관리위원회1) 배종규(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협력) 조동래(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협력) 이신득(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1) 박은주(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협력) 조성용(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협력)

16) 동대구노회(12명)

목사 : 김종석(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3) 구빈건(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선거관리위원회3) 김하연(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3, 총회교육원1) 윤창규(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협력) 소재운(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협력,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이사후보) 오현기(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협력)

장로 : 신경철(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2) 최교윤(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하칠태(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협력) 김정수(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협력) 강봉수(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협력) 변경진(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협력)

17) 동부산노회(18명)

목사 : 배굉호(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협력) 김성복(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1) 정영락(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협력,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이사후보) 김승욱(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황만선(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협력) 박성배(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3) 김윤근(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협력) 김

재은(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3) 강필중(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협력)

장로 : 이선영(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협력) 박재길(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협력) 오준현(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협력, 재판국1) 임정식(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1, 은급이사후보) 나성대(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1) 김광진(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김종화(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협력) 박팔만(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황선열(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협력)

18) 동서울노회(8명)

목사 : 김일훈(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협력) 한상귀(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협력) 김광석(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3) 권오헌(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협력, 감사국3)

장로 : 윤범진(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추경일(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3) 이계열(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재판국3) 박명수(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협력)

19) 마산노회(14명)

목사 : 강영구(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협력,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이사후보) 허성동(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2) 김종인(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협력) 오승균(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협력) 이상선(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2) 이병권(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협력) 김희신(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협력)

장로 : 김휘안(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3) 박영태(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2) 박두용(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협력, 재판국2, 은급감사후보) 하수룡(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협력) 김시갑(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협력) 조우성(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협력, 선거관리위원회3) 김맹환(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20) 부산노회(30명)

목사 : 이한의(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협력,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이사후보) 주준태(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협력) 박삼우(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제인출(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협력) 김희택(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2) 정우진(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협력, 재판국2) 박재수(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협력) 이태백(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1) 김창도(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협력) 김인수(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협력) 김종선(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3) 김용로(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협력) 곽용동(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2) 이은수(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협력) 양승기(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2)

장로 : 서일권(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협력, 감사국2) 주석근(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협력) 성경옥(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2) 강충만(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1) 김점태(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윤강석(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협력) 강흥식(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협력) 김시환(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주수언(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협력) 배영철(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협력) 박호영(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윤해근(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협력) 김상윤(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협력) 임종섭(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협력) 박태규(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협력)

21) 북부산노회(6명)

목사 : 신수인(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협력) 임경학(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2) 김규환(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협력)

장로 : 박규하(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감사국1) 이석창(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3, 은급이사후보) 박종호(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협력)

22) 서경노회(12명)

목사 : 김수구(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협력) 서영국(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이성열(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전종철(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2) 조원근(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협력) 유상현(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2)

장로 : 최철수(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협력, 선거관리위원회1) 이광연(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협력) 안승현(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협력) 김영훈(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3) 이교선(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김영현(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협력)

23) 서부산노회(32명)

목사 : 김현규(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3) 안영호(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2,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이사후보) 우남복(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2) 정은석(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협력) 최정일(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2) 박래영(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협력) 오세우(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3) 손규식(신학

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협력) 김경헌(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협력) 박흥석(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고신원(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협력) 이용창(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협력) 김문훈(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김병수(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1) 김은태(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협력) 배병택(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협력)

장로 : 배동환(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협력) 김진욱(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감사국2) 박윤봉(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1) 윤재식(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협력) 김광웅(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손영도(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협력) 최연주(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협력) 허성렬(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협력) 강동헌(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3) 김범중(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협력) 성민제(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협력) 강수청(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정성옥(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협력) 강정석(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협력) 김성배(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협력) 문병철(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협력)

24) 서울노회(22명)

목사 : 손덕현(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협력) 조현철(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협력) 황신기(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협력, 선거관리위원회1) 허남수(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협력) 한영만(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3) 구동도(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협력) 안경환(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3) 김길배(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협력) 김명수(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2) 최영완(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협력) 남교희(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장로 : 우신권(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협력, 감사국3, 은급이사후보) 이재욱(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협력) 김수관(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민병문(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1) 이문규(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1) 김정민(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협력) 심병귀(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협력) 윤이중(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협력) 이상덕(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협력) 김현진(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협력) 이윤복(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협력)

25) 서울남노회(6명)

목사 : 오성재(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협력, 총회교육원3) 박창환(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2) 김관태(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2)

장로 : 손정률(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박수덕(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협력) 이계배(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26) 수도노회(10명)

목사 : 김홍석(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윤광중(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협력, 재판국1) 김성규(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2) 정진철(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1) 신원하(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협력)

장로 : 김충무(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협력) 전덕수(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협력) 신진목(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3) 임상열(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협력) 박동언(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협력)

27) 수도남노회(14명)

목사 : 문천회(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문용만(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협력) 박은조(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협력) 안병만(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1) 진민현(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협력) 박진섭(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협력) 정재호(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1)

장로 : 전우수(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1) 조진호(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3) 유재무(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심봉식(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협력) 이정만(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협력,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이사후보) 이덕명(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협력) 박선규(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협력)

28) 영남노회(2명)

목사 : 신병철(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2)

장로 : 서만훈(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협력)

29) 울산노회(20명)

목사 : 신상현(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2) 이우탁(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협력) 이종관(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협력) 송성근(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정근두(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3) 이광수(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1) 김두삼(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협력) 김경호(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협력) 조국현(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협력, 재판국2) 옥재부(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장로 : 박동출(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1) 이광수(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협

력) 류서희(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2) 박은환(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은급이사후보) 배동한(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협력) 강영기(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협력) 김홍주(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협력) 김광현(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협력) 황석주(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협력) 정성수(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30) 울산남노회(10명)

목사 : 김형태(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1) 권동화(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감사국1, 은급재단2) 남신현(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1) 김영용(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협력) 이영춘(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협력)

장로 : 전종철(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협력) 김승렬(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협력,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이사후보) 박근수(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협력) 변충섭(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협력) 최영식(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2)

31) 전남동부노회(6명)

목사 : 김종민(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협력) 김종철(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2) 임진웅(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협력)

장로 : 황지선(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협력) 박종윤(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3) 김연조(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32) 전라노회(10명)

목사 : 안점수(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협력) 전원호(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1) 김수천(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3) 송희영(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협력) 김영두(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협력)

장로 : 조춘호(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3) 이주영(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협력) 윤복현(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협력) 박영성(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협력, 은급이사후보) 한인국(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협력)

33) 전북호남노회(4명)

목사 : 양문화(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이성국(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2)

장로 : 정기영(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협력) 최영철(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협력, 재판국2)

34) 제주노회(2명)

목사 : 강성조(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2)

장로 : 김형길(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협력)

35) 중부노회(6명)

목사 : 송병국(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2) 천 환(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2) 이성용(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협력,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이사후보)

장로 : 이상백(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협력) 채원석(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최석용(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협력)

36) 중부산노회(20명)

목사 : 김철봉(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1) 옥수석(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1) 안용운(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정명운(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박문철(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감사국2) 정은일(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협력) 지원기(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협력) 인태웅(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협력) 박성도(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협력) 하정오(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3)

장로 : 김종대(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3) 한길윤(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재판국2) 안 민(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협력) 강상균(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안경섭(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1) 정기준(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협력) 박호준(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은급감사후보) 임재복(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협력) 김시근(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협력) 김현수(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협력)

37) 진주노회(20명)

목사 : 이성남(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재판국1) 송신영(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3) 정태진(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협력) 최연철(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1) 정영도(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협력, 총회교육원1) 전부경(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협력) 공은성(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협력,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이사후보) 김선엽(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협력) 최은장(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2) 하태경(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협력, 은급이사후보)

장로 : 석대중(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협력) 김재현(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

2) 박명상(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3) 황성진(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협력) 양현식(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협력) 강달수(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협력) 한신조(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협력) 이경수(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강도훈(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박대식(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협력)

38) 진해노회(6명)

목사 : 박화열(행정법규부, 법제위원회협력) 황봉린(신학교육부, 교육지도위원회1) 강영민(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협력)

장로 : 배은환(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1, 은급감사후보) 박남지(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협력) 이춘근(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협력)

39) 충청노회(14명)

목사 : 곽창대(행정법규부, 섭외위원회협력, 선거관리위원회2) 오병욱(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2) 정영호(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2) 방영남(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협력) 김기오(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협력) 진영부(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협력) 손종환(전도선교부, 농어촌위원회협력)

장로 : 임태정(신학교육부, 이단대책위원회3) 김동수(전도선교부, 다문화선교위원회1) 강명기(행정법규부, 행정위원회협력) 김명한(신학교육부,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협력) 이용식(전도선교부, 통일한국대비위원회협력) 조용운(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협력, 은급이사후보) 여병안(전도선교부, 군경목선교위원회협력)

4. 헌의위원회 보고

총회 헌의위원회는 총회규칙 제14조 3항에 의하여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회계 6인으로 구성되며 2017년 8월 10일 총회회관에서 소집되어 상정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보고합니다.

순서

4.1 발의한 노회 및 위원회, 기관 중심으로 제목 분류
4.2 배정받은 위원회 및 부서 중심으로 제목 분류
4.3 배정받은 위원회 및 부서 중심으로 상정안건 전문

4.1 발의한 노회 및 위원회, 기관 중심으로 제목 분류

▌경남노회 (5건)

1.총회출판국 발전을 위한 방안 강구 ☞ 본회
2.총회장과 유지재단 이사장의 분리 ☞ 본회
3.교회 연합기관의 대표 파송 ☞ 행정위원회
4.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와 그의 부활복음(부활교) 사상 연구 ☞ 이단대책위원회
5.인터넷 신문 '글로리아 타임즈' 운영자 구요한 목사의 사상과 활동에 대한 조사 연구 ☞ 이단대책위원회

▌경북노회(1건)

1.총회운영위원회 위원에 총회특별국 회계 포함의 건 ☞ 행정위원회

▌김해노회(2건)

1.총회표준문서양식 보충 청원 ☞ 행정위원회
2.인터콥 관련자 총회 임원후보가 될 수 있는가? ☞ 선거관리위원회

▌남마산노회(1건)

1.교회정치 중 목사고시 과목 수정 청원 건 ☞ 법제위원회

▌남부산노회(2건)

1.총회교육원과 총회출판국의 합병 청원 ☞ 본회
2.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고신교회의 입장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의 견해... 청원 ☞ 신학위원회

▌동부산노회(4건)

1.총회 임원 입후보자의 공적 홍보기회 확대를 위한 총회선거조례... 개정 청원 ☞ 선거관리위원회

2.총회 상임위원회 전도선교부 내에 '자립성장위원회' 신설 청원 ☞ 법제위원회

3....신학대학원 한 동기회에서 두 사람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신설 청원 ☞ 법제위원회

4.장로가 미조직교회로 이거... 시무장로의 직을 유지하도록 헌법 개정 청원 ☞ 법제위원회

▌동서울노회(1건)

1.최소 총대 인원 목사3명, 장로3명 ☞ 행정위원회

▌마산노회(1건)

1.대학시험 주일시행 반대의 건 ☞ 교육지도위원회

▌부산노회(1건)

1.헌법 제170조 1항(기본재산의 처분) 개정 청원 ☞ 유지재단이사회

▌서경노회(1건)

1.부활교 김성로 목사의 사상과 이단성 문제...에 관한 총회 조사 요청의 건 ☞ 이단대책위원회

▌서부산노회(2건)

1.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고신의 입장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의 견해... 청원 ☞ 신학위원회

2.박기천 전도사 순교기념관 건립 허락 청원 ☞ 본회

▌서울노회(2건)

1....목사 면직한 자를 타 노회가 목사 회원으로... 질의의 건 ☞ 행정위원회

2.총회부서(총회교육원과 총회출판국)의 합병 청원 및... 청원 ☞ 본회

▌수도노회(5건)

1.동성애에 대한 총회차원의 입장표명과... 요청의 건 ☞ 신학교육부

2.김성로 목사, 구요한 목사, 이인규 씨의 이단성 연구조사 청원의 건 ☞ 이단대책위원회

3.학교법인 이사 임기 조정의 건 ☞ 행정위원회

4.총회 기관장들을 총회언권회원으로 하자는 청원의 건 ☞ 행정위원회

5.개혁주의 장로교회 절기들에 관한 질의의 건 ☞ 신학위원회

▌수도남노회(4건)

1.기독교학교(설립추진)위원회 설치 청원 건 ☞ 교육지도위원회

2....고려신학대학원 동기회 내 두사람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칙 개정 하는 건 ☞ 법제위원회

3.교회정치 제53조 외국거주 목사 청빙에 대한 조항 개정 건 ☞ 미래정책연구위원회

4.선거조례 제3장 제6조 개정(장로부총회장 임직 10년 이상, 이사 감사 장로 5년) 건 ☞ 선거관리위원회

▌전라노회 (3건)

1.원로목사 추대절차 확인 요청 ☞ 법제위원회

2.위임목사 자격 취득 시기 개선 요청 ☞ 법제위원회

3.교회정치에서 '장년교인' 기준의 명확한 설정 ☞ 법제위원회

▌제주노회 (1건)

1.총회 최소 총대수 증원(목사3인, 장로3인) 청원 건 ☞ 행정위원회

▌진주노회 (1건)

1.순교자기념관 건립을 위한 한 주일 헌금... 재확인 청원 ☞ 예결산위원회

▌충청노회 (2건)

1.총회 상비부(이사회, 위원회 포함)의 구성에 관한 건 ☞ 법제위원회

2.국내전도위원회의 교회개척훈련원 대상 규정 시행에 대한 유예 건의 건 ☞ 국내전도위원회

▌미래정책연구위원회 (17건)

1.성도들이 많은 자녀를 낳도록 총회장의 감사장 수여 청원 ☞ 행정법규부

2.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의 자격에 관한 연령제한 수정 청원 건 ☞ 법제위원회

3.위임목사 위임식 간소화 청원 건 ☞ 행정위원회

4.공천위원회의 특별 위원 공천에 관한 방법 개선 청원 건 ☞ 선거관리위원회

5.고려학원 이사, 감사 추천방식 투명화를 위한 청원 건 ☞ 선거관리위원회

6.총회 발전을 위한 공청회(연2회) 정례화 청원 건 ☞ 예결산위원회

7.총회 파송 선교사들의 해외 재산 파악 청원 ☞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이사회

8.노회원 명부 정리의 일원화 방안 결의 청원 ☞ 행정위원회

9.삼천교회 운동으로 인한 개척교회의 재산관리 청원 건 ☞ 유지재단이사회

10.총회장의 총회유지재단 이사장직 겸직에 대한 재고 청원 건 ☞ 본회
11.학교법인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 개정 청원 건 ☞ 행정위원회
12.원로목사 추대에 관한 법적 해석 요청 ☞ 법제위원회
13.교회 직원에 대한 재교육 실시 청원 건 ☞ 교육지도위원회
14.총회교육원에 교재출판국 설치 청원 건 ☞ 본회
15.총회유지재단 취업규칙 제13조 인사위원회 구성 변경 청원 건 ☞ 행정법규부
16.S.F.C. 평신도 간사들의 신학적 소양교육 청원 건 ☞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
17.개혁교회와 장로교 정치 회복의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청원 ☞ 행정법규부

▌신학위원회 (2건)
1.고신신대원의 입학생 정원 현실화 및 조정 청원의 건 ☞ 학교법인이사회
2.교회정치 제8장 준직원과 임시직원 1항 강도사... 수정 청원 ☞ 신학교육부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 (5건)
1.S.F.C. 신학간사들의 은급재단 가입 요청 건 ☞ 신학교육부
2.S.F.C. 주일(10.29) 한 주간 특별헌금 요청 건 ☞ 예결산위원회
3.신대원에 S.F.C. 강좌 개설 요청 건 ☞ 학교법인이사회
4.S.F.C. 간사들의 고신의료원 진료비 할인 건 ☞ 학교법인이사회
5.전국 S.F.C. 중고등부 교사연합회 ☞ 신학교육부

▌국내전도위원회 (1건)
1....세례교인 1명당 2,500원을... 배정허락 청원 건 ☞ 예결산위원회

▌군경목선교위원회 (2건)
1.군목 조기 안수자 및 군종요원 강도사 고시 면제 ☞ 신학위원회
2.위원회 명칭 변경과 이에 따른 관련 규칙 변경 건 ☞ 법제위원회

▌예결산위원회 (4건)
1.총회예산 배정을 위한 절차 및 예산배정 기한 청원 ☞ 재정복지부
2.총회규칙 개정안(제15조 특별위원회) ☞ 법제위원회
3.총회 취업규칙 구성 안(인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변경 청원) ☞ 행정법규부
4.총회출판국과 총회교육원 통합 청원 ☞ 본회

▌사회복지위원회 (3건)

1.성탄절헌금 1/10 모금 청원의 건 ☞ 예결산위원회

2.사회복지세미나 참가자 등록비(5인 이상 참가) 지원의 건 ☞ 예결산위원회

3....매년 6월 순교자기념주일을 지키기로 한 결의를 확인 ...청원의 건 ☞ 예결산위원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1건)

1.총회 선거조례 제15조(규제) 1항의 개정 ☞ 법제위원회

▌고신총회세계선교회 (2건)

1.이사정수 개정을 위한 총회규칙 및 KPM 정관 개정 총회 상정 청원 건 ☞ 법제위원회

2.선교사 은퇴에 대한 정관개정 청원 건 ☞ 법제위원회

▌총회교육원 (2건)

1.디아스포라 교회 교육 협력 사역을 위한 청원의 건 ☞ 예결산위원회

2.신임 총회교육원장 인준 요청의 건 ☞ 본회

▌종교개혁500주년준비위원회 (2건)

1. '개혁교회건설연구소' 설립 청원의 건 ☞ 신학위원회

2. '성경개관서 출간 소위원회' 허락 청원 ☞ 본회

▌헌법해설수정위원회 (1건)

1.헌법해설수정위원회 1년간 존속청원 ☞ 본회

▌총회성경연구소 (1건)

1.성경연구소 정관 개정 청원 ☞ 신학위원회

▌S.F.C.조사위원회 (3건)

1.김성민 목사, 김두영 강도사 신학지도 청원 ☞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

2.S.F.C.조사위원회 1년 연장 청원 ☞ 본회

3.S.F.C.신학간사들의 은급재단 가입 청원 ☞ 신학교육부

▌통합기념교회설립추진위원회 (1건)

1.본 위원회 존속 및 재정 모금 청원의 건 ☞ 본회

▌유지재단이사회 (3건)

1.유지재단 이사 수 경과조치 안 ☞ 법제위원회

2.제70회 총회 시부터 유지재단 이사 수 변경 청원 ☞ 법제위원회

3.고신언론사 사장 인준 요청 ☞ 본회

▌학교법인이사회 (2건)

1.학교법인 고려학원 기본재산 처분 동 의의 건 ☞ 본회

2.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개정(안) 승인 요청 ☞ 법제위원회

▌총회 임원회 (4건)

1.총회 취업규칙 개정(안) 청원 ☞ 행정법규부

2.교류관련 MOU 체결 상정 대상 교단 ☞ 행정법규부

3.순장총회 교류위원회 설치 ☞ 본회

4.해외교류교단의 여성안수 결의에 따른 대책의 건 ☞ 신학위원회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 (1건)

1.해외총회 산하교회 교재번역을 위한 협력 청원 ☞ 총회교육원

▌유럽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 (1건)

1.본국총회와 유럽총회와의 MOU협약 체결 요청의 건 ☞ 행정법규부

▌유안건 (18건)

1.행정위원회 : 협력위원제도 개선과 각 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칙의 개정 청원에 대한 연구 보고

2.행정위원회 : 예산절감을 위한 총회 산하 상임위원회와 기관들의 회의방법 개선 청원에 대한 연구 보고

3.행정위원회 : 기관목사 기준에 관한 질의에 대한 연구 보고

4.행정위원회 : 총회의 효율적 감사를 위한 제도개선 청원에 대한 연구 보고

5.미래정책연구위원회 : 부목사 대책 연구위원회 구성 요청 건에 관한 보고

6.법제위원회 : 총회행정부서와 사법부서의 독립방안 마련 청원

7.법제위원회 : 재판국의 판결관계 정립 청원
8.법제위원회 : 교회법 전문인을 세우는 전략수립 청원
9.법제위원회 : 노회 상설 재판국과 기소위원회 폐지 청원
10.신학위원회 : 설교표절에 대한 대책 마련 청원
11.신학위원회 : 개체교회 적정규모 및 최대규모에 대한 연구 건의
12.총회교육원 : 다음세대의 출석 감소원인 분석과 성장 대안 마련에 대한 연구보고
13.총회 임원회 : '진해신학강좌 기념 표지석 설치' 의 건
14.총회 임원회 : 통합기념교회설립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구성
15.총회 임원회 : 성도들의 다자녀 갖기 총회적 차원의 대책 마련 청원
16.총회 임원회 :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총회적 대응을 위한 청원
17.총회 임원회 : 한국교회연합기관 참여
18.총회 임원회 : 노회 구역조정의 건

4.2 배정받은 위원회 및 부서 중심으로 제목 분류

▌행정법규부 배정안건 (7건)

1.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①성도들이 많은 자녀를 낳도록 총회장의 감사장 수여 청원

2.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⑮총회유지재단 취업규칙 제13조 인사위원회 구성 변경 청원 건

3.발의 : 예결산위원회위원장 우신권 장로

제목 : ③총회 취업규칙 구성 안(인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변경 청원)

4.발의 : 총회임원회 총회장 배굉호 목사

제목 : ①총회 취업규칙 개정(안) 청원

5.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⑰개혁교회와 장로교 정치 회복의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청원

6.발의 : 유럽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박의석 목사

제목 : ①본국총회와 유럽총회와의 MOU협약 체결 요청의 건

7.발의 : 총회임원회 총회장 배굉호 목사

제목 : ②교류관련 MOU 체결 상정 대상 교단

▌행정위원회 배정안건 (11건)

1.발의 : 경남노회장 황규용 목사

제목 : ③교회 연합기관의 대표 파송

2.발의 : 경북노회장 황금산 목사

제목 : ①총회운영위원회 위원에 총회특별국 회계 포함의 건

3.발의 : 김해노회장 박현근 목사

제목 : ①총회표준문서양식 보충 청원

4.발의 : 동서울노회장 김일훈 목사

제목 : ①최소 총대 인원 목사3명, 장로3명

5.발의 : 제주노회장 정종열 목사

제목 : ①총회 최소 총대수 증원(목사3인, 장로3인) 청원 건

6.발의 : 서울노회장 손덕현 목사

제목 : ①...목사 면직한 자를 타 노회가 목사 회원으로... 질의의 건

7.발의 : 수도노회장 김홍석 목사

제목 : ③학교법인 이사 임기 조정의 건

8.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⑪학교법인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 개정 청원 건
9.발의 : 수도노회장 김홍석 목사
제목 : ④총회 기관장들을 총회언권회원으로 하자는 청원의 건
10.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③위임목사 위임식 간소화 청원 건
11.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⑧노회원 명부 정리의 일원화 방안 결의 청원

▌미래정책연구위원회 배정안건 (1건)
1.발의 : 수도남노회장 문천회 목사
제목 : ③교회정치 제53조 외국거주 목사 청빙에 대한 조항 개정 건

▌법제위원회 배정안건 (19건)
1.발의 : 남마산노회장 원대연 목사
제목 : ①교회정치 중 목사고시 과목 수정 청원 건
2.발의 : 동부산노회장 김윤근 목사
제목 : ②총회 상임위원회 전도선교부 내에 '자립성장위원회' 신설 청원
3.발의 : 동부산노회장 김윤근 목사
제목 : ③...신학대학원 한 동기회에서 두 사람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신설 청원
4.발의 : 수도남노회장 문천회 목사
제목 : ②...고려신학대학원 동기회 내 두사람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칙 개정 하는 건
5.발의 : 충청노회장 곽창대 목사
제목 : ①총회 상비부(이사회, 위원회 포함)의 구성에 관한 건
6.발의 : 동부산노회장 김윤근 목사
제목 : ④장로가 미조직교회로 이거... 시무장로의 직을 유지하도록 헌법 개정 청원
7.발의 : 전라노회장 안점수 목사
제목 : ①원로목사 추대절차 확인 요청
8.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⑫원로목사 추대에 관한 법적 해석 요청
9.발의 : 전라노회장 안점수 목사
제목 : ②위임목사 자격 취득 시기 개선 요청
10.발의 : 전라노회장 안점수 목사

제목 : ③교회정치에서 '장년교인' 기준의 명확한 설정

11.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②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의 자격에 관한 연령제한 수정 청원 건

12.발의 : 군경목선교위원회위원장 이광수 목사

제목 : ②위원회 명칭 변경과 이에 따른 관련 규칙 변경 건

13.발의 : 예결산위원회위원장 우신권 장로

제목 : ②총회규칙 개정안(제15조 특별위원회)

14.발의 :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조 목사

제목 : ①총회 선거조례 제15조(규제) 1항의 개정

15.발의 :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김윤하 목사

제목 : ①이사정수 개정을 위한 총회규칙 및 KPM 정관 개정 총회 상정 청원 건

16.발의 :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김윤하 목사

제목 : ②선교사 은퇴에 대한 정관개정 총회 상정 청원 건

17.발의 : 유지재단이사장 배굉호 목사

제목 : ①유지재단 이사 수 경과조치 안

18.발의 : 유지재단이사장 배굉호 목사

제목 : ②제70회 총회 시부터 유지재단 이사 수 변경 청원

19.발의 : 학교법인이사장 황만선 목사

제목 : ②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개정(안) 승인 요청

▌신학교육부 배정안건 (5건)

1.발의 : 수도노회장 김홍석 목사

제목 : ①동성애에 대한 총회차원의 입장표명과... 요청의 건

2.발의 : 신학위원회위원장 전원호 목사

제목 : ②교회정치 제8장 준직원과 임시직원 1항 강도사... 수정 청원

3.발의 :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위원장 강만구 목사

제목 : ①S.F.C. 신학간사들의 은급재단 가입 요청 건

4.발의 : S.F.C. 조사위원회위원장 김상석 목사

제목 : ③S.F.C.신학간사들의 은급재단 가입 청원

5.발의 :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위원장 강만구 목사

제목 : ⑤전국 S.F.C. 중 · 고등부 교사연합회

▌신학위원회 배정안건 (7건)

1.발의 : 남부산노회장 권종오 목사

제목 : ②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고신교회의 입장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의 견해... 청원

2.발의 : 서부산노회장 안영호 목사

제목 : ①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고신의 입장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의 견해... 청원

3.발의 : 수도노회장 김홍석 목사

제목 : ⑤개혁주의 장로교회 절기들에 관한 질의의 건

4.발의 : 군경목선교위원회위원장 이광수 목사

제목 : ①군목 조기 안수자 및 군종요원 강도사 고시 면제

5.발의 : 종교개혁500주년준비위원회위원장 박영호 목사

제목 : ① '개혁교회건설연구소' 설립 청원의 건

6.발의 : 총회성경연구소소장 장희종 목사

제목 : ①성경연구소 정관 개정 청원

7.발의 : 총회임원회 총회장 배굉호 목사

제목 : ④해외교류교단의 여성안수 결의에 따른 대책의 건

▌이단대책위원회 배정안건 (4건)

1.발의 : 경남노회장 황규용 목사

제목 : ④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와 그의 부활복음(부활교) 사상 연구

2.발의 : 서경노회장 김수구 목사

제목 : ①부활교 김성로 목사의 사상과 이단성 문제...에 관한 총회 조사 요청의 건

3.발의 : 수도노회장 김홍석 목사

제목 : ②김성로 목사, 구요한 목사, 이인규 씨의 이단성 연구조사 청원의 건

4.발의 : 경남노회장 황규용 목사

제목 : ⑤인터넷 신문 '글로리아 타임즈' 운영자 구요한 목사의 사상과 활동에 대한 조사 연구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 배정안건 (2건)

1.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⑯S.F.C. 평신도 간사들의 신학적 소양교육 청원 건

2.발의 : S.F.C. 조사위원회위원장 김상석 목사

제목 : ①김성민 목사, 김두영 강도사 신학지도 청원

▌교육지도위원회 배정안건 (3건)

1.발의 : 마산노회장 강영구 목사

제목 : ①대학시험 주일시행 반대의 건

2.발의 : 수도남노회장 문천회 목사

제목 : ①기독교학교(설립추진)위원회 설치 청원 건

3.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⑬교회 직원에 대한 재교육 실시 청원 건

▌국내전도위원회 배정안건 (1건)

1.발의 : 충청노회장 곽창대 목사

제목 : ②국내전도위원회의 교회개척훈련원 대상 규정 시행에 대한 유예 건의 건

▌재정복지부 배정안건 (1건)

1.발의 : 예결산위원회위원장 우신권 장로

제목 : ①총회예산 배정을 위한 절차 및 예산배정 기한 청원

▌예결산위원회 배정안건 (8건)

1.발의 : 진주노회장 송신영 목사

제목 : ①순교자기념관 건립을 위한 한 주일 헌금... 재확인 청원

2.발의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박래영 목사

제목 : ③...매년 6월 순교자기념주일을 지키기로 한 결의를 확인... 청원의 건

3.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⑥총회 발전을 위한 공청회(연2회) 정례화 청원 건

4.발의 :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위원장 강만구 목사

제목 : ②S.F.C. 주일(10.29) 한 주간 특별헌금 요청 건

5.발의 : 국내전도위원회위원장 신상현 목사

제목 : ①...세례교인 1명당 2,500원을... 배정허락 청원 건

6.발의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박래영 목사

제목 : ①성탄절헌금 1/10 모금 청원의 건

7.발의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박래영 목사

제목 : ②사회복지세미나 참가자 등록비(5인 이상 참가) 지원의 건

8.발의 : 총회교육원이사장 이영한 목사

제목 : ①디아스포라 교회 교육 협력 사역을 위한 청원의 건

▌총회선거관리위원회 배정안건 (5건)

1.발의 : 김해노회장 박현근 목사

제목 : ②인터콥 관련자 총회 임원후보가 될 수 있는가?

2.발의 : 동부산노회장 김윤근 목사

제목 : ①총회 임원 입후보자의 공적 홍보기회 확대를 위한 총회선거조례... 개정 청원

3.발의 : 수도남노회장 문천회 목사

제목 : ④선거조례 제3장 제6조 개정(장로부총회장 임직 10년 이상, 이사 감사 장로 5년) 건

4.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④공천위원회의 특별 위원 공천에 관한 방법 개선 청원 건

5.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⑤고려학원 이사, 감사 추천방식 투명화를 위한 청원 건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이사회 배정안건 (1건)

1.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⑦총회 파송 선교사들의 해외 재산 파악 청원

▌총회교육원이사회 배정안건 (1건)

1.발의 :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윤대식 목사

제목 : ①해외총회 산하교회 교재번역을 위한 협력 청원

▌유지재단이사회 배정안건 (2건)

1.발의 : 부산노회장 박삼우 목사

제목 : ①헌법 제170조 1항(기본재산의 처분) 개정 청원

2.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⑨삼천교회 운동으로 인한 개척교회의 재산관리 청원 건

▌학교법인이사회 배정안건 (3건)

1.발의 : 신학위원회위원장 전원호 목사

제목 : ①고신신대원의 입학생 정원 현실화 및 조정 청원의 건

2.발의 :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위원장 강만구 목사

제목 : ③신대원에 S.F.C. 강좌 개설 요청 건

3.발의 :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위원장 강만구 목사

제목 : ④S.F.C. 간사들의 고신의료원 진료비 할인 건

▌본회 배정안건 (16건)

1.발의 : 경남노회장 황규용 목사

제목 : ①총회출판국 발전을 위한 방안 강구

2.발의 : 남부산노회장 권종오 목사

제목 : ①총회교육원과 총회출판국의 합병 청원

3.발의 : 서울노회장 손덕현 목사

제목 : ②총회부서(총회교육원과 총회출판국)의 합병 청원 및... 청원

4.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⑭총회교육원에 교재출판국 설치 청원 건

5.발의 : 예결산위원회위원장 우신권 장로

제목 : ④총회출판국과 총회교육원 통합 청원

6.발의 : 경남노회장 황규용 목사

제목 : ②총회장과 유지재단 이사장의 분리

7.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⑩총회장의 총회유지재단 이사장직 겸직에 대한 재고 청원 건

8.발의 : 서부산노회장 안영호 목사

제목 : ②박기천 전도사 순교기념관 건립 허락 청원

9.발의 : 총회교육원이사장 이영한 목사

제목 : ②신임 총회교육원장 인준 요청의 건

10 발의 : 유지재단 이사장 배굉호 목사

제목 : ③고신언론사 사장 인준 요청

11.발의 : 종교개혁500주년준비위원회위원장 박영호 목사

제목 : ② '성경개관서 출간 소위원회' 허락 청원

12.발의 : 헌법해설수정위원회위원장 권오헌 목사

제목 : ①헌법해설수정위원회 1년간 존속청원

13.발의 : S.F.C. 조사위원회위원장 김상석 목사

제목 : ②S.F.C.조사위원회 1년 연장 청원

14.발의 : 통합기념교회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상석 목사

제목 : ①본 위원회 존속 및 재정 모금 청원의 건

15.발의 : 학교법인 이사장 황만선 목사

제목 : ①학교법인 고려학원 기본재산 처분 동의의 건

16.발의 : 총회임원회 총회장 배굉호 목사

제목 : ③순장총회 교류위원회 설치

▌유안건 (18건)

1. 행정위원회

제목 : ①협력위원제도 개선과 각 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칙의 개정 청원에 대한 연구 보고

2. 행정위원회

제목 : ②예산절감을 위한 총회 산하 상임위원회와 기관들의 회의방법 개선 청원에 대한 연구 보고

3. 행정위원회

제목 : ③기관목사 기준에 관한 질의에 대한 연구 보고

4. 행정위원회

제목 : ④총회의 효율적 감사를 위한 제도개선 청원에 대한 연구 보고

5.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제목 : ①부목사 대책 연구위원회 구성 요청 건에 관한 보고

6. 법제위원회

제목 : ①총회행정부서와 사법부서의 독립방안 마련 청원

7. 법제위원회

제목 : ②재판국의 판결관계 정립 청원

8. 법제위원회

제목 : ③교회법 전문인을 세우는 전략수립 청원

9. 법제위원회

제목 : ④노회 상설 재판국과 기소위원회 폐지 청원

10. 신학위원회

제목 : ①설교표절에 대한 대책 마련 청원

11. 신학위원회

제목 : ②개체교회 적정규모 및 최대규모에 대한 연구 건의

12. 총회교육원

제목 : ①다음세대의 출석 감소원인 분석과 성장 대안 마련에 대한 연구보고

13. 총회임원회

제목 : ①진해신학강좌 기념 표지석 설치" 의 건

14. 총회임원회

제목 : ②통합기념교회설립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구성

15. 총회임원회

제목 : ③성도들의 다자녀 갖기 총회적 차원의 대책 마련 청원

16. 총회임원회

제목 : ④차별금지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총회적 대응을 위한 청원

17. 총회임원회

제목 : ⑤한국교회연합기관 참여

18. 총회임원회

제목 : ⑥노회 구역조정의 건

4.3 배정받은 위원회 및 부서 중심으로 상정안건 전문

▌행정법규부 배정안건 (7건)

1.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①성도들이 많은 자녀를 낳도록 총회장의 감사장 수여 청원

(제안 설명) 한국사회의 저 출산으로 인한 교회 주일학생의 감소는 교회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하고 있으며, 현재 주일학교의 감소는 평균 출산율의 감소보다 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가 자녀 출산과 관련한 올바른 성경 신학의 정립과 함께, 성도들이 여러 자녀를 낳아 기르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자녀 셋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 교회가 청원하면 총회장 명의로 감사장 혹은 격려장을 수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⑮총회유지재단 취업규칙 제13조 인사위원회 구성 변경 청원 건

(제안 설명) 근간에 총회의 직원 순환보직이라는 명분으로 업무에 따른 전문성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인사를 순환보직이라는 총회결의 때문에 행하려고 하다가 은급재단과 유지재단에서 반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총회장과 부총회장(2인), 서기, 사무총장으로 5인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총회장(2인)과 서기는 당해 연도에 인사위원이 되어 인사위원회의 규정이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사무총장과 총회장만이 1년 이상 인사위원회의 활동을 하고 사무총장의 경우 다년간 인사위원으로 섬기게 되어 불필요한 오해와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행법 아래서 총회직원의 인사는 총회 사무실외에도 유지재단과 은급재단,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소속직원이 해당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유지재단 소속의 직원이 많아 보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을 총회장, 부총회장 2인, 총회 서기, 총회 회계, 유지재단재산분과장, 유지재단언론분과장 7인으로 확대하고 사무총장은 업무상 인사보고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 설명하는 권한만 가지게 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을 변경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오히려 이사회가 있는 곳은 장기적으로 법인 이사회처럼 인사권까지 주어서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책임도 지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발의 : 예결산위원회위원장 우신권 장로

제목 : ③총회 취업규칙 구성 안(인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변경 청원)

(제안 설명) 1. 인사위원회 구성변경 청원 : 총회취업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인사위원은

총회장, 부총회장 2인, 총회서기, 사무총장,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 제14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직원의 임. 면 및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및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취업규칙 제41조 2호에 의거하여 직원의 임금인상은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회인사위원회의 업무는 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총회회계(예결산위원장)가 인사위원회에 포함되어야만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청원합니다. 취업규칙 제15조 4호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 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로 홀수여야 할 경우 사무총장은 총회가 총회의 제반 사무를 위해 상근직으로 근무하도록 선출하였으므로 언권회원으로 하여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취업규칙 제57조에 의하면 부서장은 징계의 발의자이며, 취업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징계위원이 됩니다. 이렇게 징계발의자가 징계위원이 되는 것은 공정하게 인사를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 행	수 정 안	비 고
취업규칙 제4장 인사 제13조(인사위원회 구성)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회장을 대표로 목사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 총회서기,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취업규칙 제4장 인사 제13조(인사위원회 구성)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회장을 위원장으로 목사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 총회서기 총회회계로 구성하며, 사무총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재무업무과 관련이 있으므로 총회회계를 위원에 포함하고 사무총장은 징계발의권자로서 징계위원회 위원이 되는 모순이 있으므로 언권위원으로 변경함.

2. 인사위원회 운영변경 청원 : 취업규칙 제15조 5호는 "인사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총회보고는 물론 감사요청이 없을 경우 감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총회 인사위원의 임기는 총회임원의 재임기간임으로써 목사 부총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1년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의 연속성과 결과이행 시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서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원활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고 감사국의 회의록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청원합니다.

현 행	수 정 안	비 고
취업규칙 제4장 인사 제15조(위원회 소집 및 운영) 1~4 (생략) 5. 인사위원회의 회의 및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할 수 있다. 6~7 (생략)	취업규칙 제4장 인사 제15조(위원회 소집 및 운영) 1~4 (현행과 같음) 5. 인사위원회의 회의 및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의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6~7 (현행과 같음)	위원회의 임기가 1년인데 회의록까지 비공개를 하게 되며, 시행여부 확인하기 어렵고, 업무의 연속성이 어렵게 될 수 있음.
(조문신설)	제15조의 1(위원회 회의록 등)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서기는 회의소집 통보,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2. 제1호의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총회 감사국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의 서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회의소집 등 업무를 담당하며 회의록은 위원전원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하고, 감사국의 공식 요구 시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을 둠.

4.발의 : 총회임원회 총회장 배굉호 목사

제목 : ①총회 취업규칙 개정(안) 청원

(제안 설명) 총회산하 기관(부서)의 직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포함된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임용의 원칙으로 구분하고 인사운영에 재정관련 사항이 수반되므로 위원회 위원에 총회 회계를 포함시키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발의권자가 동시에 징계위원이 되는 모순점 등 시행상의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총회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청원합니다.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및 그 밖의 총회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채용, 복무 및 근로 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및 그 밖의 총회 규정에 별도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적용범위에 채용 용어 삽입, 근로기준법적용 근거 명시
제3조(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2장 5조(전형 및 채용서류)에 합격한 자로 7조(수습기간)을 마친 자를 의미한다. 〈2호~7호 신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제2장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절차를 마치고 총회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2. “부서장”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원 중 조직 및 업무분장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국장, 세계선교본부장, 교육원장, 출판국장을 말한다. 3.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휴직, 복직, 직위해제, 면직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에서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보”라 함은 직원을 소속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소속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6.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전직”이라 함은 총회 업무의 전문화 또는 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총회 행정국 · 유지재단 · 은급재단 · 고신언론사 및 교육원 등 기관(부서)간에 직원의 근무지를 변경 하는 것을 말한다.	취업규칙에 “부서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행 포괄적인 임,면 인사관련의 용어를 보다 구체화 하고 특히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위한 근거가 되는 “전직”용어 정의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제 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5조 (전형 및 채용서류) 총회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졸업증명서 1통 4. 담임교역자 추천서 1통 5.~6. (생략) 〈신 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5조(전형 및 채용서류)① 총회에 취업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포함)를 제출하여 전형을 받아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통 4. 담임교역자(강도사와 목사는 노회장) 추천서 1통 5.~6. (현행과 같음) ② 회계담당 부서 근무명령을 받는 직원은 총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을 배상할 수 있는 재산능력자 2명 이상의 신원보증서에 보증인 인감증명서와 소유재산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갈음할 상당액의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채용서류제출은 전자문서로도 가능케 하고, 제목에 있는 “전형” 용어를 본문에 표기, 우수인력확보를 위해 성적증명서 제출과 목사의 경우 노회장 추천을 의무화함 현재 회계담당자에게 받는 신원보증 등을 명확히 규정화하여 운영하도록 항을 신설함
제 6조(근로계약) 1.총회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생략)	제6조(근로계약) 총회는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자에 대하여 체결 하는 근로계약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총회는 신규채용 임용자와 ----------. 2. (현행과 같음)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 채결하는 근로계약 체결 근거를 본문에 명시함
제 7조(수습기간) 1. (생략) 2.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수습기간을 제외 한다.	제7조(수습기간)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수습기간을 갖게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전보, 승진임용, 전직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제	임용 용어의 정의에 따른 수습범위명확히 구분하고, 현행3호에서 “1항” 은 표기

3.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4. (생략)	외한다. 3.제1호에 의한----------. 4. (현행과 같음)	오류로 “1호”로 바로 잡음
제 9조(출근, 결근) 1.직원은 업무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직원 전체예배를 드리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출근, 결근) 직원의 출근 및 결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의한다. 1. 직원은 근무시간 이전까지 ----------근무에 임할----------.	업무시간 용어를 “근무시간”으로 정리하고, 부서장의 경우에도 사전에 총회장 승인을 받도록 하여 지휘체계 확보토록 규정을 둠

현행	개정안	비고
2.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사후에 서면으로(사유를 명확히 기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후단 신설〉 3.(생략)	2.----------부서장의 승인(부서장의 경우에는 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사후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승인을----------처리한다. 이 경우 부서장은 총회장에게 전화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부서장도 사전 승인이 불가피한 경우도 총회장에게 전화 승인을 받도록 함
제10조(지각, 조퇴 및 외출) 1. (생략) 2.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	제10조(지각, 조퇴 및 외출) 직원은 지각, 조퇴 및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되 해당 사항에 대하여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지각, 조퇴 등이 필요한 경우에 소정서식에 의한 기록유지를 본문에 명시 부서장의 경우에도 총회장의

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또는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공무로 외출코자 할 시 소속부서장의 승인 후 외출하여야 한다. 4.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이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다만, 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부서장의 경우에는 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공무로 외출코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부서장의 경우에는 총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외출하여야 한다. 4.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이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의 발생으로 소속 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무기강 및 지휘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소속 부서장이 인정하는 개인 사정의 지각 등의 경우 무급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제11조(공민권행사) 1.총회는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출을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2.총회는 제1호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공민권행사)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적(公的)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부서장의 경우에는 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총회는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외출의 경우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부서장은 총회장승인)을 받도록 함

현행	개정안	비고
제 4장 인 사 제13조(인사위원회의 구성)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및 이사회”라 한다)는 총회장을 대표로, 목사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 총회서기,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제4장 인사위원회 제1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직원의 인사관리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목사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 총회서기, 총회회계로 구성하며 사무총장은 언권위원이 된다.	인사업무는 예산을 수반하므로 회계를 위원에 포함, 사무총장은 징계발의자로서 징계위원이된는

제14조(위원회의 기능) 〈1항 신설〉 1. 직원의 임, 면 및 전보, 승진에 관한 사항. ① 부서장 및 2급 직원의 임. 면 및 전보, 승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결의로 인사위원회에서 임. 면 한다. 단 그리고, 교육원장과 세계선교위원회 본부장은 해당위원회의 결의와 인사위원회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 후 총회장이 임명한다. ② 3급 이하 직원의 임, 면 및 전보, 승진에 관한 사항은 부서장이 제청하여 해당 위원회의 결의로 사무총장, 총회장 결재로 임·면 한다. 2.~ 3. (생략) 4. 모든 직원의 채용공고는 사무총장 총회장의 결재를 득하고 시행한다. 5. (생략) 〈2항 신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부서장 및 2급 이상 직원의 임용(전직의 경우에는 3급 이상 직급)에 관한 사항 ① 〈삭 제〉 ② 〈삭 제〉 2. ~3. (현행과 같음) 4. 직원의 채용공고 및 전형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의안은 총회의 조직 및 업무분장규칙에 의한 부서장이 작성 제출한다.	모순이 있어 언권위원(혹은 간사)으로 함 전직의 경우는 부서간 이동 이므로 인사위 의결사항으로 위원회 결의에 의한 인사발령 규정은 별도의 조문으로 함 직원 채용공고는 인사위 결의에 의거 시행, 전형에 관하여 인사위 기능에 포함
제15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항 신설〉 1.~ 4. (생략) 5.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할 수 있다. 6. (생략)	제15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은 다음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4.(현행과 같음) 5.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의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6. (현행과 같음)	위원의 임기가 1년인데 회의록까지 비공개로 하면 시행여부 확인 곤란하여 업무연속성확보 어려 비공개 필요 시 결의에 의거 가능함

현행	개정안	비고
7.위원회의 운영 및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7. 〈삭 제〉	
〈2항 신설〉	②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서기는 회의소집 통보,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2. 제1호의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총회 감사국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서기 지명 규정을 두고 서기의 직무와 회의록은 서명날인한 원본을 보관토록 규정하고, 필요시 감사국요청에 다른 회의록 제출규정을 둠
〈3항 신설〉 (현행 7호를 3항으로 정리)	③ 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제 5장 배치 및 전직	제 5장 임 용	
제16조(배치, 전직, 승진)	제16조(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장이 임용한다.	인사위결의에 의한 임용은 총회장이 임용
1. 총회는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배치, 전직 등 인사발령을 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부서장 및 2급 직원의 채용, 승진, 전보, 면직은 해당 위원회(위원회가 없는 경우는 “총회 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청으로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임용한다. 다만, 교육원장과 세계선교본부장은 해당위원회의 결의와 인사위원회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용한다.	1호 및 2호의 내용은 현행 제14조1호의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정리함
2. 총회는 제1호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 여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2. 〈삭 제〉	배치용어 삭제,전직 별도 조문을 둠
3. 3급 이하 직원의 배치, 전직, 승진 등은 부서장이 발의하여 해당 위	2. 3급 이하 직원의 채용, 전보, 승진 및 면직에 관한 사항은--------	

원회의 결의로 사무총장, 총회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임용한다.	
〈조문 신설〉	제16조의1(전직 및 겸직) ① 총회는 산하 기관(법인, 준법인, 교육원을 포함한다)의 업무의 전문화와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에 다음 각 호와 규정에 의한 전직 등 인사교류를 시행할 수 있다. 1. 전직에 의한 인사교류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관련 부서장의 동의를 받아 총회장의 결재로 시행하여야 한다.	유지재단 · 은급재단 · 언론사 및 총회교육원 간에 전직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필요 시 인사 교류규정을 둠

현행	개정 안	비고
	2. 4급이하 직원의 전직은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이 발의하여 해당 위원회의 결의와 관련 부서장의 동의를 받아 총회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3. 전직에 의한 인사교류에 해당하는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 여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산하 부서의 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전문인력의 합리적 운용과 재정절감을 위하여 관련 부서장의 동의와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에 대하여는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급료 책정은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1.총회유지재단, 행정국, 출판국, 교육원의 재무 업무담당자 2.출판국과 교육원의 디자인 업무담당자	전직에 의한 인사교류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관련 부서장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되,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부할 수 없으며 필요시 부서간 겸직을 허용하도록 힘

제 8장 휴일 및 휴가 제31조(연차휴가) 〈제1항 신설〉 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생략) 3.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이하 생략) 〈제2항 신설〉	제8장 휴일 및 휴가 제31조(연차 유급휴가) ① 직원의 연차유급 휴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2. (현행과 동일) 3.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다만, (현행과 같음) ②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37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2012.2.1일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개정 에 따른 조문 정비 2012.2.1일자 근로기준법 제60조6항 개정에 따른 신설 보완

현행	개정 안	비고
제37조(임산부의 보호) 1.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는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 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2.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제37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는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의 보호 휴가를 준다. ----------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시행령제4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	2012.2.1. 2014.1.21.일자 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과 근로기준법시행 령 제43조의 개정에 따른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 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3. 총회는 직원이 산전 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90일 보호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산전 후 휴가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총회가 지급한다. 5.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본인 요구가 있는 경우 부서장이 판단하여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60일)이상 부여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하여 휴가를 청구하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총회는 직원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한다. ⑥ 총회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되, 본인 요구가 있는 경우 부서장이 판단하여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케 하며, 제1항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하게 한다.	2이상의 자녀에 대한 휴가 일수 조정 등 임산부의 보호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함

현행	개정 안	비고
	⑦ 총회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한다.	2012.2.1. 2014.1.21일자 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에에 따른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한 규정 정비
제44조(상여금 지급) 1. 총회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월(月)기본급과 직책수당의 550%를 지급하며 지급일자 및 방법은 제40조 3항에 따른다.	제44조(상여금 지급) 1.----------제40조 제3호에----------.	조문 인용오류 3항을 3호로 수정
제12장 표창 및 징계	제12장 표창 및 징계	
제53조(표창 및 징계위원회 구성) 제14조 2,3호의 인사위원회로 구성한다.	제53조(표창 및 징계위원회 구성) 총회는 직원에 대한 표창과 징계를 위하여 제13조에의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인사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 인용조문 수정

고신총회 취업규칙 (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이하 “총회” 라 한다)직원의 채용,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채용,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및 그 밖의 총회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직원” 이라 함은 제2장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절차를 마치고 총회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2. “부서장”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원 중 조직 및 업무분장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국장, 세계선교본부장, 교육원장, 출판국장을 말한다.
3. “임용” 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휴직, 복직, 직위해제, 면직을 말한다.
4. “승진” 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에서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보” 라 함은 직원을 소속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소속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6. “복직” 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전직” 이라 함은 총회 업무의 전문화 또는 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총회 행정국、유지재단、은급재단、고신언론사 및 교육원 기관(부서) 간에 직원의 근무지를 변경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4조(채용기회) 총회는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5조(전형 및 채용서류) ① 총회에 취업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포함)를 제출하여 전형을 받아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4. 담임교역자(강도사와 목사는 노회장) 추천서 1통
5. 건강진단서(종합병원 발행) 1통
6. 기타 총회가 지정하는 서류(해당자의 학위증명 등)

② 회계담당 부서 근무명령을 받는 직원은 총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을 배상할 수 있는 재산능력자 2명 이상의 신원보증서에 보증인 인감증명서와 소유재산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갈음할 상당액의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근로계약) 총회는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자에 대하여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총회는 신규채용 임용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총회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근로 기준법상의 서면명시를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수습기간)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수습기간을 갖게 한다.

1.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2. 전보, 승진임용, 전직에 의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제외한다.
3. 제1호의에 의한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4.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본봉의 70%를 지급한다.

제3장 복 무

제8조(복무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총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직원은 품위를 손상하거나 총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직원은 그 외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출근, 결근) 직원의 출근 및 결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의한다.

1. 직원은 근무시간 이전까지 출근하여 직원 전체 예배를 드리고 근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소속 부서장의 승인(부서장의 경우에는 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사후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부서장은 총회장에게 전화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무단결근은 무급처리하며 무단결근 3회 이상 시 징계 처리 한다.

제10조(지각, 조퇴 및 외출) 직원은 지각, 조퇴 및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되 해당 사항에 대하여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1. 직원은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소속 부서장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출근한 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또는 개인 사정으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부서장의 경우에는 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공무로 외출코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부서장의 경우에는 총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외출하여 야 한다.

4.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이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의 발생으로 소속 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공민권행사)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적(公的)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부서장의 경우에는 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회는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12조(출장) 총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인사위원회

제1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직원의 인사관리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목사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 총회서기, 총회회계로 구성하며 사무총장은 언권위원이 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부서장 및 2급 이상 직원의 임용(전직의 경우에는 3급 이상 직급)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채용공고 및 전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의안은 총회의 조직 및 업무분장규칙에 의한 부서장이 작성 제출한다.

제15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은 다음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위원회는 제14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의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건에 대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서기는 회의소집 통보,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을 작성 · 관리한다.

2. 제1호의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총회 감사국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제 5장 임 용

제16조(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장이 임용한다.

1. 부서장 및 2급 직원의 채용, 승진, 전보, 면직은 해당 위원회(위원회가 없는 경우는 “총회 임원회”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청으로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임용한다. 다만, 교육원장과 세계선교본부장은 해당위원회의 결의와 인사위원회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용한다.

2. 3급 이하 직원의 채용, 전보, 승진 및 면직에 관한 사항은 부서장이 제청하여 해당 위원회의 결의로 사무총장, 총회장 결재로 임용한다.

제16조의1(전직 등) ① 총회는 산하 기관(법인, 준법인, 교육원을 포함한다)의 업무의 전문화와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에 다음 각 호와 규정에 의한 전직 등 인사교류를 시행할 수 있다.

1. 전직에 따른 인사교류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관련 부서장의 동의를 받아 총

회장의 결재로 시행하여야 한다.

2. 4급이하 직원의 전직은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이 발의하여 해당 위원회의 결의와 관련 부서장의 동의를 받아 총회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3. 전직에 의한 인사교류에 해당하는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 여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산하 부서의 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전문인력의 합리적 운용과 재정절감을 위하여 관련 부서장의 동의와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에 대하여는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급료의 책정은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1. 총회유지재단, 행정국, 출판국, 교육원의 재무업무담당자

2. 출판국과 교육원의 디자인 업무담당자

제 6장 휴직 및 복직

제17조(휴직)

1.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6개월 이내, 2회에 한함).

3.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징집 및 소집기간).

4. 직무관련 연수 등의 사유로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5. 직원은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이동 등 신변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총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8조(육아휴직)

1. 총회는 생후 6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 여 직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2.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총회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4.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제19조(복직)

1.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총회는 휴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 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제20조(근속기간)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17조 3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제 7장 근로조건

제21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직원의 대표(사무총장)와 협의하여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근로시간)

1. 09:00시 출근 - 18:00시 퇴근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장 근무시간에 따른 고정연장근무수당은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23조(휴식시간) 휴식시간은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식시간을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3조의 휴식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25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총회는 전 직원에 대하여 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 한다.

제26조(간주근로시간제) 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1.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2.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총회는 직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8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1.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2.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인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산부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29조(근로시간 및 휴식, 휴일의 적용 제외)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감시, 단속적 업무로써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제1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야간에 근로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 8장 휴일 및 휴가

제30조(유급휴일)

1.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급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31조(연차 유급휴가) ①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 1호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②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37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제32조(연차휴가의 사용)

1. 직원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일 전에 소속 책임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총회는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총회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4. 총회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총회의 사용 촉진조치에도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

지 아니한다.

제33조(연차 유급휴가의 대체)

1. 총회는 직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2. 제1호의 직원의 대표와 서면합의는 적어도 휴무시키고자 하는 날 3일전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34조(하기휴가)

1. 총회는 직원에게 5일의 하기휴가를 주며 휴가 기간은 총회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2. 이 휴가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제35조(경조휴가)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준다.

1) 경　　사

본인의 결혼 : 5일

자녀결혼 : 1일

부모 및 배우자 부모 회갑 : 1일

형제 및 배우자 형제의 결혼 : 1일

배우자의 출산 : 1일

2) 애　　사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본인,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5일

본인,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사망 : 2일

2. 경조휴가 중 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가일수에 포함한다.

제36조(생리휴가) 총회는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37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는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의 보호 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시행령제4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60일)이상 부여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하여 휴가를 청구하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총회는 직원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 록 증빙서 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한다.

⑥ 총회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되, 본인 요구가 있는 경우 부서장이 판단하여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케 하며, 제1항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하게 한다.

⑦ 총회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한다.

제38조(병가)

1. 총회는 직원이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60일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한다.

2.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할 시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9장 임 금

제39조(임금의 구성항목)

1. 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직책수당, 제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법정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2. 제22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22:00-06:00),휴일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제2호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40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1. 임금의 지급기준은 임금지급규정에 의한다.

2.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 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급제, 일급제, 연봉제 등을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당월 25일에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입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4. 신규 채용,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1조(임금인상)

1. 임금인상은 매년 1회(9월말)로 하여 10월부터 적용하며 총회의 사정으로 임금인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임금인상은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42조(비상시 지급)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직원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하는경우.

2. 직원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혼인, 사망 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3. 기타 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3조(휴업수당)

1. 총회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호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상여금 지급)

1. 총회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 으로 월(月)기본급과 직책수당의 550%를 지급하며 지급일자 및 방법은 제40조 제3호에 따른다.

2. 상여금의 계산방법은 입사일을 기준하여 지급상여금을 대상하여 일할 계산 한다.

3. 상여금의 지급 %

1) 설　　날　50%

2) 추　　석　50%

3) 하기휴가　50%

4) 매분기 마다(3월,6월,9월,12월) 100%씩

4. 총회의 형편에 따라 제44조 3호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장 퇴직 및 해고 등

제45조(퇴직 및 퇴직일)

1. 총회는 직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직원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2. 제1호에 의한 퇴직일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총회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사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직원이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 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46조(해고)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6. 고의로 총회회관 및 세계선교본부의 물품을 파손,절도하려 한 자.

7. 고의로 중대 사고를 발생시켜 총회회관 및 세계선교센타에 손해를 끼친 자.

8.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총회 및 세계선교센타에 손해를 끼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선동하여 출근거부, 업무거부, 업무진행에 방해를 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에 3회 이상 불복종 한 자.

11. 총회회관 및 세계선교센타의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자.

12. 총회 및 세계선교센타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자.

13.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3일 또는 월간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14.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한 자.

15.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16. 지각, 조퇴가 빈번하고 출근이 일정치 않거나 업무에 열의가 없어 업무수행 능력이 열등하다고 평가된 자.

17. 총회회관 및 세계선교센타 내에서 타인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18. 징계처분을 받고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자.

19. 총회회관 및 세계선교센타 내에서 허가 없이 인쇄물 등을 배포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종용한 자.

20.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제47조(해고의 제한)

1.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2.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총회업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48조(해고의 통지)

1. 총회는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2. 총회는 1호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49조(해고예고의 예외) 다음의 각 호의 직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일용직원으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직원.

3. 월급제 직원으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직원.

5. 수습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6.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50조(정년)정년은 만 61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단, 총회가 필요로 하는 직원은 해당 부서장의 발의로 제14조 1호의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11장 퇴직 급여

제51조(퇴직급여의 수준 등)

1. 총회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총회는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52조(중간정산)

1. 총회는 직원이 서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직원이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2장 표창 및 징계

제53조(표창 및 징계위원회 구성) 총회는 직원에 대한 표창과 징계를 위하여 제13조에 의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4조(표창)

1. 총회는 직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총회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3) 총회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 성적이 우수한 자.

4) 기타 표창이 필요로 인정된 자.

2. 표창이 필요한 직원의 추천은 해당부서장의 발의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표창의 종류(표창, 포상금, 포상휴가 등)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5조(징계)총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한 자.

3.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총회에 피해를 입힌 자.

4. 총회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5. 총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6. 총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회관 및 선교센타의 물품, 금품을 반출한 자.

8. 직장 내에서 성희롱 행위를 한 자.

9.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내부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56조(징계의 종류)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감봉액은 월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57조(징계의 발의)해당 부서장은 제5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발생할 시 서면으로 징계사유서(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를 작성 징계를 요청한다.

제58조(징계심의)

1.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1의 출석통지서를 각 통보한다.

2. 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1호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2호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3. 위원회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에 관여하지 못한다.

4. 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직원에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6. 서기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9조(징계결과 통보)징계결과는 해당 직원에게 별지 3의 서식으로 통보한다.

제13장 교육 및 성희롱 예방

제60조(직무교육)

1. 총회는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직무교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재직자 훈련, 수강 지원금 등 각종 훈련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한다.

제61조(성희롱 예방)

1. 총회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총회장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한다.

2. 총회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장 안전보건

제62조(안전교육)총회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채용시 교육, 정기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유해위험작업사용시 특별안전교육 등 산업 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 하여야 한다.
제63조(건강진단)총회는 직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15장 재해보상

제64조(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 재해보상법에의한다.

부 칙

제1조(취업규칙의 비치)총회는 본 규칙을 사무실, 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취업규칙의 개정)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개정한다.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야 함.
제3조(시행일) 본 규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한 자		직 위(급)	
	주 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취업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위원장 (직인) 귀 하					

----------절 취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한 자		직 위(급)	
	주 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2)

서 면 진 술 서

소 속		직 위(급)	
성 명		제 출 일 자	
사 건 명			
불 참 사 유			

"진 술 내 용"

위 본인은 취업규칙 5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3)

징 계 의 결 서

인 적 사 항	소 속	직 위(급)	성 명
이 유	취업규칙 55조 호 위반		
의 결 주 문	취업규칙 56조 호로 징계함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5.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⑰개혁교회와 장로교 정치 회복의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청원

(제안 설명)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며 고신교회가 개혁교회와 장로교 정치원리를 따라 운영되는지 점검을 하고 자기 성찰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아래의 제문제들에 대해서 1년간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총회장 제도에 관한 연구 청원

우리 헌법은 총회를 마칠 때 이 총회는 다음 총회가 개회될 때까지 총회를 파한다고 선언하며 마칩니다(교회정치 149조). 그런데도 총회장은 일 년 내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법과 모순됩니다. 그래서 총회가 파한 뒤에도 마치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총회장 자신과 총회의 교회들이 묵인해 주거나 심지어는 총회장의 권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 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총회장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까지 합니다. 때로 총회임원회까지도 헌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총회가 맡기지 않은 일까지 결의해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바쁘지 않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총회의 절차를 따라 일을 처리하면 됩니다. 마치 교권을 행사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개혁교회의 정신과 장로교 정치 원리에서 멀리 떠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로 총회가 파하면 총회장이 없어도 되는지, 우리의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혼란을 피하고 총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연구 보고하여 논의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2) 고신교회의 개혁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직분자 세우기에 대한 청사진 마련을 위한 연구 청원

고신교회는 신학적으로 개혁주의를 지향하며 정치적으로는 장로교 정치원리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지금의 고신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다양한 교파의 요소들을 예배와 정치 등에 실용적으로 적용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혁교회와 개혁교회의 목회자와 직분자를 세워 봉사하게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이고 개혁교회 다운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첫 단계에서 성경적 개혁교회의 청사진을 보면서 교회 개척을 하고, 이미 있는 교회는 이 청사진을 가지고 교회를 다듬어서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이 세우기를 기뻐하는 성경적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개혁교회의 예배모범을 따른 예배인지, 교회 교육이 개혁주의 표준문서인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가지고 성도들을 올바른 진리의 터 위에 세우고 있는지, 우리의 직분자 세우기가 장로교 정치원리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직분 봉사가 바른 섬김의 자리에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3) 장로교 정치 원리를 따른 총회 일군 선출 과정에 관한 연구 청원

해마다 총회 임원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법인 이사회 같은 곳에 섬길 사람을 선출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과연 장로교 정치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동기회에서 임원을 추대하고 총대들의 투표로 결정하면 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동기회도 거치지 않은 몇몇 동기회 회장들의 성명서 형식의 글이 마치 총회의 결정처럼 강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있어온 계파정치에 대한 폐단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반성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친목 단체인 동기회가 총회의 일군을 세우는 정치를 하게 되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동기회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서 추천하고 지원하는 형식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 앞에서 직분에 대한 두려움과 신앙적 겸손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총회 임원과 이사회와 특별국 같은 곳에서 봉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개체교회의 당회와 해 노회에 허락 추천을 받아 봉사하고 싶은 자리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총회의 모든 총대들과 법적 기구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투표로 직원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한국과 세계개혁교회들이 일군 세우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연구해서 고신교회의 바른 일군 세우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4) 총회기구 사역에 대한 비전 제시를 위한 연구 청원

총회를 파하면 총회장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장로교 정치입니다. 총회 임원으로 봉사하는 것 못지않게, 상임위원회의 위원, 이사회의 이사, 특별국의 위원으로 잘 봉사하는 것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1년 임기의 총회장의 봉사보다 선교를 위해서는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이사로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고신교회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육원 이사로 4년을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유지재단 이사로서 봉사하는 것이 고신총회의 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총회장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이 집중되어 있어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몇몇 직무를 수행할 때 특권이 있어 그렇다면 그런 특권을 주지 말고 봉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려 놓아야하는 특권과 함께 총회 기구의 제 분야에 대한 사역 비전을 연구하여 제시함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고신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해야 합니다.

5)총회 산하 법인과 재단이사회를 총회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 연구 청원

총회의 유지재단이 독립적으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하고, 고신총회세계선교회와 교육원을 준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승격시켜 운영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오랜 시간 법인 이사회가 잘못 운영되고 있을 때 총회와 총회 어간에는 어

떤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총회 산하의 이런 기관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현행법상 상설회가 아닌 총회는 어찌할 수 없겠지만 총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라도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어야 하고, 명백한 잘못이 발견된다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 신상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총회장의 임기 중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청원

그동안 총회장은 임기 중 너무 많은 일을 처리하느라 힘들게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개체교회의 목회도 벅찬데 수고를 아끼지 않고 봉사해 주셨음에 우리 모두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쉬움도 있습니다. 총회 임원회와 유지재단 이사회등의 중요기구가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언제나 총회장의 시간표에 일정을 맞추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는 정한 직무수행이긴 하지만 해외 출장을 할때는 귀국할 때까지는 가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총회장은 가급적 총회적인 사건과 관련된 행사에만 참석하고, 개체교회, 시찰회, 노회 따위의 행사에는 초청하지도 말고 초청에 응하지도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해외 사절로 가는 일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필요가 아니면 해외 체류시간을 줄이고, 수행원이 필요하지 않는 실무적 방문만 해도 될 것입니다. 발전적으로는 매년 바뀌는 총회장 중심의 사절관행보다는 전문위원을 통하여 자매교회들과 장기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제반문제를 연구해서 총회의 업무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사무총장과 총회사무실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연구 청원

사무총장은 총회가 결의한 일과 총회가 위임하여 임원회가 결의한 총회적인 일을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책임 있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총장과 사무실 직원들이 총회장이나, 총회의 유력한 사람들이 방문을 할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영접하는 일들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또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을 맡은 사무총장과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구보고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린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6.발의 : 유럽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박의석 목사

제목 : ①본국총회와 유럽총회와의 MOU협약 체결 요청의 건

(제안 설명) 총회장 배굉호 목사가 발의한 “유럽 한인 예수교 장로회 고신 총회(총회장 박의석 목사)와 총회행정업무 협약 체결 요청의 건” 은 유럽 한인 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같은 신학과 신앙의 바탕 위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실현과 그 나라 건설을 위하여 협력하고 동역하기를 원하며 다음과 같이 업

무(행정) 협약을 맺도록 가결하고, 협약 약정서를 교환하다.

1) 유럽 한인 예수교 장로회 고신 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상호 자매결연 관계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이에 따른 총회 업무(행정)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2) 양국 총회는 교회 성장과 교회 개혁, 세계 선교, 신학 교육, 목회자 사역과 훈련, 목회자 돌봄, 통일한국 대비, 국제긴급재난구호 등 상호 공동 관심 분야에 협력하기로 한다.
3) 양국 총회는 각 총회의 정기총회 시 사절단을 상호방문토록 한다.
4) 양국 총회의 노회에 속한 목사 청빙은 자국 노회 간의 행정 절차대로 자유롭게 청빙할 수 있도록 한다.
5) 양국 총회 내 노회 소속 목사의 각 지역 유학의 경우 해당지역 노회의 준회원으로 가입토록 허락하고 지도 받게 한다.
6) 양국 총회 내 노회의 교회에서 자매 총회 소속의 목사를 협력 목회자로 청빙할 시에는 소속 노회장의 추천서를 받도록 하고, 청빙하는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도하며, 그 외 행정사항은 양 노회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게 한다.
7) 총회 업무(행정) 협약에 미비된 사항은 양국 총회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처리한다.

7.발의 : 총회임원회 총회장 배굉호 목사

제목 : ②교류관련 MOU 체결 상정 대상 교단

(제안 설명) 제66-21차 총회 임원회에서 교류협력 체결 상정대상 교단으로 (1) 재일한인기독교회(KJPC) (2)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3) 일본동맹기독교단 (4)중국 빌라델비아교회 (5)북동부인도개혁파 교회 (6)프랑스개혁파교회를 총회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일한인기독교회(KJPC)

선 교 협 약

재일 대한기독교회(이하A라함)는 본국6교단(이하B라함)[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과 선교관계를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1. 선교사의 인사

(1) A, B교단중 어느 한 교단이 상대방 교단의 선교사를 파송받기 원하거나 또는 상대방 교단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의사가 있을 경우 선교사를 파송받을 교단이 선교의 임지를 명시하여 선교사 파송교단에게 선교사의 파송을 공식으로 청원한다.

(2) 선교사 파송을 청원받은 교단은 상대방이 청원한 선교임지의 형편에 적응하는 선교사를 엄선하여 그 명단을 초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선교사를 파송받는 교단에 발송한다.

(3) 명단을 접수한 교단은 이를 심사하여 초청장을 발송하고 입국사증 발급을 위해 해정부에 교섭을 책임진다.

(4) 선교사가 선교지에 도착하면 해교단은 이를 선교사 명단에 올리고 자격에 따라 정회원권(총회, 지방회(노회)기관)을 부여하고 그 치리 밑에 두며 선교사가 현지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도모한다.

(5) 선교사의 임지는 청원 당시 임지대로 교단이 파송할 수 있으나 임지의 변동등 특수한 사정으로 선교 업무수행 중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양 교단의 법적대표가 협의하여 송환 및 기타 문제를 결정한다.

(6) 선교사가 선교활동한 결과 자립이 가능하고 계속 시무할 수 있고 교회가 원할 때 양 교단(A, B)과 합의하여 허락하되 선교비의 계속 지원 문제와 후임선교사 문제는 양 교단이 합의하여 실시한다.

2. 선교사의 구분

(1) 명칭

가. 선교사의 법적 자격을 가지고 파송받아 재류하는 자의 공식명칭은 선교사이다. 단, 호칭은 해교단에 따른다.

나. 선교사가 시무하는 교단에 따라 그 명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개척선교사 -개척전도 또는 미자립교회에서 시무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2) 기관선교사 -기관에서 전임으로 시무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2) 임기 - 선교사의 임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선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한다.

나. 임기연장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선교사로 계속 시무하고자 원할 때에는 양 교단이 합의 하여 이를 결정한다.

(3) 선교사의 재정

가. 선교사는 A, B교단 합의하에 선교사가 선교지에 거주하는 동안 정식 경로를 통해서 송금하되 선불을 원칙으로 하고 해교단에 송금한다.

나. 선교사의 주택, 건강관리 등 선교현지에서 생기되는 경비는 선교사를 파송받은 교단이 이를 부담한다.

다. 선교비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모이는 A, B교단의 선교 협의회에서 논의한다.

(4) 선교사의 통신

가.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이 파송된 선교사에게 공식 문서를 보낼 때에는 파송받은 교단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파송받은 교단을 경위하여 보내야한다)

나. 선교사가 파송한 교단에게 필요한 선교활동 보고서를 보낼 때에는 파송받은 교단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파송받은 교단을 통하여 보내야한다)

다. 선교사 통신에 있어서 선교범위 내외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양교단이 이를 해결한다.

(2)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KAPC와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의 친선교류 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귀 총회 위에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9월 23일(금) 귀 총회 임원진과 저희 총회 임원진이 첫 만남을 갖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서 상호 친선교류를 갖기로 한 것에 대해 저희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총회 임원회를 갖고 귀 교단과 친선교류 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해당부서인 총회 상임발전위원회(전 총회장단)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총회상임발전위원회에서 내년총회에 친선교류 헌의안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앵커리지 총회(제41회 총회 2017년 5월16일-19일)에 귀 교단 대표를 초청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귀 교단과 본 교단이 그리스도안에서 형제의 관계를 갖고 서로 교제하며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고택원 목사
서 기 허상회 목사

(3) 일본동맹기독교단

일본동맹기독교단과의 선교협약

대한예수교고신교단과 일본동맹기독교단은 하나님 나라와교회건설 그리고 복음선교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선교협력을 협약한다.

1. 양 교단은 주안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선교협력을 위하여 고신 총회장과 동맹의 이사장이 서로 방문하면서 친밀한교제를 가지기로하다.
2. 양 교단은 목사 선교사 신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영적성숙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서로 교류하기를 희망한다.
3. 양 교단은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청소년과 청년선교과 교육 그리고 훈련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이일을 위하여 고신대학교와 동경기독교 대학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대한다.
4. 양 교단은 위의 선교협약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는 양교단의 지도자들이 충분히 검토한후 실무팀에게 일임한다.

(4) 중국 빌라델비아교회

중국 빌라델비아교회와 한국 고신교단 교류협의서

주님의 은혜가운데 중국 빌라델비아교회와 한국 고신교단이 2년간 기쁨으로 교류를 지속해 왔습니다. 아직 몇 몇 교단 지도자들과 목사님들의 교제에 국한되어 있는 아쉬움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귀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총회장 배굉호 목사님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 주심으로 두 교단의 협력이 더 깊어지게 된 것을 확신합니다.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두 교단이 더욱 깊은 교류와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기회가 증진 되기를 기대합니다.

1. 두 교단 산하 교회들이 서로 서로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 사명을 향해 힘을 기우려 땅끝까지 복음전파를 위해 노력하기를 약속한다.
2. 고신교단이 중국 빌라델비아 교단의 신학교육에 부담을 가지고 체계있는 커리큘럼을 제작하고 리더쉽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중국교회의 신학 교육사역을 지원하기로 한다.
3. 신학교육 과정에 있어서 성경교육과 신학과목에 중국 실정에 맞는 과목을 토의하며 제정해가기로 한다.
4. 지금까지 진행해온 〈중한국제목회세미나〉를 지속하되 관심이 있는 교회와 협력을 확장해가도록 한다
5. 마지막 추수사역에 중국교회 부흥을 위해 두 교단이 더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가진 교회와 노회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할 것을 협의한다.
6. 양국간 교회의 국제교류는 국제정치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으로 특수한 상황

을 고려해서 피차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로를 보호하기로 협력한다.

(5) 북동부인도개혁파 교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하는 문안합니다.
2017 년 7 월 28 일에 열린 개혁교회 장로교집행위원회 (NEI)는 만장일치로 교리 표준, 교회의 정부 형태, 신념 및 관습으로 인해 장로교 (Kosin)를 자매 교회 관계로 초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PCI (Kosin)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형제의 초청을 요청합니다.

(6) 프랑스개혁파교회

1. 이 개혁교단 프랑스 복음주의개혁교회, Union Nationale des Églises Protestantes Réformées Évangéliques de France (UNEPREF)는 Reformed Ecumenical Council (REC)에 회원교회이다. 우리 고신교회(Kosin Presbyterian Church of Korea)와 함께 ICRC회원교회– 인 화란개혁교회,Reformed Churches in The Netherlands(Liberated)와 오랫동안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이 교단은 교회와 신학교간(Theological University of Kampen)에 상호협력교류가 현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이 교단을 배경으로 하며 목회후보자 양성기관인 장 칼뱅 신학대학(Faculté Jean Calvin)입니다.
3. 현재 이 교단 안에 3~4 가정의 미국 장로교(PCA)에서 파송한 선교사들과, 브라질 장로교단(ICRC 회원교회)에서 파송한 한 분의 교수선교사 가정과 두 가정의 선교사 가정이 프랑스 복음주의 개혁교회(UNEPREF)에 들어와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위원회 배정안건 (11건)
1.발의 : 경남노회장 황규용 목사
제목 : ③교회 연합기관의 대표 파송
(제안 설명) 현재 고신교회의 대표는 총회장이다. 한국교회 연합 기관의 대표도 각 교단의 대표로 구성 되어 운영된다. 그러나 연합기관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총회장이 고신교회를 대표로서 참여하는 것은 연합회의 사업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참

여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총회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연합회의 일에 적극적인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년직의 총회장 임기를 가진 분으로 해마다 다른 분이 대표로 참여하는 현행제도는 일의 연속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연합회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 가운데 3년 정도 임기의 고신교회의 대표로 선출하여 파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발의 : 경북노회장 황금산 목사

제목 : ①총회운영위원회 위원에 총회특별국 회계 포함의 건

(제안 설명) 66회 총회에서 경북노회장 전통엽 목사가 청원한 총회운영위원회 위원에 각 상임위원회 회계를 포함하자는 안건이 통과되어 실행되고 있으나, 특별국(감사국, 재판국, 선거관리위원회 등) 회계는 포함되지 않아 총회운영위원회의 목사, 장로비율 동수배분 원칙과 상임위원회와 특별국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별국 회계(장로)도 총회운영위원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발의 : 김해노회장 박현근 목사

제목 : ①총회표준문서양식 보충 청원

(제안 설명) 제63회 총회 시에 보고된 총회표준문서양식을 각 노회가 2013년 이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회표준문서양식에는 각 노회에서 발행하는 문서 중 많은 부분이 아직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노회에서는 제 나름대로 문서를 만들어 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총회표준문서양식으로 통일된 문서를 발행하도록 한 총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노회에서 발행하는 문서들 역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문서들을 추가로 만들어서 총회표준문서양식으로 보충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 교회명칭 변경 청원	2, 교회주소 변경 청원	3. 교회직인 증명서
4. 대표자 증명서	5. 재직증명서	6. 소속증명서
7. 목사임직 증명서	8. 은퇴증명서	9. 추천서
10. 당회소속 증명서	11. 목회경력 증명서	12. 노회임원 추천서
13. 총회임원 추천서	14. 규칙개정 청원	15. 목사위탁교육 청원
16. 노회선교사 파송증명서	17. 장로지명 선택 보고	

4.발의 : 동서울노회장 김일훈 목사

제목 : ①최소 총대 인원 목사3명, 장로3명

(제안 설명) 가을 노회 시에 노회가 분립이 되면 동서울노회에 소속된 강원시찰이 강원노회가 됩니다. 이에 총회가 추진하는바 노회의 지역성과 평등성을 위해서 광역시도가 1개 노회인 경우에 최소한의 총대수를 보장하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 노회 별 최소 총대 인원을 목사 3명, 장로 3명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5.발의 : 제주노회장 정종열 목사

제목 : ①총회 최소 총대수 증원(목사3인, 장로3인) 청원 건

(제안 설명) 총회 총대 인원을 최소 목사 3인, 장로 3인으로 결의하여 줄 것을 헌의하기로 하다. 지난 66회 총회에서 남서울노회 안재경 목사가 “치리회간 동등성(노회당 목사 5인, 장로 5인)이 보장되고, 수가 섬김의 수단으로 사용되야 한다.” 는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현재 노회 구역 조정이 실시되었으나 여전히 제주노회는 선교지로서의 그 특수성을 인하여 최소 총대 수 목사 1인, 장로 1인 밖에는 총회를 참석할 수 없다. 그로 인해 바라기는 동등한 총대 수는 아니라도 최소 총대 수를 목사 3인 장로 3인으로 증원하도록 결의하여 줄 것을 헌의하는 바이다.

6.발의 : 서울노회장 손덕현 목사

제목 : ①한 노회가 목사 면직한 자를 타 노회가 목사 회원으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의 건

(제안 설명) 본 교단의 헌법 제 9장 100조(치리회 결정의 성격) 제 1항은 "각 치리회는 고유의 권한은 있으나 독립된 개체는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안은 총회 산하 교회가 준거할 수 있는 결정이 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노회는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한 노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목사 면직한 자를 교단 내의 타 노회에서 정당한확인 및 합법적 절차 없이(면직한 노회의 해벌 없이, 면직한 노회에 최소한 해벌 요청조차 시도해 보지 않은 채) 노회 회원으로 받고 목사 시무를 허락하는 처사가 정당한 것입니까?
2) 만일 한 노회가 목사 면직한 자를 타 노회에서 목사 회원으로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미 목사 가입을 허락한 노회는 현 시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옳은 것입니까?

7.발의 : 수도노회장 김홍석 목사

제목 : ③학교법인 이사 임기 조정의 건

(제안 설명)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들의 임기를 조정하여, 9월 총회에서 선출된 이후 적당한 시기에(12월까지) 등기절차를 완료하여 취임하도록 하자는 안건입니다.

1. 현재 학교법인 이사들의 임기는 4월 16일 7명, 7월 15일 1명, 9월 1일 1명, 9월 18일 1명으로 각각 그 임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로 재임하는 동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사들의 임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사장 선출 등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고, 9월 총회에서 선출된 이후에도 약 7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이사들은 그 기간 동안에 이사회의 각종 중요한 결의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구 이사들의 갈등 상황도 연출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3. 학교법인 이사들은 총회에서 선출되는 9월 이후 바로 등기 준비를 하여, 교육부에 등기를 12월까지는 일괄적으로 완료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이사들의 협조를 얻거나 지금 이후 선출되는 이사들부터 시작하여 임기를 일원화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개방이사들에게는 협조를 구해야 할 사안이지만 우리 총회의 목사 또는 장로들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총회가 결의하면 잘 순종할 것입니다.
4. 총회에서 선출되는 이사들은 “법적 내용보다는 총회의 지시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제출한 후에 취임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 결의로 임기를 정하면 현재의 이사들과 개방이사들도 잘 따를 것으로 봅니다.

8.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⑪학교법인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 개정 청원 건

(제안 설명) 지난 몇 년 동안 고려학원학교법인의 이사들의 임기문제로 총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사의 임기를 이사로 취임하는 날로부터 하는 문제로 인하여 보선된 이사, 개방이사, 총회파송이사 간의 임기문제가 총회 안에 두 힘이 있는 것 같은 불편함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총회가 결의하여 이사들의 임기를 명문화하도록 학교법인 이사들에게 보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회파송이사들의 취임은 총회결의를 바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보선된 이사는 잔여임기만 하도록 하게 만든다면 이번과 같은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불이행시에는 이사들에 대한 총회소환제도나 상회권을 정지시키는 등 제제를 결의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법인 정관 개정을 총회결의로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일입니다. 총회의 파송이사는 학교법인이사회에서 곧바로 수용토록 하고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는

것을 정관개정을 하도록 지시하기를 청원합니다.

9.발의 : 수도노회장 김홍석 목사

제목 : ④총회 기관장들을 총회언권회원으로 하자는 청원의 건

(제안 설명) 총회에서 선출되거나 총회나 총회 운영위원회 인준을 받는 총회의 기관장들을 본회의 언권회원으로 출석을 의무화 하자는 청원입니다.

1. 총회에서 선출되거나 총회 본회의 또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는 총회의 기관장들이 총회 본회의에 참석하도록 의무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야만 총회를 존중하게 됩니다.
2. 총회교육원장, 학교법인 이사장, 고신대학교 총장, 신학대학원장, 고신언론사 사장, 세계선교회 본부장,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 등의 7인은 반드시 총회 기간 동안 본회의에 참석하여 총회의 여러 가지 의결과정을 참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물론 총회 기관장들이 소속노회를 통해 정식으로 총대로 선출된다면 그대로 참석하면 될 것이며, 총대로 선출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총회 본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총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 이렇게 총회 본회의에 참석한 총회 기관장들에게 필요할 경우 언권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③위임목사 위임식 간소화 청원 건

(제안 설명) 현재 사회는 공공 기관장들의 이-취임식 간소화로 비용절감과 행사로 인한 불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가 앞장서서 이러한 허례허식과 형식적인 부분들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임목사 청빙은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통하여 위임목사로 청빙을 하여, 해당노회가 위임목사 청빙청원을 허락하고, 목사의 소속노회에 청빙 조회서를 받아 위임목사로 이명을 허락한 상태에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임식을 거행하기 전까지는 전임목사로 간주된다. 위임식 시한은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전임목사가 된다.' (교회정치 제49조1,2,3항)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회는 위임식을 위해 불필요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때로는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부임한 목사와 당회가 위임식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교회정치 제48조 (목사의 임직과 위임), 제49조 (위임목사) 조항에서 위임목사와 위임식에 관한 조항을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부임과 동시에 위임목사가 된다.' 로 개정

할 것을 청원하오며, 또는 부임하는 주일예배 시 노회장이나 시찰장(단 위임목사)이 공포하는 순서로 예식을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기를 청원합니다.

11.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⑧노회원 명부 정리의 일원화 방안 결의 청원

(제안 설명) 현재 노회마다 목사와 장로의 명부가 서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의 경우 임직과 나이순으로 하는 노회가 있는가 하면 당회조직시기를 중심으로 순서를 정하는 노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분립 개척하는 경우, 장로가 다른 교회로 이동하여 취임하는 경우, 다른 교단에서 온 장로의 취임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는 노회에 전입을 기준으로 출석부를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한 담임목사가 부목사의 뒤에 있는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부목사가 노회 내의 다른 교회에 담임으로 청빙이 되거나, 그 교회가 분립개척을 하여 담임이 되는 경우 담임목사보다 더 앞선 순위에 있음으로 인한 오해가 일어납니다.

오는 10월 노회부터 모든 노회가 목사는 임직일과 나이순으로 편목은 편목 이수를 보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장로는 임직일과 나이순으로 하되 다른 교단에서 온 장로는 취임일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노회가 동일한 기준으로 노회원의 명부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청원합니다.

▌미래정책연구위원회 배정안건 (1건)

1.발의 : 수도남노회장 문천회 목사

제목 : ③교회정치 제53조 외국거주 목사 청빙에 대한 조항 개정 건

(제안 설명) 현행 우리 총회 헌법, 교회정치 제 53 조 (외국거주 목사 청빙)은 제51회 총회(2001년)에서 '외국 거주자인 목사(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자)를 청빙할 수 있으며, 본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졸업을 한 자에 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라도 전임 혹은 위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목양을 감당하는 목자로서 그 마음을 온전히 양떼에 두는 목양일념의 정신과 향후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법적 책임에서 얼마든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각종 위법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대상황에 대응하는 우리 총회의 위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재들을 청빙할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 우리 총회의 현실과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같은 장로교의 전통을 가진 통합이나 합동교단이 취하고 있는 입장보다 훨씬 후퇴한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우리 총회가 견지한 입장을 회복하는 동

시에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을 청원합니다.

〈아 래〉

교회정치 제 53조(외국 거주 목사 청빙)	
현행: **제51회 총회(2001년) 수정**	**헌법 개정안 청원내용**
외국 거주자인 목사(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자)를 청빙할 수 있으며, 본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졸업을 한 자에 한 한다.	**1. 영주권을 가진 목사는 청빙이 가능하다.** **2. 시민권을 가진 목사는 청빙절차가 가능하나 청빙을 수락하려면 한국국적을 회복해야 한다.** **3. 이중국적자는 청빙이 가능하다.** **4. 본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졸업을 한 자에 한 한다.**

▌법제위원회 배정안건 (19건)

1.발의 : 남마산노회장 원대연 목사

제목 : ①교회정치 중 목사고시 과목 수정 청원 건

(제안 설명) 교회정지 제 16장 제 175조(목사고시)

2.고시과목 (1)제출과목(6개월 이상 앞서 공시)

"1) 논문 : 신학의 요긴한 문제에 대한 논문" 을 삭제할 것을 청원합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논문작성법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과과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논문은 선택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논문을 쓰지 않기 때문에 목사고시에도 논문을 선택으로 하든지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2.발의 : 동부산노회장 김윤근 목사

제목 : ②총회 상임위원회 전도선교부 내에 '자립성장위원회' 신설 청원

(제안 설명) 총회 전도부 주관으로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 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서 상당한 성과가 있고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더하여 개척된 교회들뿐 아니라 기존 교회들 중에도 수년 동안 자립 성장하지 못하여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자립교회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제66회 총회(2016년)에 보고된 통계를 보면 총회 산하 교회수는 2,042개 교회이고 미조직교회는 1,003개 교회로 49.1%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미자립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많

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자립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교회의 존폐 문제까지 대두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단이 안고 있는, 또 풀어가야 할 현실적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필요하지만 낳은 아이를 건강하게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도선교부 내에 "자립성장위원회"를 신설하여 미자립교회들의 자립 성장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지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 후 빨리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미자립교회들도 침체에서 벗어나 자립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서 서로를 돌아보는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미자립교회들에게 성장의 활력을 되살리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미자립교회의 현황 파악과, 지원할 수 있는 교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회자 영성 프로그램, 교회성장 프로그램, 장년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설 리모델링 지원 등 각 교회별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 작업 등에 힘쓰도록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개척 후의 성장과 미자립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 과제를 총회가 선도하여 실행한다면 3,000교회 운동으로 세워지는 개척교회들과 미자립교회들이 자립 성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여겨 청원합니다.

총회 규칙 제13조(상임위원회 임무)

3. 전도선교부

1) 국내전도위원회는 …

2) (삭제)

3) 다문화선교위원회는 …

4) 군경목선교위원회는 …

5) 농어촌위원회는 …

6) 통일한국대비위원회는 …

번호) 자립성장위원회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들의 자립 성장을 위한 지원정책을 연구, 개발, 실행한다.

3.발의 : 동부산노회장 김윤근 목사

제목 : ③총회 임원 및 각 법인(총회유지재단 이사회,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회, 총회은급재단 이사회)의 목사임원(이사, 감사)은 임원과 각 법인별로 신학대학원 한 동기회에서 두 사람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신설 청원

(제안 설명) 우리 교단의 헌법과 총회규칙에는 교단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하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인원수 제한, 겸임

금지라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또 한 노회나 교회의 과도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노회 지역별 안배를 하고, 총대나 부원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관련 헌법과 총회 규칙)

1) 총회 임원 후보는 한 노회에서 2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한 교회에서는 1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총회 규칙 제2장 제6조 2항, 선거조례시행세칙 제5조 3).

2) 장로총대는 한 교회에서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헌법적규칙 제3장 제6조 1항).

3) 총회 임원은 각 법인, 이사, 감사(유지재단, 학교법인)를 겸할 수 없다(총회 규칙 제2장 제6조 3항).

4) 각 치리회의 임원은 해 재판국원 및 기소위원, 특별재판국원, 수습위원 또는 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헌법적규칙 제4장 제19조 2항).

5) 총회유지재단 이사 및 감사와 고려학원 이사 및 감사를 한 노회에서 2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한 교회에서는 1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총회 선거조례시행세칙 제5조 2)

6) 선거관리위원회는 9인(목사 5인, 장로4인)으로 조직하며...(중간 생략) 단, 위원은 임직 받은 지 15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하되 노회 지역을 안배한다. (총회 선거조례 제2장 제2조 조직 1)

(현실의 예)

현재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의 이사 구성을 보면 목사 9명 중 신학대학원의 같은 졸업 동기가 5명입니다(5/9). 물론 어떤 졸업 동기회는 졸업생이 많기도 하고 능력이 뛰어난 이들도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교단의 큰 일에 있어서 편향될 수 있기도 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기들은 오랫동안 맺어진 관계 때문에 교단의 중대한 일을 미리 의논하고 결정하여 임원회나 법인 이사회에서 동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좋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경우에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교단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임원과 각 이사회, 부회, 국, 상임위원회의 조직에 적용하고 있는 인원수 제한, 겸임 금지, 노회 지역 안배의 취지에 맞추어 신학대학원 동기의 수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총회규칙 제2장 임원

제6조(임기)

5. 임원과 각 법인 이사회의 이사, 감사 중 목사는 신학대학원 한 동기회에서 두 사람을 초과하지 못한다. 선거 결과 한 동기회에서 두 사람을 초과한 경우 득표순, 임직 년수, 연장자 순으로 한다.(신설)

4.발의 : 수도남노회장 문천회 목사

제목 : ②총회 임원 및 각 법인 이사중 목사 이사는 고려신학대학원 동기회 내 두사람(2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총회 규칙 개정 하는 건

(제안 설명) 총회 임원의 경우 한 노회에서 두 사람을 초과하지 못하며(총회규칙 제2장 제6조 2항 참조), 총회 총대의 경우에도 장로총대는 한 교회에서 2인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헌법적규칙 제3장 제6조 1항 참고) 또한 노회 임원의 경우에도 한 당회에서 두 사람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겸임 금지와 관련해서는 총회 임원의 경우 법인, 이사, 감사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총회 규칙 제2장 제6조 3항 참조), 노회 임원을 맡고 있는 경우에도 노회 내 재판국원 및 기소위원, 특별재판국원, 수습위원 또는 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헌법적규칙 제4장 제19조 2항 참조) 이는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특정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총회 내 모 이사회는 이사장을 제외한 목사 이사 8명 중 5명이 동일한 신대원 동기회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이사 각자의 능력이 출중하여 업무를 공정하게 보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합리적 판단에 의구심이 들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총회 임원 및 각 법인 이사 중 목사 이사는 고려신학대학원 동기회 내 두사람(2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총회 규칙 개정을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현행 조항〉

1) 총회규칙 제2장 임원 제6조 2항

제6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동일직에 연임하지 못한다.
2. **임원은 한 노회에서 두 사람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임원은 각 법인, 이사, 감사(유지재단, 학교법인)를 겸할 수 없다.**
4. 임원과 각 법인, 이사, 감사(유지재단, 학교법인)는 임기 중 7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추가 변경 안〉

5. 총회 임원 및 각 법인 이사 중 목사이사는 고려신학대학원 동기회 내 두 사람을 초과하지 못한다.

5.발의 : 충청노회장 곽창대 목사

제목 : ①총회 상비부(이사회, 위원회 포함)의 구성에 관한 건

(제안 설명) 특정 노회나 신학대학원 특정 기수의 정치적인 의도와 독단을 막으며, 각 노회와 기수에서 총회 상비부(이사회, 위원회 포함)에 골고루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6.발의 : 동부산노회장 김윤근 목사

제목 : ④장로가 미조직교회로 이거하여 봉사하고자 할 경우 시무장로의 직을 유지하도록 헌법 개정 청원

(제안 설명) 1) 교회가 분립하거나 합병할 경우 교회의 명칭과 당회장, 항존직원의 수와 명단을 노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헌법 교회정치 제16조 1항 2항, 헌법해설 교회정치 제56문 3항). 현재는 분립개척교회로 파송된 장로의 경우, 모교회의 연장으로 보아 취임할 필요없이 시무장로 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헌법 교회정치 제16조, 제65회 총회). 앞으로는 교회가 분립, 혹은 합병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기에 이것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2) 60세 이상의 시무장로 중에서 후진들에게 길을 터준다고 조기 은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의도는 좋지만 아직 일할 수 있음에도 은퇴하여 교회의 일꾼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대수명이 많이 늘어난 우리 사회의 현실과 개인적인 면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반면 미조직교회는 일꾼이 없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여 그냥 있는 것보다 미조직교회로 가서 봉사하는 것이 미조직교회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개인적으로도 계속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파송하는 형식입니다. 총회 산하 상당수의 미자립교회를 살리는 방안의 하나로 미조직교회를 조직교회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헌법 교회정치 제70조(무임장로)에 규정된 “등록한 후 3년 이상” 을 적용하지 않고, 미조직교회에서 시무장로로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상자는 은퇴가 가능한 60세 이상으로 하고, 다른 미조직교회로부터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청원과 본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허락과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장로가 미조직교회로 이명할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장로의 가족들 중 집사나 권사가 있으면 헌법 교회정치 제81조와 제88조에 의거, 경과 기간 없이 이거하는 교회에서 절차를 거쳐 취임할 수 있습니다.

* 헌법 교회정치 제68조 (장로의 임직) **(3항 신설)**

3. 다음의 경우 시무장로의 직을 유지한다.

1) 교회가 분립 또는 합병할 때

2) 60세 이상의 장로가 다른 미조직교회로부터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청원과 본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허락과 노회의 허락으로 이거하여 봉사할 때

7.발의 : 전라노회장 안점수 목사

제목 : ①원로목사 추대절차 확인 요청

(제안 설명) 교회정치 제42조 10호에 의하면 '원로목사 추대 절차에 있어 개체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은퇴할 때 소속교회 공동의회에서 추대결의를 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원로목사가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노회허락' 의 용어해석에 있어 '보고사항' 이라는 의견과 '결의사항' 이라는 의견이 혼동되고 있기에 '노회허락' 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셔서 업무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⑫원로목사 추대에 관한 법적 해석 요청

(제안 설명) 총회헌법(교회정치 제42조 10호)에 의하면 '원로목사 추대 절차에 있어 개체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은퇴 할 때 소속 교회 공동의회에서 추대 결의를 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원로목사로 된다.' 라고 규정 되었는데 '노회허락' 의 용어해석에 있어 '보고사항 이라는 의견과 '결의사항' 이라는 의견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회의 결의사항으로 인식할 경우 원로목사추대는 개 교회의 문제인데 노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살피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회의 허락을 받아' 라는 부분이 '노회의 다시 결의를 해야 하는 결의사항인지 아니면 노회가 절차를 살펴보고 교회의 보고를 받아들이는 보고사항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발의 : 전라노회장 안점수 목사

제목 : ②위임목사 자격 취득 시기 개선 요청

(제안 설명) 교회정치 제49조 2항에 위임목사의 자격에 있어 '노회에서 위임목사로 허락 받은 자가 위임식을 거행하기까지는 전임목사로 간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임식을 한 후에야 위임목사가 되도록 되어 있다. 위임목사 청빙절차는 교회정치 제50조에 의하여 조직교회가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고, 청빙할 교회 소속 노회 결의를 거치고, 청빙대상 목사의 소속 노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모든 절차를 거쳐 부임을 하게 된다. 위임식은 교회의 형편에 의하여 부임 즉시 거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는 위임목사로 부임을 했는데도 위임식을 거쳐야 위임목사가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

다 할 것이다. 위임목사는 법에서 규정한 모든 청빙절차를 거치고 상대노회의 이명서가 접수되는 즉시 청빙한 교회의 위임목사가 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10.발의 : 전라노회장 안점수 목사

제목 : ③교회정치에서 '장년교인' 기준의 명확한 설정

(제안 설명) 교회정치 제14조 2항 개체교회의 설립기준에 따르면 '개체교회 설립에 필요한 교인들의 수는 장년교인(원입, 학습, 세례)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년교인이라 할 때 그 기준이 연령에 있어서 어느 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호성이 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장년이라 함은 '한창 기운이 왕성하고 활동이 활발한 30세부터 40세 안팎의 나이' 라 정의 내리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말한다면 30세 이상인 자를 장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연령 전에도 이미 사회생활 속에서 결혼을 하고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또한 각 직분의 시무 한계 연한이 70세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후의 연령이라 할지라도 왕성한 봉사를 해 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장년' 이라 하였을 때의 연령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11.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②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의 자격에 관한 연령제한 수정 청원 건

(제안 설명)

1. 교회정치 제32조 (교회 항존직원의 시무정년) 교회 직원의 시무정년은 70세까지로 하되 정년 되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
2. 교회정치 제65조 (장로의 자격) 제76조 (집사의 자격) 제85조 (권사의 자격) 각 1항에서는 "만 몇 세 이상, 몇 세 이하" 라고 규정.
3. 헌법해설 교회정치 제 214문에서는 장로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연령기준이 어떠한가? 에서는 만 40세 이상 65세 이하이다. 교회에서 통용하는 연령계산은 만으로 하며 호적상의 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호적상 생일이란 40세 이상은 만 40세 해의 생년월일부터이며 65세 이하라는 말은 65세 되는 해의 생년월일부터 다음해의 생년월일 전 날까지를 말한다. 라고 해설함으로 지금까지의 관례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 항존직원의 시무정년은 70세가 되는 연말을 기준으로 하는데, 선택은 해당연도(65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으로서, 교회정치 32조와 항존직 선택에 대한 헌법해설이 상충되고 있어 개체교회가 항존직을 선택하는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선출 할 때 그 해에 만 65세가 되는 자는 은퇴는 같은 날 하면서 선출에 있어서는 생일이 며

칠 지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이고, 또 같은 연배이지만 생일 늦은 관계로 선출 후보에서 제외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존직(장로, 집사, 권사) 선출시 시무정년과 같이, 선택하는 연령(이하 이상은 생략)은 (생일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에 만 00세(직분 따라)에서 65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로 헌법과 헌법해설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도 생년월일에 맞춰 은퇴를 하도록 해야 법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발의 : 군경목선교위원회위원장 이광수 목사

제목 : ②위원회 명칭 변경과 이에 따른 관련 규칙 변경 건

(제안 설명) 1. 이유 1)군경목선교위원회라 하나 경목 관련 선교를 할 시간적, 경제적 여력도 없고 이미 초교파적으로 경목위원회가 다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음으로 할 수도 없음. 2) '000 선교회' 라는 명칭 앞부분은 대개 선교의 대상이 나옴 (예를 들어 농어촌선교, 군선교, 해외선교 등) 그런데 현재 명칭은 군경목으로 되어 있어 목사가 선교의 대상이 되어 있음. 따라서 '군선교위원회' 로 개칭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 규칙변경 : 이에 따라 총회규칙 3장 제13조 3. 전도선교부의 4)번 '군경목선교위원회는 교단 군종목사와 민목을 지도 감독하고 군인전도에 관한 일과 경찰 및 교도소 선교를 담당한다.' 를 '군선교위원회는 교단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민목) 및 군종 후보생를 지도 감독한다.' 로 수정함을 하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발의 : 예결산위원회위원장 우신권 장로

제목 : ②총회규칙 개정안(제15조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현행 총회규칙의 시행 상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총회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5조(특별위원회) 1.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과 임무는 총회에서 선정한다. 2. 특별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만 처리하며 특별위원의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하되 사건처리가 끝나지 않을 때에는 총회의 허락을 받아 임기를 연장하거나 다시 선임	제15조(특별위원회) 1. (현행과 같음) 2.특별위원회는----------특별위원의임기는----------다시 선임한다.	특별위원회 존치(안) 상정 시에는 법제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총회에 보고케 함으로서 연장에 따른 인력,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자 함

한다. (후단 신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존속여부에 대하여는 법제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법인) 1.각 법인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감사는 2년으로 하되 각각 단임으로 한다(학교법인 감사는 제외). 총회 임원, 각 법인 이사, 감사(유지재단, 은급재단, 학교법인, 고신선교사회, 총회교육원)은 겸할 수 없다(단, 총회장은 유지재단 이사장만 겸할 수 있다). 2. (생략) 3. 각 법인의 임무 1)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서울특별시) 2) 고려학원 이사회 (1)~ (7) (생략) (8) 선정된 이사 및 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사, 감사 취임 승인을 받은 후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하 생략)	제17조(법인) 1.----------고신총회세계선교회,---------- 2. (생략) 3.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1)~ (7) (현행과 같음) (8)----------교육부의----------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의 대내 공식명칭으로 정리 현행 정부조직법상의 공식명칭인 “교육부” 명칭으로 정리함

14.발의 :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조 목사

제목 : ①총회 선거조례 제15조(규제) 1항의 개정

(제안 설명) 봄 정기노회에서 총회 총대가 선출될 때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때부터 선거운동의 규제조항들이 적용되어야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임.

현행 조항 :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노회 추천일로부터 총회선거 완료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하, 1항 2항 3항 생략)

개정안 : 예비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봄 정기노회가 끝나는 날로부터 총회선거 완료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하, 1항 2항 3항은 현 조항과 동일)

15.발의 :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김윤하 목사

제목 : ①이사정수 개정을 위한 총회규칙 및 KPM 정관 개정 총회 상정 청원 건

(제안 설명) 교단 선교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한 이론과 경험을 가진 전문직의 보완 그리고 선교정책의 활발한 연구 및 제안을 위한 정책위원회의 적극적 활동 등을 위해 총회규칙과 KPM 정관을 개정하고자 청원합니다.

1) 총회규칙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18조(준법인:고신세계선교회) 2.(이사회)고신세계선교회는 이사회를 두고 이사는 15인으로 구성한다. 3.(총회선출이사)총회 선출이사 11인(목사 7인, 장로 4인)은 해외선교를 모범적으로 하는 교회 중심으로 총대 중 공천위원회에서 2배수 공천하여 총회에서 투표로 선정한다. 4.(당연직 이사)당연직 이사 4인은 세계선교본부장, 선교후원교회협의회 2인, 총회 임원회에서 추천한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중에서 선교학 전공교수 1인이며,이사회가 인준한다.	제18조(준법인:고신세계선교회) 2.(이사회)고신세계선교회는 이사회를 두고 이사는 17인으로 구성한다. 3.(총회선출이사)총회 선출이사 12인(목사 8인, 장로 4인)은 해외선교를 모범적으로 하는 교회 중심으로 총대 중 공천위원회에서 2배수 공천하여 총회에서 투표로 선정한다. 4.(당연직 이사)당연직 이사 5인은 세계선교본부장, 선교후원교회협의회 1인, 정책위원장, 이사회가 추천한 전문직 2명으로 하고 이사회가 인준한다.	**2항**의 이사수를 15인에서 17인으로 개정. **3항**의 총회선출 이사를 11인에서 12인으로 개정. **4항**의 선교후원교회협의회 2인에서 1인으로, 정책위원장을 당연직이사로, 총회임원회의 선교학 전공교수 1명 추천에서 이사회의 추천 전문직 2명으로 개정.

2) KPM 정관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5조 1.이사는 15인(이사장 포함)으로 한다.	제5조 이사정수 1.이사는 17인(이사장 포함)으로 한다.	**1항**의 이사수를 15인에서 17인으로 개정.

2.이사는 총회선출 이사 11인(목사7인,장로4인)과 당연직으로 본부장. 고신세계선교후원교회협의회 2명, 총회 임원회가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의 선교학 전공교수 중에서 추천한 1명으로 한다. 3.정책위원장, 훈련원장, 세계선교사회 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이사는 총회선출 이사 12인(목사8인,장로4인)과 당연직으로 본부장, 고신세계선교후원교회협의회 1명, 정책위원장, 이사회가 추천한 전문직 2명으로 한다. 3.훈련원장, 세계선교사회 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항**의 총회선출 이사를 11인에서 12인으로, 고신세계선교후원교회협의회 2명에서 1명으로, 정책위원장을 당연직이사로, 총회임원회의 선교학 전공교수 1명 추천에서 이사회의 추천 전문직 2명으로 개정. **3항**의 정책위원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16.발의 :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김윤하 목사

제목 : ②선교사 은퇴에 대한 정관개정 총회 상정 청원 건

(제안 설명) 선교사가 조기 은퇴를 원할 경우 사임과 은퇴에 대한 대한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안내를 하기위해 정관 개정을 하고자 청원합니다.

현행	개정(안)	비고
3장 **제23조 선교사의 정년** 선교사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3장** **제23조 선교사의 정년** 선교사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단 20년 이상 사역한 60세 이상인 자는 조기 은퇴가 가능하다.	(추가) “단 20년 이상 사역한 60세 이상인자는 조기 은퇴가 가능하다.”

17.발의 : 유지재단 이사장 배굉호 목사

제목 : ①유지재단 이사 수 경과조치 안

(제안 설명) 제66회 총회에서 유지재단 이사 수를 9인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으나 유지재단의 업무의 계속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이사 수 경과조치 안을 청원합니다. 제66회 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하려면 제68회 총회 시 장로이사 1명 선출되며, 제70회 총회 시에는 제69회기까지 재직한 7명의 이사가 사임하게 되며, 제68회 총회 시 선출된

장로이사 1명만 남게 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2017년 9월(67회)	2018년 9월(68회)	2018년 9월(68회)	2019년 9월(69회)	2020년 9월(70회)
이사장 1명 목사이사 8명(4+4) 장로이사 6명(3+3) 합 15명	이사장 1명 목사이사 4명 장로이사 3명 장로이사선출 1명 합 9명	이사장 1명 목사이사 6명 (기존4명+선출2명) 장로이사 5명 (기존3명+선출2명) 합 12명	이사장 1명 목사이사 6명 장로이사 5명 합 12명	이사장 1명 목사이사 4명 (기존2명+선출2명) 장로이사 4명 (기존2명+선출2명) 합 9명

18.발의 : 유지재단 이사장 배굉호 목사

제목 : ②제70회 총회 시부터 유지재단 이사 수 변경 청원

(제안 설명) 제66회 총회 시 결의된 유지재단 이사 9명(이사장 포함)으로는 총회 산하 각 교회들의 재산과 총회재산 관리 및 언론사 운영을 하기에 부족함으로써 업무의 계속성과 관련하여 제69회 총회까지는 이사 수(12명)에 대한 경과 조치 안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제70회부터는 부총회장(목사, 장로) 2인을 유지재단에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게 된다면 이사 11명으로써 업무처리에 유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사부총회장은 다음회기 이사장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업무파악을 미리 하게 됨으로써 재단업무 처리에 유익할 수 있으며, 장로부총회장은 높은 식견을 가진 자로서 재단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청원합니다.

19.발의 : 학교법인 이사장 황만선 목사

제목 : ②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개정(안) 승인 요청

(제안 설명) **1. 개정 사유서**

1) 사립학교법 제45조②항에 의거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교육부에 보고 하여야 하며, 사립학교법 제24조(임원의 보충) 및 정관 제20조③항에 의거 관할청으로부터 결원 임원 충원에 대한 지적을 받았기에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제5조(정관변경)와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총회운영위원회' 를 추가 하고자 합니다.
2) 이사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22조 ②항에 '2년으로 하고' 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3)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인한 정관 제27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제36조 (임면), 제36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37조(휴직의 사유), 제38조(휴직의 기간), 제41조(직위해제 및 해임), 제45조(인사위원회 회의 기능), 제5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제53조의2(징계사유 및 종류), 제53조의3(징계의결의 요구), 제55조의3(징계의결 요

구사유 통지), 제58조의2(징계사유의 시효)를 신설 및 변경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관 제65조 (신분보장 및 정년)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안)	비고
제5조(정관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받고,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이를 **관할청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변경)** ①이 정관의 변경은 **총회 또는 총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고,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이를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또는 총회운영위원회의' 추가** **②항신설 (사립학교법 제45조제2항)** **'관할청에게→관할청에' 로 수정**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 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속하는 해당 부문의 전문인과 총회 소속의 목사와 장로 중에서 교단 **총회의** 동의를 받아 ...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 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속하는 해당 부문의 전문인과 총회 소속의 목사와 장로 중에서 교단 **총회 또는 총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 공개하여야 한다.	**'또는 총회운영위원회의 ' 추가**
제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②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년으로하고' 를 추가**
제27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5.대학교의 총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27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5.대학교의 총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임면-〉임용으로 수정 (사립학교법 제2조제4항)**
	제36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	**(신설) (사립학교법 제54조의 5)**

신설	**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한다.** **1.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제5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 **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 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 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 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6 생략. 7.자녀(**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	**제37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6 생략. **7.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	**제37조수정 (사립학교법 제59조)** **( )추가** **제7호 수정** **제7의2호 신설 (사립학교법**

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 때. 8~11 생략.	**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11 생략.	**제59조)**
제38조(휴직의 기간) 1~10 생략.	**제38조(휴직의 기간)** 1~10 생략. **11.임용권자는 제37조 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11. 신설** **(사립학교법 제59조제3항)**
제41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생략.	**제41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생략. **4.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사람으로 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임면->임용으로 수정** **(사립학교법 제2조제4항)** **4.신설** **(사립학교법 제58조의 2 제1항 제4호)**
제52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①생략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①생략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 6인** **2.이 법인에 소속되지 않으면 "사립학교법 제6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하 '외부위원' 이라 한다) : 1인**	**② 수정** **1,2** **③④** **추가** **(사립학교법제62조)**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외부위원이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사장은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8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58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2년→ 3년으로 수정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② 추가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6조(임면) ①.. 임면.. 임면.. ③.. 임면.. ④.. 임면.. ⑤.. 임면.. 임면.. 임면.. 제41조(직위해제 및 해임) ②.. 임면.. ④.. 임면.. ⑤.. 임면.. ⑦.. 임면.. 제45조(인사위원회 회의 기능) 1.. 임면.. 제53조의2(징계사유 및 종류) ①.. 임면.. 제53조의3(징계의결의 요구)..임면.. 제55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	제36조(임용) ①.. 임용.. 임용.. ③.. 임용.. ④.. 임용.. ⑤.. 임용.. 임용.. 임용.. 제41조(직위해제 및 해임) ②.. 임용.. ④.. 임용.. ⑤.. 임용.. ⑦.. 임용.. 제45조(인사위원회 회의 기능) 1.. 임용.. 제53조의2(징계사유 및 종류) ①.. 임용.. 제53조의3(징계의결의 요구).. 임용.. 제55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 임용..	임면->임용으로 수정 (사립학교법 제2조제4항)

지) .. 임면..		
제65조 (신분보장 및 정년) ② 대학 소속 일반직원의 정년은 5급 이상의 직원은 만61세, 6(등)급 이하의 직원은 **만58세**로 한다.	**제65조 (신분보장 및 정년)** ② 대학 소속 일반직원의 정년은 5급 이상의 직원은 만61세, 6(등)급 이하의 직원은 **만60세**로 한다.	**만58세->만60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신학교육부 배정안건 (5건)

1.발의 : 수도노회장 김홍석 목사

제목 : ①동성애에 대한 총회차원의 입장표명과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요청의 건

(제안 설명)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동성애 수용 분위기가 가장 급속히 고조되고 있는 사회라고 미국의 퓨 사회조사연구소(Rew Research Center)가 최근 분석한 바 있다. 20대 71%가 그리고 30-40대의 48%가 사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사회는 동성애에 대해 상당히 관용적인 입장으로 변해오고 있고, 동성애와 동성애자 문제를 소수(자) 차별과 인권에 결부시켜서 이것을 인권보호의 한 부분으로 몰아가려는 운동이 강해지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동성애 성향과 행위를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으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대학가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젊은이들과 신자들은 이러한 문화에 접하고 있고, 은근히 그 영향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동성애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이것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연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지, 동성애자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교회가 가르쳐 주기를 바라고 있다. 더군다나 기독교교단마다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보니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라 총회는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속히 표명하고, 또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개혁주의적 신학에 입각한 목회적 지침을 만들어 내려주어 목회자들로 하여금 바르게 가르치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해 주길 요청한다.

2.발의 : 신학위원회위원장 전원호 목사
제목 : ②교회정치 제8장 준직원과 임시직원 1항 강도사
(제안 설명) 강도사 인허증 전달은 매년 4월 노회 때에 하게 됩니다. 목사고시를 교회 헌법에 적합하게 시행하려면 노회는 강도사 인허증 전달 2년 뒤인 4월 노회를 지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므로 "2년 이상" 을 "1년 6개월" 이상으로 수정하야 합니다. 교회정치 제8장 준직원과 임시직원 1항 강도사에서 "…. 강도사가 목사 임직을 받으려 하면 목사고시를 청원하기 까지 다음과 같은 수련봉사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1항) 강도사 자격 인허 후 단독교회, 부교역자, 각 기관 간사,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교역자로 2년 이상 시무한 후에서 "2년 이상" 을 "1년 6개월 이상" 으로 수정

3.발의 :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위원장 강만구 목사
제목 : ①S.F.C. 신학간사들의 은급재단 가입 요청 건
(제안 설명) 전국 SFC 목사간사들의 숫자가 현재 47명이 됩니다. 그 중 12명은 출석교회의 협조로 은급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목사간사들이 은급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출석교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간사들은 교회에서 퇴직금이 따로 없습니다. 간사들이 매월 드리는 십일조 액수만큼 혹은 일정부분이라도 교회에서 은급재단에 가입해주시길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4.발의 : S.F.C. 조사위원회위원장 김상석 목사
제목 : ③S.F.C.신학간사들의 은급재단 가입 청원
(제안 설명) KPM소속선교사들은 모두가 은급재단에 가입되어 있는데, SFC 신학간사들 대다수가 은급재단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간사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적극 협조하여 은급재단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를 바랍니다.

5.발의 :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위원장 강만구 목사
제목 : ⑤전국 S.F.C. 중 · 고등부 교사연합회
(제안 설명) 교단에는 주일학교 교사연합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연합회는 유 · 초등부 교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 · 고등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합회는 없는 실정입니다. 무너져가는 다음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중 · 고등부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교사양육, 교사대회 등을 위하여 전국SFC 중 · 고등부 교사연합회를 청원하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위원회 배정안건 (7건)

1.발의 : 남부산노회장 권종오 목사

제목 : ②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고신교회의 입장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안 설명) 근래에 한국교회와 신학계에 대두되고 있는 이신칭의의 논쟁으로 인해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사이에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학적인 연구와 논의는 있어야 하겠지만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의 견해와 고신교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셔서 불필요한 교회 내외의 논쟁과 혼란을 불식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2.발의 : 서부산노회장 안영호 목사

제목 : ①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고신의 입장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의 견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 청원

(제안 설명) 신학세미나 "이신칭의,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 에 대하여

1.신학세미나

미래교회포럼(대표자 박OO 목사, 구성원 정OO 목사, 이OO 목사, 곽OO 목사 등)과 이 단체를 대변하고 선전하는 언론매체 코람데오닷컴은 개혁주의신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며 고신교회의 정체성에 관련된 칭의론 신학세미나를 2016년 12월 5-6일, 서울 종로 연동교회당에서 개최했다. 강사는 김OO 교수와 박OO 교수였다.

2.내용

주 강사 김OO 교수는 이틀에 걸쳐 6시간 동안 개혁신학 칭의론과 아주 상반되는 '유보적칭의론' 을 주장하였다. 칭의만으로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칭의를 선행으로 완성시켜야 심판대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며, 그 시점까지 완전한 칭의가 유보된다고 하는 사상을 역설했다. 김OO은 이 강의를 통해 전통적인 개혁신학의 칭의론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고신출신 신학자 최OO 교수(백성대학교)가 이 세미나에서 김OO의 유보적 칭의론을 강력히 변호했다. 그는 〈코람데오탓컴〉에 기고한 글에서 예수 믿는 자도 행위에 따라 지옥에 간다고 주장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박OO 교수가 1시간 정도 개혁신학의 칭의론을 소개하였다.

3.문제점

1) 세미나 제목에 문제가 있다.

이 세미나의 주제 제목은 이신칭의 진리에 모독적이다. 이신칭의 진리가 성도들의 비

윤리적인 삶의 원인으로 인식되도록 한다. 즉 이신칭의 교리로 면죄부를 삼아 성도들이 비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한다. 형식적 또는 명목상의 기독교 신자이거나, 교회가 이신칭의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이신칭의 교리 그 자체가 비진리이거나 결함이 있고, 면죄부가 되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한다.

2) 세미나의 초점은 김OO 교수의 유보적 칭의론을 파급시키는 데 있었다.

세미나는 강의자들에게 동일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전통적 입장을 소개한 박OO 교수에게는 1시간 정도, 이신칭의 교리에 도전하는 김OO 교수에게는 이틀에 걸쳐 6시간의 강의를 하게 했다. 김OO 교수의 주장을 정면에 내세워 이신칭의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개최된 세미나였음을 보여준다.

3) 김OO 교수의 주장은 천주교 칭의론이다.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칭의를 완성해야 심판대에서 의롭다고 최종적인 칭의를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천주교는 믿음과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면죄부, 연옥설, 고백성사로 신자들을 천주교 제도에 옭아매는 비성경적교리이다. 김OO 교수가 고해성사나 연옥교리를 주장하지 않으나,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함을 받아도 최후 심판 때까지 자기가 행함으로 칭의를 완성해야 최종적 칭의 곧 구원을 받는 다는 것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칭의론과 다르지 않다.

4) 박OO 교수의 발제는 소극적이었고 약한 측면이 있었다.

박OO 교수가 말한 칭의론은 개혁신학이 고백하는 전통적 이신칭의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김OO 교수의 그릇된 주장에 강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소극적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어느 참석자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 고 지적했고, 박OO 교수는 학자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발뺌을 했다.

5) 이OO 목사는 고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마지막 총평 시간에 이OO 목사는 참석자 전원을 향하여 마이크를 잡고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린다고 말했다. 자신이 개혁주의 이신칭의 교리를 확신하지 않는 발언이었다. 그는 고신의 교의학 교수들이 구원의 서정을 시간순인 것처럼 가르친 것을 회개하라고 말했다. 이는 고신 신학자들의 명성을 깎아 내린 발언이었다. 어느 누구도 구원의 서정이 시간 순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이근삼 박사도 시간 순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마치 고신교단 신학교 교수들이 이신칭의를 잘못 가르친 것처럼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여 교단적인 명예를 추락시키고 신인도를 저하시켰다.

4.청원

1) 고신교단은 소속 목사, 신학자는 설교, 글, 강연, 활동에 대한 총회와 노회의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신교단 목사들이 주도하는 미래교회포럼은 김OO 교수를 세미나

주강사로 내세워 이신칭의 교리를 폐기해야 할 것처럼 부각시켰다. 〈코람데오닷컴〉이 게재한 정OO 목사의 글, 최OO 교수의 글, 김OO 교수의 서면 인터뷰 글은 이신칭의 교리를 허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2) 미래교회포럼과 〈코람데오닷컴〉을 주도하는 고신교단 목사들은 개혁주의 신학을 깔아뭉개는 행동을 했다. 이신칭의의 복음과 신학을 사수해야 할 목사들이 이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여 교회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위 세미나의 김OO의 주장과 코람데오닷컴에 게재한 글들은 '다른복음' 이다. 고신의 신학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 개혁주의 정통신학을 허무는 것에 기여했다. 고신 교단의 명예를 추락시켰다. 나머지 고신 교단과 소속 목사들과 신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이다.

3) 고신교단은 이신칭의를 파괴하려는 김OO 교수가 '유보적 칭의론' 을 6시간이 강의하도록한 미래교회포럼 관계자 목사들과 개혁주의 신학에 역행하는 글들을 게재한 〈코람데오닷컴〉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적합한 징계로 교회와 진리를 보호할 것을 청원한다.

3.발의 : 수도노회장 김홍석 목사

제목 : ⑤개혁주의 장로교회 절기들에 관한 질의의 건

(제안 설명)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는 개혁주의 장로교회를 표방하지만 개혁주의와는 동떨어진 신앙문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므로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절기들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도록 질의합니다.

1. 우리 총회는 개혁주의 장로교회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경우가 많습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에 대한 지식이 그리 깊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2. 최근 들어서 우리 총회 소속교회에서도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은 물론이고 총회에서 조차 신학대학원 主日(주일)이나 농어촌주일 등을 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학대학원 週間(주간)이나 농어촌주간을 정하는 것과는 사뭇 다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일은 오직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과는 결합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3. 물론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삼위일체주일 등과 같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긴 절기는 개신교회가 모두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 절기들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국가적이거나 문화적인 절기가 자꾸만 보태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4. 예를 들자면 맥추감사절에 대한 신학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국교회의 신학적 지식이 다소 결여되었을 당시와 지금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봅니다. 신학적 수준이 많이 높아진 현재 상태에서는 성경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 또한 사순절은 죤 칼빈의 〈기독교강요〉에서나 개혁주의 장로교회 전통에서 제외되었던 절기이지만 최근 목회의 실용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총회에서는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절기들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발의 : 군경목선교위원회위원장 이광수 목사

제목 : ①군목 조기 안수자 및 군종요원 강도사 고시 면제

(제안 설명) 지난 66회 총회시 군목 후보생에 한해 신대원 1학년때 조기 안수하기로 의결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목사 고시를 1학년때 치고 강도사 고시는 3년이 지나 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의 특별한 요청에 의해 군종요원 과정을 통해 군목으로 가는 자는 강도사 고시와 목사고시를 한꺼번에 치루는 어려움과 역시 목사고시를 강도사 고시보다 먼저 치루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다 실제적으로 강도사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강도사 고시가 필요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상의 두 경우에 강도사 고시 면제가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위의 두 경우에 강도사 고시 면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발의 : 종교개혁500주년준비위원회위원장 박영호 목사

제목 : ① '개혁교회건설연구소' 설립 청원의 건

(제안 설명) 지난 2년 동안 총회의 허락 하에 고신레포Refo500주년 준비위원회가 '오직 말씀위에 교회를 세우자/새롭게하자/성장시키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신교회에 '성경', '교리', '역사' 를 손에 들려주어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500주년을 맞는 올 해를 기점으로 하여 고신교회의 교회들을 개혁주의원리로 세우는 원년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총회의 정신대로 고신레포Refo500주년 준비위원회는 그 소임을 다했기에 이번 총회에서 해산하고, 고신교회를 개혁주의원리로 세우는 일에 힘을 쏟을 '개혁교회건설연구소' 설립을 청원합니다. 이 연구소는 총회산하 기관이 아니라 총회가 인준하는 연구소로 총회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뜻있는 이들의 지원으로 운영되되, 총회의 철저한 지도를 받는 연구소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소를 통해 혼탁한 시대 속에서 교단 교회들이 개혁주의 원리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장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개혁교회건설연구소" 정관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개혁교회건설연구소" (Reformed Church Upbuilding

Institute)라 칭한다.

제2조(위상) 본 연구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인준하며 총회의 지도를 성실하게 받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고신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인 2017년을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개혁주의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역사적인 개혁신학의 원리와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할 뿐만 아니라, 개혁교회를 설립하고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역)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한다.

1. 다원화되는 현실 속에서 개혁교회건설의 원리와 실제를 연구하여 제시한다.
2. '개혁교회설립요건'을 교회를 개척하려는 이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며 개척 후에도 개혁교회건설을 위한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3. 미자립교회를 포함하여 기존교회도 개혁교회건설원리에 따라 세워가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돕는다.
4. 개혁교회건설원리를 존중하고 성장하는 모든 교회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건강한 교회성장원리를 제시하고 전파한다.

제5조(위치) 본 연구소는 고신교회(수도권과 지방을 나누어 각각 한 곳) 내에 둔다.

제6조(조직과 업무) 본 연구소의 조직과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소장 : 본 연구소를 대표한다.
2. 부소장 :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 시에 임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회 : 본 연구소의 운영과 활동을 기획하고 총괄하되, 위원장은 부소장을 겸한다.
4. 교육위원회 : 본 연구소의 고유 업무인 개혁교회 건설원리를 정리하고, 연구결과를 교회개척목회자와 개교회 직분자들에게 전달하고, 본 연구소의 활동을 홍보한다.
5. 본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기와 회계를 둔다.
6. 소장은 1인으로 하되 임기는 2년이며,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약간 명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7. 각 위원회는 장을 두며,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8. 소장을 포함하여 모든 위원들은 고신교회에 소속된 목회자로 구성한다.
9. 총회의 지도와 협력을 위해 국내전도위원장을 자문위원으로 둔다.

제7조(회의) 본 연구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체회의 : 본 연구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체위원들로 구성된다. 매년 11월에 정기회를 가지며, 소장이 필요시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전체회의에서 소장 및 위원을 선임한다.
2. 각위원회회의 :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에 모이며, 소장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각종 후원금과 기부금 및 세미나 수입과 출판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부칙)
1.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회의에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정관에 없거나 미비한 사항은 만국통상 규례를 따른다.

초안 재정일 : 2017. 7. 19.

6.발의 : 총회성경연구소소장 장희종 목사
제목 : ①성경연구소 정관 개정 청원
(제안 설명) 아래와 같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6조 3항의 '기획운영위원회' 를 '운영위원회' 로 변경하기로 하다.
2. 6조 5항의 '교육위원장은 편집장을 겸한다.' 를 삭제하기로 하다.
3. 6조 9항 신설 : '본 연구소의 저널 및 서적 발간을 위하여 편집장을 둔다.'
4. 6조 10항 신설 : '각 노회별로 자문위원 2명을 두기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발의 : 총회임원회 총회장 배굉호 목사
제목 : ④해외교류교단의 여성안수 결의에 따른 대책의 건
(제안 설명) 우리 총회와 교류하는 해외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결의하여 총회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총회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단대책위원회 배정안건 (4건)
1.발의 : 경남노회장 황규용 목사
제목 : ④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와 그의 부활복음(부활교) 사상 연구
(제안 설명) 김성로 목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실패했는데 부활 복음으로 승리했다고 주장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은 사람을 믿는 것과 같아 십자가는 실패라는 것 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승리한다는 주장 입니다. 십자가로 완전한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의를 이루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제사는 그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김성로 목사의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사상에 대하여 정확한 연구를 해주시기 청원하는 바입니다.

2.발의 : 서경노회장 김수구 목사

제목 : ①일명 부활교라 불리우는 김성로목사(춘천 한마음침례교회)의 신학 사상과 이단성 문제에 관한 총회 조사 요청의 건

(제안 설명) 최근 수년 동안 춘천 한마음침례교회 김성로목사의 사상과 주장에 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교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총회는 신학적 문제와 이단성과 관련하여 건전치 못한 문제들을 확실하게 규정해 주기를 청원하여 상정합니다.

3.발의 : 수도노회장 김홍석 목사

제목 : ②김성로 목사, 구요한 목사, 이인규 씨의 이단성 연구조사 청원의 건

(제안 설명)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 인터넷 신문 〈글로리아타임즈〉 운영자 구요한 목사, 이인규 씨에 대한 이단성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오니 총회에서 연구 조사하여 이단여부를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는 부활복음을 강조하는 목회를 통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고, '부활복음 목회자세미나' 를 초교파적으로 개최하여 참석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부활목회를 강조하고 있고, 이 세미나에는 고신총회에 속한 목회자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방송국들과 언론을 통하여 이 부활신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성로 목사가 강조하는 부활신앙이 이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단성을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로 묶지 않고 이원화시켜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가야한다고 하며,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필요 없는 가설을 통해 십자가보다 부활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십자가로는 완전하게 죄 사함과 구원이 주어지지 못했고, 대신에 부활로 인해 칭의, 속죄, 구속이 주어졌다고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기독교를 십자가를 폄하하며 부활 중심의 기독교로 변경시키려고 시도하는 등의 비성경적 이론을 전개하고, 심지어 완전한 구원을 주지 못하는 십자가 중심의 기독교는 비성경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준 계기가 된 부활 중심의 기독교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김성로 목사의 주장들은 위험한 내용들이 많은바 더 많은 악영향이 초래되기 전에 총회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사하여 이단성 여부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글로리아타임즈〉 운영자 구요한 목사**는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지금도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은 신사도 운동의 대표자 피터 와그너의 주장과 동일하고, 인간이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

낸다는 의미의 비성경적인 '성령사역' 을 지극히 강조하며, 신자들에게 '성령사역을 가르치는 집회' 를 자주 개최하고 있고, 예장합동 총회가 두 차례에 걸쳐서 비성경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금지한 중보기도 사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신사도 운동가들이 가르친 비성경적인 예언과 중보기도가 결합된 더욱 위험한 예언적 중보기도 등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중요한 부분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반박하는 표현을 거침없이 일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요한 목사의 주장들은 위험한 내용들이 많은바 더 많은 악영향이 초래되기 전에 총회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사하여 이단성 여부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이인규 씨**는 이단연구가로 활동하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의 부활복음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주장 **즉**, 부활에서 구속이 완성되었고, 십자가와 다른 '하늘성소' 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하늘성소' 에 올라갔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칭의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특별계시가 존재한다고 주장함으로 신사도운동가들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함하여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기독교계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에 이단 연구가들이 시정하도록 충고해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무지하여 지금도 특별계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인규 씨의 주장들은 위험한 내용들이 많은바 더 많은 악영향이 초래하기 전에 총회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사하여 이단성 여부를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발의 : 경남노회장 황규용 목사

제목 : ⑤인터넷 신문 '글로리아 타임즈' 운영자 구요한 목사의 사상과 활동에 대한 조사 연구

(제안 설명) 구요한 목사는 신사도운동의 사도직분, 선지자직분의 회복 이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파하는 위험한 가르침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요한 목사가 지금도 사도의 은사(사도적 은사), 선지자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약속이라도 한 듯 요즈음 여기저기서 신사도 운동이나 성령사역을 비판하는 글들이 인터넷 상에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필자도 개혁신학을 전공 했지만 기적중지론적 칼뱅주의와 개혁신학, 사적 계시(private revelation)를 부인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제1장 1절 마지막) 및 성경적 신비를 부인하는 이성주의 편향의 신학(?)은 진작 폐기처분 되어야 할 꼴통 신학이다." (구요한 목사, "꼴통 신학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 글로리아타임즈, 2015.7.9) "이제 기적중지론의 척결과 아울러 건전한 성령사역을 전파하여 침체와 답보상태에 빠진 한국 교계에 생기를 불어넣고 성장의 돌파를 제공하기 위해〈국제성령아카데미〉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성령사역자〉를

훈련시키고 기적중지론자들을 언론을 통해 척결할 〈성령특공대〉를 양성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기 시작했다.” (구요한 목사, “성령사역 컨퍼런스 개최” 글로리아타임즈,2016.4.8) 전 세계적으로 또한 한국교회적으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신사도운동을 주장하고 기존 개혁신앙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구요한 목사의 신학사상과 활동에 대해 연구해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 배정안건 (2건)

1.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⑯S.F.C. 평신도 간사들의 신학적 소양교육 청원 건

(제안 설명) 지난해에 S.F.C. 간사들의 신학적인 검증과 사회참여에 대한 문제가 총회에 제기되었습니다. S.F.C. 안에서 신입간사훈련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신에 속한 학원선교단체로서의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신대원에서 기본적인 신학교육을 S.F.C. 와 함께 연대하여서 교육을 시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교회건설이라는 아름다운 S.F.C. 강령을 실현해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F.C. 신입간사 훈련과 재교육을 실시하는 기간에 신대원 교수회와 협력하여서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고, 평신도 간사들에게 신학적 소양교육을 시켜 줄 것을 청원합니다.

2.발의 : S.F.C. 조사위원회위원장 김상석 목사

제목 : ①김성민 목사, 김두영 강도사 신학지도 청원

(제안 설명) 총회SFC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제65-1차 총회SFC지도위원회에서 사임 처리된 김성민 목사(동서울노회)와 총회산하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도 아름다운마을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두영 간사(경기노회, 강도사)에 대해 해 노회의 신학 지도가 필요합니다.

▌교육지도위원회 배정안건 (3건)

1.발의 : 마산노회장 강영구 목사

제목 : ①대학시험 주일시행 반대의 건

(제안 설명) 고신총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기 위하여 신사참배를 반대했으며 주일을 성수하며 거룩한 신앙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학들이 수시입학 면접시험을 공식적으로 주일에 시행함으로 제4계명을 지키려는 믿음의 학생들은 대학응시의 기회를 잃고 있으며, 응시한 학생들은 신앙양심에 심대한 갈등으로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고신 총회는

거룩한 신앙전통을 고수하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 대학시험 주일시행 반대를 결의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이 세운 이화여대는 대학교육협의회가 지정한 기간 중 주일에 수시입학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기독교대학으로서 거룩한 신앙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기에 이에 기독교대학협의회를 통해 이를 시정 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4가지를 요청합니다.

(1)학생들에게 주일에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도록
(2)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정 친화적 시간을 보장하도록
(3)기독교 주일성수에 따른 종교적인 신앙 활동 시간을 보장하도록
(4)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조성에 크게 기여하도록

2.발의 : 수도남노회장 문천회 목사

제목 : ①기독교학교(설립추진)위원회 설치 청원 건

(제안 설명)

1. 총회산하 특별위원회로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2. 한국 기독교 거대교단이라 할 통합과 합동교단은 이미 교단 산하에 관련 특별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기에 우리 고신총회에서도 마땅히 결단하고 시행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3. 이미 총회 산하 여러 지역에 기독교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으며 경험과 식견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므로 총회 산하 전노회 및 교회가 힘을 합쳐 연합사역을 이룰 좋은 기회로 사료됩니다.
4. 위원회 설치와 관련,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신총회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 청원서 ★

1. 제안 목적

본 고신총회 총회교육원에서는 2016년 6월 '총회교육대회' 를 통해 작금의 교회교육의 한계를 직시하여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이르렀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침 여기에 참석한 일동은 교회교육의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교회-학교-가정의 세 연결고리를 든든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교육현장에만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지 말고 교회가 직접 나서서 기독교학교를 세우는 일에 적극 지원하고 기도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교육대회 행사 후 총회 산하 교회 중 기독교학교 설립에 뜻을 두고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노회에서도 노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협의하던 차,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기독교학교의 설립’ 이야말로 분명한 바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기독교학교 설립을 위한 연구위원회’ 를 설치하여 연구세미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신총회가 직접 이 사역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각 노회가 이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동기 부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신 신앙의 순결성과 정통성을 지키고 다음세대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총회가 갖고 있는 역량을 풀가동,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총회 산하에 관련 특별위원회 설치를 청원함.

2. 청원 내용

1) 총회 신학교육부 또는 전도선교부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신규로 설치.
2) 특별위원회 명칭은 ‘기독교학교(설립추진)위원회’ 로 제안함.
3) 위원회의 기본 조직과 운영은 기존의 특별위원회에 준함.
4) 단, 위원회 사역의 특성상 위원의 임면과 예산 등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마련, 총회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시행.
5) 기독교학교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하도록 전 노회의 동참을 기대하며 전국 각 노회마다 노회 산하 특별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적극 권장.

3. 특별위원회의 사역 방향

1) 총회 신학교육부 및 총회교육원을 중심으로 기존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와의 커리큘럼 개발 및 공유, 교사교류 등 협력을 증진.
2) 본 총회에 산재한 기독교교육 관련 인재를 발굴, 또는 양성.
3) 향후 고신대학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되 ‘기독사범대학’ 또는 ‘기독교육 전문대학원’ 을 지향하도록 협력.
4) 본 총회 산하 모든 노회 관할지역을 중심으로 수년 내에 1노회 1기독교학교를 기준, 시범적으로 설립, 운영하도록 권장.
5) 시범학교 설립 후 계속 기독교학교 설립을 독려, 기독교교육운동을 확산.
6) 전국 노회를 대상으로 기독교교육의 필요성과 기독교학교설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권역별로 시행.
7) 현재 총회 산하 교회 중 기독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 및 학교의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설립지원 및 연구지원 네트워크를 구성, 활동하도록 도움.

4. 관계 및 역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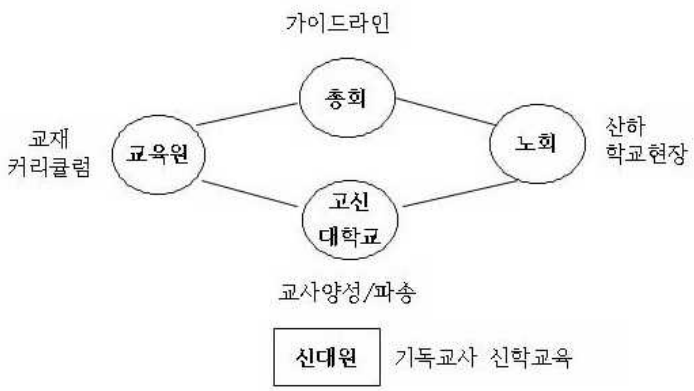

5. 총회산하 각 교회가 운영 중인 기독교학교 사례

1) 수도남노회 : 샘물교회(담임목사 최문식)-샘물기독유아학교/초등학교,
은혜샘물교회(담임목사 박은조)-은혜샘물유치원/초등학교/샘물중고등학교,
열방교회(담임목사 안병만)-열방키즈/쉐마초등학교

2) 동대구노회 : 동일교회(담임목사 오현기)-동일프로이데아카데미(초중고)

3) 충청노회 : 당진동일교회(담임목사 이수훈)-시내산기독학교(중고)

4) 전라노회 : 광주은광교회(담임목사 전원호)-세품국제크리스천스쿨(초등)

5) 남부산노회 : 말씀교회(담임목사 김두식)-부산로고스국제크리스천스쿨(초중등)

6. 참고 사항(각 교단의 특별기구 명칭)

1) 통합교단 : 기독교학원위원회

2) 합동교단 : 학원선교위원회

3.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⑬교회 직원에 대한 재교육 실시 청원 건

(제안 설명) 교회정치 제68조 1항, 제79조, 제88조 1항에 교회는 교회 직원(장로, 집사, 권사)으로 선택되고 난 다음에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임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미 임직을 받아 섬기고 있는 교회의 직원들의 재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목사는 신학교 졸업 10년차를 대상으로 이미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교회의 직원으로 선택이 되었을 때 노회 차원이나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과 이미 교회 직원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은 7년차마다 노회차원이나 권역별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국내전도위원회 배정안건 (1건)

1.발의 : 충청노회장 곽창대 목사

제목 : ②국내전도위원회의 교회개척훈련원 대상 규정 시행에 대한 유예 건의 건

(제안 설명) 기독교보 광고에 따르면 총회 국내전도위원회는 제11회 교회개척훈련원(2017.2.13.~2.15)부터 훈련원 참가 대상을 만 65세 이하, 교회개척을 시작한지 1년이 되지 않은 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의 공포와 시행에 있어서 유예기간도 없이 시행되면서 이를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와 이를 지도, 관리하는 각 노회와 교회들에 있어서 많이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오늘날같이 교회개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와 교회는 크게 상심하고 힘을 잃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국내전도위원회는 이러한 교회개척의 힘든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교회개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개척훈련원 대상 제한 규정에 대한 시행을 1년 유예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재정복지부 배정안건 (1건)

1.발의 : 예결산위원회위원장 우신권 장로

제목 : ①총회예산 배정을 위한 절차 및 예산배정 기한 청원

(제안 설명) 총회예결산위원회는 총회예산배정을 위해 총회 개최 2개월 전부터 준비합니다. 총회 산하 각 교회의 헌금을 산출하고 재정상황을 고려해 다음회기 예산배정의 많은 부분을 완성한 후 총회기간동안 예산배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작업과 무관하게 총회 본회에서 각 기관 및 위원회의 예산청원을 승인하게 될 경우 예산배정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부득이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게 될 경우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총회규칙 제13조 4항 1)에 의하면 “예결산위원회는 재정정책을 수립하되 예산을 편성 및 결산을 보고한다.” 라고 예결산위원회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결산위원회가 임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위한 청원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예결산위원회의 결의를 거칠 수 있도록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청원 결의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청원 기관 및 위원회의 상황을 살펴보고 예산편성을 하여 교회 헌금으로 편성된 예산 편성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예결산위원회 배정안건 (8건)

1.발의 : 진주노회장 송신영 목사

제목 : ①순교자기념관 건립을 위한 한 주일 헌금 청원의 총회 결정 시행에 대한 재확

인 청원

(제안 설명) 본 총회 제 58회 총회에서 마산 노회장 황삼수 목사가 청원한 순교자기념관 건립을 위한 전국 교회 한 주일 헌금 청원의 건을 허락 가결하였습니다. (58회 총회 회록 P.1082 의 7번) 순교자기념관 건립의 한 주일 헌금을 하기로 결정만 하고 그 후 이 일을 맡아 시행할 기구나, 조직이 없으므로 그 결정이 유야무야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도 조직도 없었으나 순교자기념관 건립을 위한 한 주일 헌금을 한 교회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고(제58회 총회 년도 회계장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임) 만약 있었다면 그 헌금이 어디 사용되었는지, 없다면 이미 총회가 결정한 순교자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재확인 결정해 주기를 청원함과 동시 기구를 조직하여 이 결정이 또 다시 허위 결정이 되지 않도록 하여 순교적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총회의 역사를 분명하게 남기는 계기가 되기를 청원합니다.

2.발의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박래영 목사

제목 : ③제10회총회가 매년 6월 순교자기념주일을 지키기로 한 결의를 확인하여 전국교회가 실시하도록 청원의 건

(제안 설명) 제10회 총회에서 '매년 6월 순교자 기념 주일을 지키기로 한 결의' 를 확인하여,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셨던 순교자들을 추모하며 유가족들을 돌보고, 순교신앙을 계승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순교자기념주일을 전국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함.

3.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⑥총회 발전을 위한 공청회(연2회) 정례화 청원 건

(제안 설명) 현재 총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외부의 언론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총회 발전을 위한 많은 제안들이 아무런 토론의 과정 없이 총회에 상정되는 일로 인하여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내외부에서 거론되는 총회의 문제들을 일부 인사들만 토론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으며, 총회의 일에 무관심한 교회들로 하여금 총회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게 하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연 2회의 공청회를 정례화하여 개최하는 일입니다.(2월말, 8월말) 총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게 하여 총회의 문제들을 다양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적이고 외부적인 논의가 아니라 공적인 총회 기구의 주관아래서 논의가 바람직합니다. 연 2회 총회의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 열 수 있도록 허락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공청회 일정을 공지하고 다양한 안건들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서 공청회를 가지는 방법입니다. 일체의 경비는 본인부담으로 하여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한다면 총회의 비용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4.발의 :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위원장 강만구 목사

제목 : ②S.F.C. 주일(10.29) 한 주간 특별헌금 요청 건

(제안 설명) 고신총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SFC 주일로 지정하여 왔습니다. 또한 SFC주일(올해 10.29)에 SFC 사역을 위한 특별헌금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한 주일 특별헌금을 청원하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5.발의 : 국내전도위원회위원장 신상현 목사

제목 : ①총회 3,000교회 100만성도 운동을 위하여 세례교인 1명단 2,500원을 총회 상회비와 함께 매년 배정허락 청원건

(제안 설명) 국내전도위원회는 총회세계선교회와 더불어 양 날개를 이루어 교단의 부흥 성장을 주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전도위원회는 지금보다 더 위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국내전도위원회 임원회와 총회에 상정 안건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전도위원회는 제67회기에도 아래와 같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⑴ 교회개척훈련 (2박3일, 년4회)
⑵ 개척교회 총회 지원금 (40교회 × 1500만원)
⑶ 개척보고대회
⑷ 미자립목사부부초청 세미나 (년1회)
⑸ 권역별 평신도 전도훈련(5회/ 서울권, 수도권, 전라권, 부산권, 울산권)
⑹ 전도활성화와 교회개척운동을 위한 목회자부부초청세미나(년1회)
⑺ 국내개척교회 설립을 위한 후원교회협의회 구성(지역별 설명회 및 조직)
⑻ 국내전도정책연구를 위한 상임위원 · 전문위원 워크샵(년2회)
⑼ 국내전도 활성화 및 문제해결 위한 목회자 전도 포럼 개최(년1회)
⑽ 기타

이와 같이 국내전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총회 상회비를 현 세례교인 1인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증액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6.발의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박래영 목사

제목 : ①성탄절헌금 1/10 모금 청원의 건

(제안 설명) 매년 본 위원회의 특별구호사업의 일환으로 개체교회의 성탄절헌금 중 1/10을 모금하여 빈곤한 은퇴교역자, 은퇴 여 전도사, 홀사모, 및 생계곤란 목회자들을 돕고 있음. 제67회기총회도 성탄절헌금 1/10 모금 청원 안건을 허락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전국교회는 봉헌된 성탄절헌금 중 1/10을 소속노회를 경유하지 않고 본 위원회로 직접 보내 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함.

7.발의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박래영 목사

제목 : ②사회복지세미나 참가자 등록비(5인 이상 참가) 지원의 건

(제안 설명) 본 위원회는 사회복지관련 사업의 하나로 교회의 사회선교에 대한 목회적, 복지적 대안을 주제로 한 사회복지세미나를 개최하여 전국교회를 섬기고 있음. 2014년 4월부터 올 해 까지 4회째 사회복지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는바, 전국교회에 대한 사회복지목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각 개체노회로 하여금 5인 이상의 참가와 참가자의 등록비 지원 협조를 요청함.

8.발의 : 총회교육원이사장 이영한 목사

제목 : ①디아스포라 교회 교육 협력 사역을 위한 청원의 건

(제안 설명) 총회교육원은 지난 2005년부터 해외총회의 교회들과 교육협력을 위하여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 정책협의회' 를 국내외에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근년에는 대양주 총회와 재미 총회 및 중국의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협력하여 총회교육원의 바이블 키 성경대학 프로그램, 묵상집 〈복있는 사람〉을 비롯한 정기간행물을 보급하고, 각종 세미나와 여름성경학교 세미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선교사들과 어린이 교재 번역 작업 등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총회와 선교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총회교육원의 교육 세미나 사역의 협력 뿐 아니라, 총회교육원이 출간한 다양한 교재들의 현지어 번역과 그에 따른 교사 교육 사역까지 확장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총회교육원의 사역이 국내를 넘어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과와 전 세대를 위한 큐티 교재의 현지어 출간 등으로 사역을 확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총회적으로 디아스포라 교회 교육 협력을 위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사역을 위한 전문 인력 1인의 충원 및 영어로 된 영역 교재 출간과 보급, 교육 협력을 위한 재정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총회교육원은 지난 몇 년간 고신총회세계위원회와 중국 선교를 위한 '바이블 키 차이나 프로젝트(바이블 키 성경대학 교재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사업)' 와 바이블 키 지도

자 세미나 사역 협력(2017년 6월), 선교부 소속 선교사들과의 현지어로 어린이 교재 번역 협력(캄보디아 및 베트남)등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주 총회와 대양주 총회로부터도 이와 유사한 사역 협조 및 영역(영어 번역) 공과 교재 및 묵상집 발간을 지속적으로 요청받고 있습니다. 금번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정책 협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해 강력히 요청받은 바, 총회교육원이 발간한 어린이 공과교재의 현지어 번역, 바이블 키 성경대학 교재 번역, 복있는 사람과 어린이 복있는 사람(큐티 교재)의 현지어 출간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최소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과 이에 따른 출판을 위한 소요 및 해외 교회로 발송하는 것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당장 모두 구현할 수는 없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최소 3-4년 후에는 안정적으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교회에서도 총회교육원이 출간한 자료들을 받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소 1인의 전문 연구원을 충원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아울러 해외 1-2개 교회와 영역(영어 번역) 교재 편찬 작업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소한의 어린이 교재 유아, 유치부의 영역 교재 출간 및 보급 비용(2천만 원)을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 배정안건 (5건)

1.발의 : 김해노회장 박현근 목사

제목 : ②인터콥 관련자 총회 임원후보가 될 수 있는가?

(제안 설명) 총회는 인터콥과 관련하여 고신총회 산하 교회는 인터콥과 일체의 교류를 금하기로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여전히 인터콥과 교류 중인 목사나 장로가 총회 임원후보가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발의 : 동부산노회장 김윤근 목사

제목 : ①총회 임원 입후보자의 공적 홍보기회 확대를 위한 총회선거조례와 선거조례 시행세칙 개정 청원

(제안 설명) 음성적인 선거운동을 막고, 선거기간과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입후보자가 공적으로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허용하자는 것으로 **총회 선거조례 제6조, 제9조, 제15조, 선거조례시행세칙 제8조 2항 6항, 제8조 9항 1) 2), 제9조, 제12조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작년 제66회 총회에서 선거기간을 축소하는 쪽으로 총회 선거조례와 선거조례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회 임원 입후보자들은 8월 첫 번째 주일 지난 화요일에 임시노회(또는 임원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지면서 입후보자들이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었고, 이는 소위 계파나 다른 조직의 지원을 받는 입후보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거기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7년 5월 29일, “총회 선거조례 제15조(선거운동 규제)와 선거조례시행세칙 제8조(선거운동 규제보완)를 선거운동 기간(후보의 노회 추천일로부터 총회 선거완료 시까지) 전에도 준수하도록” 결의하여 통보 및 총회 기관지에 공고하였습니다. 또 “선거운동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하여 현행 선거조례 제15조 1항의 선거운동 기간(후보의 노회 추천일로부터 총회 선거완료 시까지)을 봄 정기노회가 끝나는 날부터 총회 선거완료 시까지로 변경하는 선거조례 개정안을 금번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고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이같은 결의와 공고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 총회에서 결의하여 정한 선거조례와 선거조례시행세칙에 명시된 선거운동 기간을 총회선관위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총회선관위는 정해진 선거조례와 선거조례시행세칙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을 봄 정기노회가 끝나는 날부터로 확대함은 입후보자가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없애는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소위 계파나 다른 조직의 지원을 받는 입후보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3) 선거운동 기간과 규제가 확대되면 오히려 봄 정기노회 이전으로까지 음성적인 선거운동이 더 앞당겨지고, 총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음성적인 선거운동의 폭도 더 넓어지는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선거관리의 기본 원칙은 누구나 자유로이 입후보하게 하여 좋은 일꾼을 찾는 것과 공정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총회선관위의 결의와 수정안 상정(2017년 5월 29일 결의)은 선거관리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자유로운 입후보와 좋은 일꾼을 찾는 것은 오히려 제약할 수 있습니다. 또 청산되어야 할 소위 계파나 조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감히 입후보할 생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계파나 조직의 존재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총회 선관위가 결의하고 공고한(2017년 5월 29일) 대로 “선거운동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하여 현행 선거조례 15조 1항의 선거운동 기간(후보의 노회 추천일로부터 총회 선거완료 시까지)을 봄 정기노회가 끝나는 날로부터 총회 선거완료 시까지로 변경” 한다면, 그와 함께 입후보자가 공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와 장(場)도 더 많이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1) 총회 기관지에 홍보 공고를 2회 이상 하고 (현행 1회 이상), (2) 입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소견발표회를 권역별로 실시하여 입후보자가 총대들을 공적으로 만나고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총대들에게 소정의 여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은 입후보자들이 분담합니다. 총대들의 여비는 총회 선관위와 후보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권역은 지난 1월 노회명칭 및 구역조정 지역별 설명회와 같이 (1) 부산, 울산, 제주권 (2) 경북, 대구권 (3) 서울, 경기, 충청, 강원

권 (4) 전라권 (5) 경남권으로 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보자들이 공적으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작년 제66회 총회에서 경남노회장 이인덕 목사가 청원한 “총회장, 부총회장의 입후보 소견(정견) 발표회 폐지 청원 건” 은 받기로 가결하였으나, 현재 총회 선거조례와 선거조례시행세칙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 제안 설명대로 “입후보자의 자기 홍보 기회의 부여” 를 위해 소견발표회를 권역별로 실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음성적인 선거운동도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개정해야 할 선거조례와 선거조례시행세칙)

노회 추천일로부터 총회 개회 시까지의 일정을 조정하여 권역별 소견발표회(5회)를 가지고, 총회 기관지 홍보(2회)를 하도록 조정

	현행	개정안	비고
선거조례 제6조 (자격)	2. 선거관리위원이 입후보를 원할 시는 6월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입후보를 원할 시는 3월 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선거운동 규제 기간이 봄 정기노회 끝나는 날부터로 확대되므로
선거조례 제9조 (추천,등록 및 심의)	모든 입후보 희망자는 제7조의 등록서류를 매년 7월 마지막 주일 지난 화요일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회는 매년 8월 첫번째 주일 지난 화요일 오후 2시에 임시노회(또는임원회)에서 추천을 완료하여야 하며 추천방식은 노회가 자율로 정한다. 노회 서기는 노회 추천 후 8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보내어 등록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필한 후보자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모든 입후보 희망자는 제7조의 등록서류를 매년 7월 마지막 주일 지난 화요일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회는 매년 8월 첫번째 주일 지난 화요일 오후 2시에 임시노회(또는임원회)에서 추천을 완료하여야 하며 추천방식은 노회가 자율로 정한다. 노회 서기는 노회 추천 후 8월 첫째 주일 지난 금요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보내어 등록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필한 후보자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노회 서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는 시한을 8월 첫째 주일 지난 금요일로 앞당김
선거조례	선거전에 회장단은 3분 이내	1. 회장단 입후보자가 다수인	회장단 입후보

제13조 (소견발표 및 인사)	의 소견발표를 기타 임원 각 법인이사 감사후보는 인사만 한다.	경우 권역별 소견발표회를 가진다. (권역, 일정, 총대 여비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입후보자가 협의 결정한다.) 2. 선거전에 회장단은 3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기타 임원 각 법인이사 감사후보는 인사만 한다.	자가 다수인 경우 권역별 소견발표회를 가짐
선거조례 제15조 (규제)	1.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노회 추천일로 부터 총회선거 완료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다. 1) 접대, 기부행위,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방문, 인터넷 언론사 광고, 집단 결의	1.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봄 정기노회가 끝나는 날부터 총회선거 완료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다. 1) 접대, 기부행위,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방문, 인터넷 언론사 광고, 집단 결의 (단, 기부행위, 각종방문은 노회 추천일부터 총회선거 완료시까지 적용한다.)	1. 선거운동 규제기간을 봄 정기노회가 끝나는 날부터로 확대 1) 기부행위, 각종방문은 선한 기부와 교단의 각종 모임들을 장기간 위축시킬 수 있어서 노회 추천일부터 적용토록 함
선거조례시행세칙제8조 2항	당 해 연도에 선거당사자나 각종 기관이나 단체 등의 기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선거당사자나 각종 기관이나 단체 등의 기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선한 기부를 장기간 제약하지 않도록 노회 추천일부터 총회선거 완료시까지로 적용
선거조례시행세칙제8조 6항	각종방문 :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자나 지지자들의 지역방문(지역별 체육대회, 전국장로회수련회, 총동창회, 각종 세미나 등)을 금하며, 각종 모임에 화환이나 선물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인터넷 영	그대로 (단, 적용은 노회 추천일부터 총회선거 완료시까지로 한다.)	각종방문의 제한이 교단의 각종 모임들을 장기간 위축시킬 수 있어서 노회 추천일부터 적용

	상물의 이용을 금한다. 단, 꼭 필요한 경우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신청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고소·고발소위원회의 서면 답변을 얻어야 한다.		
선거조례시행세칙 제8조 9항 1)2)	9.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부총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기간 동안 통상 예배(교회가 주간에 정기적으로 행하는 예배)에 교단 소속 목사나 장로를 시무 교회의 강사로 초빙할 수 없다. 단 특별 행사나 연중행사에 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부총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기간 동안 시무 교회를 제외한 교단 소속 교회와 노회, 총회 및 교단 소속 기관의 예배와 행사에 강사로 초빙될 수 없고 순서를 담당할 수 없다.	9. 입후보자는 노회 추천일부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부총회장 입후보자는 통상 예배(교회가 주간에 정기적으로 행하는 예배)에 교단 소속 목사나 장로를 시무 교회의 강사로 초빙할 수 없다. 단 특별 행사나 연중행사에 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부총회장 입후보자는 시무 교회를 제외한 교단 소속 교회와 노회, 총회 및 교단 소속 기관의 예배와 행사에 강사로 초빙될 수 없고 순서를 담당할 수 없다.	부총회장과 사무총장 입후보자의 강단사역과 활동을 장기간 제한하지 않도록
선거조례시행세칙제9조 (공고)	총회기관지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총회기관지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입후보자의 홍보 기회를 확대

(선거조례시행세칙 제12조(선거일정) 개정)

현행

일정	내용
앞부분 그대로	
8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까지	노회 서기가 선거관리위원회 서기에게 서류 등록
8월 둘째 주일 지난 금요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완료
8월 세째 주일 지난 화요일	총회 기관지에 입후보자들에게 심사 결과 및

	소견발표회, 기호추첨일 공명선거서약식 날짜 공고. 입후보자들에게 개별 통지
9월 첫째 주일 지난 화요일	총회 기관지에 홍보 공고, 총회 기관지를 총대들에게 발송
9월 첫째 주일 지난 목요일	소견발표회, 기호추첨, 공명선거 서약식
9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	총회 기관지에 기호 추첨 결과 공고
9월 세째 주일 지난 화요일	총회 개회

개정

일정	내용
앞부분 그대로	
8월 첫째 주일 지난 금요일까지	노회 서기가 선거관리위원회 서기에게 서류 등록
8월 둘째 주일 지난 수요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완료
8월 둘째 주일 지난 금요일	입후보자들에게 심사 결과 및 소견발표회, 기호추첨일, 공명선거서약식 날짜를 입후보자들에게 개별 통지
8월 셋째 주일 지난 화요일	총회 기관지에 홍보 공고, 총회 기관지를 총대들에게 발송
8월 셋째 주일 지난 목요일	기호추첨, 공명선거 서약식, 권역별 소견발표회 시작
8월 넷째 주일 지난 화요일, 목요일	권역별 소견발표회
9월 첫째 주일 지난 화요일, 목요일	권역별 소견발표회
9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	총회 기관지에 홍보 공고, 기호 추첨 결과 공고
9월 셋째 주일 지난 화요일	총회 개회

3.발의 : 수도남노회장 문천회 목사

제목 : ④선거조례 제3장 제6조 개정(장로부총회장 임직 10년 이상, 이사 감사 장로 5년) 건

(제안 설명) 현 총회 규칙 제3장 제6조 중 장로부총회장은 임직 15년 이상 된 자, 각 법인 이사 감사는 임직 10년 이상 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규모가 있는 교회의 경우 50대 중반이 돼서야 피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 규정을 따를 경우 입후보자를 낼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사항이 있어 입후보자 자격 기준을 '장로부총회장은 10년 이상 된 자' 로, 이사 감사 입후보자 중 '장로는 임직 5년 이상 된 자' 로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청원하는 사유는 지난해 학교법인이사 중 장로 입후보자의 경우 기존의 임직 10년으로 제한하다보니 해당자를 추천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 임직 5년 이상으로 하향조정한 선례와 같습니다.

1) 장로피택 해당연령 경우 헌법개정 역사를 보면 35세 이상(2002년)에서 40세 이상(2011년)으로 5년 상향 조정(헌법 교회정치 제65조 '장로의 자격') 되었기에 총회 선거조례도 이에 걸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2)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5백 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의 경우 실제적으로 장로피택 연령이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에 이르고 있어, 총회를 섬기고자 하는 분들이 있고 주변에서 권유하여 봉사하고자 해도 현재의 임직 10년에서 15년을 고수할 경우 자격조차 갖추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3) 노회의 추천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 규정대로라면 임직연수를 하향조정한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제안으로 판단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3장 입후보자의 자격 제6조(자격) 1.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2) 장로 부총회장은 15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2) 이사, 감사 (1)목사, 장로 임직은 10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단, 학교법인 장로 임직 5년 이상 된 자)	제3장 입후보자의 자격 제6조(자격) 1.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2) 장로 부총회장은 10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2) 이사, 감사 (1)목사 임직은 10년 이상, 장로는 임직 5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장로 부총회장은 10년이상으로 하향 조정 이사 감사 장로는 5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

4.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④공천위원회의 특별 위원 공천에 관한 방법 개선 청원 건

(제안 설명) 현재 총회의 감사국원, 재판국원, 정기위원, 총회은급재단 이사 및 감사 후보,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공천부가 모일 때는, 이미 총회 임원회(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에서 어느 정도 후보들이 결정된 후에, 노회장단이 참가하는 공천위원회가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도 어떤 국원이나 이사후보에 추천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한 소속노회장도 소속 노회의 어떤 인사가 후보로 추천되었는지 모른 상태에서 공천위원회에 참석을 함으로, 공천위원회 모임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어떤 인사들은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공천되기도 합니다.

총회의 감사국원, 재판국원, 정기위원, 총회은급재단 이사 및 감사 후보,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4월 노회 이전에 기독교보를 통하여 각 국원과 이사후보의 필요 인원에 대한 공고를 한 후, 소속노회의 추천을 받고, 총회 임원회(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의 협의를 거쳐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도록 한다.' 로 수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5.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⑤고려학원 이사, 감사 추천방식 투명화를 위한 청원 건

(제안 설명) 현재 총회가 총회 안에 있는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한 인재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으나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고려학원 이사, 감사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추천함으로서, 많은 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물난에 허덕이는 상황입니다.

※ 4월 노회 이전에 필요한 인재에 대한 공고를 하고 해당 교회와 노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다면 많은 숨은 인재들을 등용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현행 '이사 감사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을 받아' 라는 부분을 '4월 노회 이전에 기독교보에 2차례 이상 공고를 하고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들 중에서 이사 감사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공천을 받아' 로 수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이사회 배정안건 (1건)

1.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⑦총회 파송 선교사들의 해외 재산 파악 청원

(제안 설명) 현재 고신총회세계선교회가 건강하게 운영되고 고신총회에서 파송 받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교사들의 모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지 법인들의 재산에 관한 소유권문제가 여러 교단에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헌금은 했지만 관리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차제에 고신총회 파송 선교사들이 교회의 헌금과 후원을 받아 만들어진 현지의 많은 부동산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보고가 필요합니다.

고신총회세계선교회는 피송된 선교사들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재산의 형성과정에 관한 내용과 부동산의 관리방법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음 총회 때까지 보고하도록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교육원이사회 배정안건 (1건)

1.발의 :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윤대식 목사

제목 : ①해외총회 산하교회 교재번역을 위한 협력 청원

(제안 설명) 재미총회와 대양주 총회등 해외자매교회의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재 번역 사업을 요청하오니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미총회는 개혁 신학에 입각한 교회교육을 위하여 한국총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2011년 10월 제28회 재미총회에서는 양총회가 '교육과 목회에 관한 미래 협약' 도 체결하였습니다. 양 총회는 건실한 기독교 교육을 위해 함께 고백하는 교리 표준에 기초하여 교재를 개발하고, 양 총회에서 개발된 교재는 상호 동일하게 공식적인 교재로 인정하여 구별 없이 사용하기로 하였고, 양 총회가 더욱 수준 높은 교재개발과 국제적인 공급에 협력하고, 교재의 세계화와 교재 공급의 확대에 최선을 다하기로 협약한 바 있습니다.
2. 재미총회가 설립되고 32회기를 보내고 있는 즈음에 이제는 우리의 신학과 신앙을 따라 자녀 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교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미총회가 단독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인적, 물적 자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한국총회 교육원이 펴낸 교회학교 교재와 평신도 신앙교육 교재를 영어로 번역하거나, 한영 대조 교재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3. 이러한 사업은 지난 수년 동안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재미총회와 한국총회, 또한 해외총회가 협력하여 추진 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번역이 이루어지면 영어권인 미국과 대양주, 유럽 일부에서 교회 교육에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교재들은 해외 자매교단뿐 아니라 타 교단에서도 널리 사용할 수가 있어 사업성이 충분하며, 교단적인 이미지와 교회 교육의 폭넓은 역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에 이 사업을 고신총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여 주시되, 구체적인 실행은 재미총회와 해외총회들과 함께 논의하고 진행하도록 협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재단이사회 배정안건 (2건)

1.발의 : 부산노회장 박삼우 목사

제목 : ①헌법 제170조 1항(기본재산의 처분) 개정 청원

(제안 설명) 현행 헌법에서 기본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결의는 개체교회의 경우 당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의 3분의 2이상의결의에 의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정치 제 170조 1항) 현실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를 다 거친 후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 교환하는 것이 때로는 불가능 할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법을 어기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 노회는 헌법 제170조 1항에 아래와 같은 단서를 첨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단” 긴급할 시 당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처리하고 사후 공동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⑨삼천교회 운동으로 인한 개척교회의 재산관리 청원 건

(제안 설명) 삼천교회운동을 통하여 많은 개척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개척교회 양산이 이대로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척 후 교회들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세례교인 헌금을 내는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개척교회는 재정적인 지원이 넉넉한 반면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또 교회의 재산권 문제가 불분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중에 교회의 재산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개척하는 목사의 재산과 지원받은 재산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차용인지 지원인지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전도위원회에서 매년 1) 삼천교회운동의 지원을 받은 교회들의 현 상황을 보고해 주실 것과 2) 유지재단에 가입되지 않은 교회는 개척교회 지원금 지원을 중지할 것과 3) 각 노회는 교회재산의 근거의 명확한 자료(소유권 문제 및 지분 문제)를 만들어 총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이사회 배정안건 (3건)

1.발의 : 신학위원회위원장 전원호 목사

제목 : ①고신신대원의 입학생 정원 현실화 및 조정 청원의 건

(제안 설명) 절대적인 대학교 신입생 수의 감소와 국내의 신학대학원 지원자 수 감소 현상에 대비하고, 교단 교역자 수급을 감안하여 현재 정원 120명에서 향후 5년 동안 입학 정원을 4%(약 5명)씩 감축하는 것을 허락해주시길 청원합니다.

2.발의 :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위원장 강만구 목사

제목 : ③신대원에 S.F.C. 강좌 개설 요청 건

(제안 설명) 신대원에 S.F.C. 강좌 개설을 요청 드립니다. S.F.C. 정신은 곧 교단정신

입니다. 현재 신학을 마치고 간사로 지원하는 지원자들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교단과 S.F.C. 를 알지못하는 목사후보생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갈수록 희미해져가는 고신정신과 다음세대를 잘 세울 수 있는 S.F.C. 운동과 정신을 총회와 교회를 섬기게 될 목사후보생들에게 잘 심어주는 것은 곧 교단정신과 우리 교단의 자랑인 S.F.C.의 가치를 이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S.F.C. 강좌를 정규 과목으로 개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3.발의 :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위원장 강만구 목사

제목 : ④S.F.C. 간사들의 고신의료원 진료비 할인 건

(제안 설명) 현재 S.F.C. 해외지부 간사들은 진료비 50%를 이전 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국내에서 사역하는 간사들 또한 고신의료원 진료시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안고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간사들도 교단선교사들과 동일하게 학원선교사로서 간주하여 진료비 50%할인을 요청 드립니다.

▌본회 배정안건 (16건)

1.발의 : 경남노회장 황규용 목사

제목 : ①총회출판국 발전을 위한 방안 강구

(제안 설명) 현재 총회 출판국은 7인으로 구성된 출판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사무총장이 위원장이고 출판실장 1인, 교육원에서 파송한 3인(이사장, 서기, 교육원장), 회계, 재무실장이 참여한다. 현재 출판국은 총회교육위원회에서 의뢰하는 교육용 교재와 언론사의 큐티 묵상지 “복 있는 사람” , 그리고 헌법책 등 아주 제한된 범위의 책만을 출간하고 있다. 그리고 총회 산하에 기관인 S.F.C.(학생신앙운동)에서도 독자적으로 책을 출간하지만 책의 종류를 보면 학생신앙운동에 꼭 필요한 책을 출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고신교회가 책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앙의 확립을 대내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책을 기획하고, 출판하고, 영업과 홍보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출판국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올바른 신학을 가진 고신총회가 이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출판국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독립 채산제 방식의 출판국 설립을 제안한다.

2.발의 : 남부산노회장 권종오 목사

제목 : ①총회교육원과 총회출판국의 합병 청원

(제안 설명) 제28회 총회(1978년 9월)에서는 “교육국을 신설하고 그 업무는 교단공과, 교단 기관지(개혁신앙), 각 출판물을 일원화 하도록” 결의하여 총회교육국에서 출판 업

무까지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총회에서는 겸임으로 하던 총회총무(현, 사무총장)를 전담으로 세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총회교육국(현, 총회교육원)에서 하던 출판 업무를 총회 사무총장 하의 직무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황을 보면, 총회교육원과 출판국의 실무책임자에 따라 총회교육의 발전과 재정의 수익이 증대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같은 업무를 개발부서와 사업부서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음으로써 각 부서의 입장에 따라 발전하기도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점차 어려워지는 교육과 출판 상황을 고려할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총회교육원은 천안에, 총회출판국은 서울에 있음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현재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총회교육원과 총회출판국 두 기관을 교육과정 개발부서 중심으로 합병할 것을 청원합니다. 우리 고신총회는 총회 태동부터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이는 고신총회의 큰 장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고신총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총회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제안합니다.

3.발의 : 서울노회장 손덕현 목사

제목 : ②총회부서(총회교육원과 총회출판국)의 합병 청원 및 총회교육원 규칙(정관) 개정 승인 청원

(제안 설명) 총회교육원은 총회가 위임한 교육에 관련한 제반 업무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보다 질 좋은 교재를 개발하고, 출판국은 총회교육원에서 개발한 각종 교재와 출판물 등의 출판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일정 부분 총회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서는 제60회 총회회관 구조조정에 따른 총회 교육원 출판권 이관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부서 간 협의와 협력 관계가 잘 유지되지 않고 오히려 부서 상호간 불화함으로써 우수한 교재의 개발과 출판 수입 창출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에는 총회교육원이 천안 신대원 건물 내 공간을 확보하여 이전하게 되어 중복되는 부분의 경비의 이중 지출 문제와 원격지 근무에 따른 신속한 업무 협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교육원과 출판국의 합병을 위하여 총회임원회에서 부서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5명 내외)하고 부서 조직의 합병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아 시행이 되도록 총회교육원과 출판국의 합병을 청원합니다.

〈필요조치사항〉 총회교육원 규칙 개정 및 출판위원회 규정 정비

총회교육원과 총회출판국의 합병에 따른 현행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원 규칙(정관)” 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합병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

칙개정(안)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현행	개정 안	비고
제2조(목적) 교육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육이념과 목적을 따라 교육정보 수집, 교육정책 입안, 교재편찬 및 교육훈련을 담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교육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교재편찬 2.총회교사대학 운영 3. 총회성경대학 운영 4. 기타 교육정책에 관한 제반연구와 추진 (신설)	제2조(목적)교육원은----------교재편찬과 교육훈련, 출판물 간행 및 보급에 따르는 문서 선교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 업) 교 육 원 은 ----------시행한다. 1.~3.(현행과 같음) 4. 교육정책에 관한 제반연구와 추진 5. 출판물 간행, 보급과 그에 따르는 기독교 문화 및 문서 선교사업	출판국의 목적에 대한 내용 요약 추가 출 판 위 원 회 규정상의 사업내용 신설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제6조(위원회심의기관)이사회에 심의기관으로임원과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된 인사•재정위원회와 교육•정책위원회를 둔다. 1. 인사•재정위원회 : (생략) 2. 교육•정책위원회 : (생략) (신설)	제 6 조 (위 원 회 심 의 기 관) 이 사 회 에 ----------교육•정책위원회 및 출판위원회를 둔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출판위원회 : 출판분야의 정책과 안건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출 판 위 원 회 규정상의 출 판 위 원 회 기능추가 (출판위원회는 별도 구성)
제7조(교육원) 교육원에는 실무의 연구와 집행을 위해 다음의 인력을 둔다. 1. 교육원장 : (생략) (신설) 2.책임연구원 : (생략) 3.연구원 : (생략) 4.사무원 : (생략)	제7조(교육원)교육원에는 실무의 연구와 집행을 위해 다음의 인력을 둔다. 1. 교육원장 : (현행과 같음) 2. 출판실장 : 교육원장을 보좌하며, 출판관련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3. 책임연구원 : (현행과 같음) 4. 연구원 : (현행과 같음) 5. 사무원 : (현행과 같음)	출 판 실 장 의 인력을 확 보 하 도 록 출 판 실 장 을 두도록 신설함

제8조(각종회의)교육원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이사회 : (생략) 2. 임시이사회 : (생략) 3. 임원회의 : (생략) 4. 전문위원회의 : (생략) 5. 연구원회의 : (생략) (신설)	제8조(교육원)교육원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5. (현행과 같음) 6. 출판위원회의 : 매년 1회 이상 교육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출판위원회의를 두고 교육원장이 의장이 되어 출판정책 등을 담당토록 함
제16조(내규) 교육원의 기구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16조(내규)----------따른다. 다만, 출판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는 별도의 규정을둔다.	현행 출판위원회 규정을 수정 보완 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4.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⑭총회교육원에 교재출판국 설치 청원 건

(제안 설명) 최근 출판국의 재정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팎으로 들려왔습니다. 현재 출판국이 담당하는 일들이 총회교육원에서 만든 교재들과 공과를 출판하고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총회교육원은 천안 신대원에 있고 출판국은 서울 총회회관에 있음으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하여 이중적으로 재정이 지출되어야 할 염려도 있습니다.(인건비와 디자인비용, 홍보비용 등) 또한 총회출판국의 역량에 따라 수익성의 차이가 남으로 총회교육원의 개발사업과 수익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교재의 개발과 출판, 판매와 홍보는 같은 업무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효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기업의 방향성도 이러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총회교육원 안에 교육교재와 관련한 출판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업무의 일원화와 이중적인 재정지출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총회교육원 안에 교재출판국(교육원 개발 교재 출판)을 두어서 교재개발과 출판, 홍보와 판매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조직을 변경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5.발의 : 예결산위원회위원장 우신권 장로

제목 : ④총회출판국과 총회교육원 통합 청원

(제안 설명) 총회출판국은 총회교육원에서 개발한 공과 및 출판물과 자체적인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는 총회 수익기관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2월 말 총회교육원이 천안신대원 건물 내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동일한 업무 경비의 이중 지출이 발생하기도 하며, 거리의 제한으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됨으로써 수익창출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총회출판국의 실무책임자에 따라서 교육원과 출판국의 업무 연대와 수입창출이 원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업무 및 재정적인 효율성을 위해 총회출판국과 총회교육원의 통합을 청원합니다(경비 이중 지출의 예, 창고사용료, 디자인 편집비용, 이미지구입비용 등).

6.발의 : 경남노회장 황규용 목사

제목 : ②총회장과 유지재단 이사장의 분리

(제안 설명) 현재는 총회장이 유지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 총회장이 고신교회의 대표로서 유지재단 대표가 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인다. 그러나 많은 유지재단 업무와 관련해서 1년직인 총회장이 유지재단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유지재단 이사장은 고신교회가 위탁한 재산을 관리하고, 언론사를 운영한다. 이들 업무의 연계성과 원활한 일 처리를 위해서는 총회장의 이사장 겸직은 고려되어야 한다. 4년 임기의 이사들 가운데 2년을 봉사하고 남은 2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이사 가운데 호선하여 이사장을 세워 일을 맡기는 것이 책임성과 효율성 면에서 훨씬 나아 보인다.

7.발의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

제목 : ⑩총회장의 총회유지재단 이사장직 겸직에 대한 재고 청원 건

(제안 설명) 현재 총회유지재단의 이사장은 총회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회의 재산에 관한 문제나 언론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일에 총회장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총회의 업무에 대한 복잡성과 긴급함이 요청되는 경우를 위해 재고가 필요합니다. 총회장의 대내외적인 업무의 과다로 인하여 유지재단이사회가 열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총회장의 업무로 인한 분담과 유지재단 고유의 전문성을 살린 운영을 위해 유지재단 이사회 안에서 이사장을 선출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총회의 발전에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회규칙 제17조 1항의 (단, 총회장은 유지재단이사장만 겸할 수 있다.) 와 3항 1호 1

목의 회장은 임기 1년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는 조항을 '유지재단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유지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로 수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8.발의 : 서부산노회장 안영호 목사

제목 : ②박기천 전도사 순교기념관 건립 허락 청원

(제안 설명)

박기천전도사 순교기념관 건립 허락 청원

1. 제 58회 총회 본회의에서 "마산노회장 황삼수목사가 청원한 순교자기념관 건립을 위한 전국교회 한 주일 헌금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 했습니다.
   (제 58회 총회록 p1082 촬요 p36)
2. 그러나 시행 부서가 없고 모금 활동하는 기관도 없고 한 주일 헌금을 독려하는 주체가 없어 결정만 해 놓고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3. 통합측 교단은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거교단적으로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사업회를 조직하여 용인에 한국교회순교자기념관을 건립하고 순교자들의 영정을 모아 진열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장학회를 만들고 장학금을 모아 순교자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반 우수한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통합측 교단적으로는 6월달째주일에 순교자기념주일을 지키고 있으며 헌금은 순교자논문발표회, 순교정신함양을 위해 순교성지 지도를 만들어 소개하고 3박4일 일정, 2박3일 일정, 당일 일정을 만들어 교회별로 순교성지 순례단을 모아 순교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있습니다.
5. 합동측 교단에서도 총회 부서 조직에 구제부, 사회부, 순교자기념사업부가 지금도 엄연히 활동하고 있으며 6월에 순교자 기념주일도 지키고 있습니다.
6. 우리 고신 교단은 순교정신, 진리파수, 주일성수, 생활의 순결을 외치며 시작한 교단인데 순교자 기념사업회도 조직되어 있지 않고 순교기념주일을 매년 6월 둘째주에 지켜오다가 16회 총회 때 당시 부총회장이던 송상석 목사가 사회부장이 되면서 구제부와 구제위원회와 순교자 유족구호위원회를 통합시켜 사회부로 만들어 버린 이후 순교자라는 단어가 총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30회 총회때 "6월 둘째 주일에 사회부 주일로 지키고 ... 헌금은 사회부로 보내달라" 고 청원했고 총회가 허락했습니다. 순교기념주일이 사회부 주일로 바뀌어 버리고 순교기념주일은 고신교단에서 사라졌습니다.
7. 늦은 감은 있지만 총회 조직 속에 순교자 기념사업회를 법과 규칙을 변경해서라도 조직하고 후원 이사회도 조직하고 순교기념선교회도 조직하여 순교정신을 널리 선양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절차는 연구와 의견 조율과 준비 과정이 필요하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8. 금년 67회 총회에서 박기천 전도사 순교기념관 건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박기천 전도사 순교기념관 건립사업회와 후원이사회 조직과 교단내 교회와 성도들에게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9. 재단법인을 세우려 하니까 30억원의 예치금이 필요하고 사단법인은 최하 3억원과 정기적인 후원회원이 100명이상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 총회가 허락만 해 주시면 재단법인 고신총회 이름으로 모든 행위가 공적으로 인정되어 아무 문제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11. 박기천 순교기념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임야 약4천평, 전 약 2천여평을 박기천전도사가 마지막 시무하던 경남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내가천 마을 곁에 준비했습니다.
12. 교단적인 관심과 적은 액수의 헌금이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교정신 확산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3. 거창군 가조면에 있는 백두산 온천이 약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14. 국도변으로 이전했던 가천교회가 합천댐 건설로 수몰지역이 되어 거창으로 이전하여 현재 고신 가천교회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관광지 합천댐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은 순교지 순례자들에게 상당한 매력을 줄 수 있습니다.
15. 24세 절음 나이로 1950. 8. 7 인민군에게 순교당한 배추달선생의 묘소와 기념비(1992. 7. 23건립)가 있는 화양리 마을 공동묘지도 멀지 않습니다.
16. 칠원의 손양원목사의 생가와 진해시 웅동의 주기철 목사 기념관과 울산 월평교회순교자 6인의 순교지역을 연계시켜 순교성지 지도를 만든다면 훌륭한 성지순례 코스가 될 것입니다.

(요약)

박기천전도사 순교기념관 건립 허락 청원

1. 박기천 순교기념관 건립 사업회 조직 허락 청원
2. 박기천 순교기념관 후원 이사회 조직 허락 청원
3. 박기천 순교기념관 모금 허락 청원

9.발의 : 총회교육원이사장 이영한 목사

제목 : ②신임 총회교육원장 인준 요청의 건

(제안 설명) 총회 교육원 이사회는 다음의 사람을 총회교육원 원장으로 선임하였사오니 총회 취업규칙 제22조 2항에 의하여 임명을 요청하오니 살펴보시고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름 : 박신웅
2. 생년월일: 1973년 3월 1일
3. 직책 : 총회 교육원장
4, 참고사항

1) 박신웅 목사는 총회 교육원 개발실장과 복있는사람 편집장으로 봉사하였으면, 교육분야의 박사학원(Ph. D)를 가진 고신총회의 교육전문가 입니다.

2) 총회 교육원장 선임은 지난 제66-3차 이사회(1월 17일)에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5. 이력서 첨부

이력서

성 명	박신웅	영 문	Park, SinWoong	
생년월일	1973년 3월 1일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신방동, 신방한라비발디)			
연락처	010-7761-	E-mail	rew21c@hanmail.net	

신력사항	년 월	내 용	수세자(기관)	교 회
	1973. 5	유아세례	심상동목사	마산성막교회
	1987. 4	입 교	최우권목사	마산중부교회
	2003. 10	목사임직	수 도 노 회	안양신일교회

학력사항	재 학 기 간	학 교/ 학 과 명	학위 취득
	1991. 3 - 1995. 2	고신대학교 신학과	문학사(B. A)
	1995. 3 - 2001. 2	고려신학대학원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M. Div)
	2007. 8 - 2008. 12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 기독교교육학과(미국)	문학석사(M. A)
	2009. 1 - 2010. 1	고든 콘웰 신학교 설교학 신학석사(미국)	신학석사(Th. M)
	2010. 8 - 2013. 12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성인교육학 박사(미국)	철학박사(Ph. D)

병역	복 무 기 간	군별	계급	병과	군필여부	근무처/ 보직
	1995. 7 - 1998. 9	육군	중위	보병	군 필 (학사 26기)	7사단 신병교육대 교관 및 소대장

경력사항	기 간	경 력 내 용
	1999. 7 - 2004. 9	서울남부교회(수도노회, 현 밝은빛 광명교회) 교육전도사, 강도사, 협동목사(파트타임 사역)
	2001. 1 - 2004. 9	총회교육원 간사(현 연구원, 전임사역)
	2003. 1 - 2006. 9	생명의 양식 4차 교육과정 개발 위원 (어린이 교재 및 중고등부교재)
	2004. 10 - 2006. 9	서울남부교회 부목사(전임사역)
	2014. 4 - 2017. 1	고신총회 총회교육원 개발실장 (책임연구원, 복있는 사람 편집장, 총회교사대학 교수)
	2013. 3 - 현 재	고려신학대학원 외래교수

10.발의 : 총회유지재단이사장 배굉호 목사

제목 : ③고신언론사 사장 인준 요청

(제안 설명) 유지재단 제66-2차 정기이사회 결의로 총회규칙 제5장 제22조와 고신언론사 운영·시행세칙 제11조에 근거하여 배종규 장로를 사장으로 선임하고, 인준을 요청합니다.

이 력 서

성명	한글 배 종 규 (인)	주민등록번호	550716-
	한자 裵 鐘 圭	생 년 월 일	1955.07.16
현주소	대구시 북구 옥산로		☎ 연락처
소속	대구 노회 대구서교회		

번호	년	월	일		비 고
				< 신 력 >	
1	1973	11	17	세례 (대구서교회, 박정덕 목사)	
2	1990	5	1	집사 장립 (대구서교회, 권오정 목사)	
3	2001	6	21	장로 장립 (대구서교회, 권오정 목사)	

				< 학 력 >	
4	1983	2	22	영남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졸업	경제학사
5	1990	2	22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졸업	경제학석사
6	2002	2	23	대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경제정책 전공)	경제학박사
				< 경 력 >	
7	1975	1	16	농수산부 통계사무소 임용	행정공무원
8	1980	3	14	농수산부통계사무소 퇴직	
9	1980	3	15	영남대학교 임용	
10	1983	6	1	영남대학교 의료원 발령	사무국장 역임
11	2012	2	28	영남대학교 의료원 퇴직	
12	1993	~ 1996		대구과학대학교 출강	

번호	년	월	일		비 고
13	1994	~ 2014		영진전문대학교 마케팅학과 겸임교수	
14	1998	~ 2007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출강	
15	2012	~ 2014		고신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출강	
16	2013	~ 2014		영남이공대학교 보건학과 출강	
17	2004	~ 2007		사단법인 생명의 전화 감사	
18	2013	~ 2014		한국국제기드온협회 대구달서캠프 회장	
19	2014	~ 현재		고신언론사 사장	

				< 교단봉사 >	
20	2007	~ 2011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려학원 이사	
21	2010	~ 2012		대구노회 부회계, 회계	
22	2011	~ 2013		총회 감사부	
23	2014	~ 현재		고신언론사 사장	

위의 내용은 틀림없음.

2017 년 7 월 17 일

작성자 배 종 규 (인)

1. (1)신력, (2)학력, (3)경력 순서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2. 수세례 연월일, 임직 연월일은 반드시 기록하여 주십시오.

11.발의 : 종교개혁500주년준비위원회위원장 박영호 목사

제목 : ② '성경개관서 출간 소위원회' 허락 청원

(제안 설명) 지난 2년 동안 총회의 허락 하에 고신레포Refo500주년 준비위원회가 '오직 말씀위에 교회를 세우자/새롭게하자/성장시키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단교회에 '성경', '교리', '역사' 를 손에 들려주어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500주년을 맞는 올 해를 기점으로 하여 교단의 교회들을 개혁주의원리로 세우는 원년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동안 준비위원회에서는 '시편찬송으로 예배를 풍성하게', '500주년기념교회설립', '직분자/목회자 교리학당', '장년교리문답교재발간', '종교개혁자들과의 대화 소책자 시리즈', '종교개혁에 근거한 2017년 목회계획' 을 소개하고 자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현재 남아 있고 진행중인 것이 '성경개관서 발간' 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성경전체를 권별로 개관하는 책인데 '세움북스' 에서 전 6권으로 출간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에 이 일이 종료되는 다음 회기까지 '성경개관서 발간 소위원회' 를 존속하게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2.발의 : 헌법해설수정위원회위원장 권오헌 목사

제목 : ①헌법해설수정위원회 1년간 존속청원

(제안 설명) 총회헌법해설위원회는 제62회 총회의 허락으로 조직되어 2004년에 고신총회 역사상 최초로 〈헌법해설〉을 간행한 바 있으며, 제65회 총회의 허락으로 이미 발간된 〈헌법해설〉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서는 오·탈자 등을 수정하여 3쇄를 간행하였습니다. 한 회기 동안 본 위원회가 존속하여 2018년 3월까지 전국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2018년 7월 이전에 수정된 내용을 총회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년 총회 전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출판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를 한 회기 동안 더 존속한 후 폐지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위원: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계 외 위원회에서 선정 3인.

13.발의 : S.F.C. 조사위원회위원장 김상석 목사

제목 : ②S.F.C. 조사위원회 1년 연장 청원

(제안 설명) 본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 SFC본부에 제시한 11가지 SFC개혁 실천방안 – ㈎대표간사의 리더십약화, 운동원들과의 소통부재, 현장성 약화, 재정부담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신학간사의 고령화 해결 방안, ㈏교회 사역의 축을 세우기 위해 본부에 '교회사역부' 설치에 따른 인사, 재정, 사역 계획안, ㈐각 지역의 '학원과 교회의 사역균형' 을 위한 인사 및 재정 분할 계획안과 2018년도를 기점으로 신학 간사의 전국 노회별 재배치에 대한 인사 및 교회사역 계획안, ㈑학원현장의 전도활성화와 사역의 역동성을 위하여 1term 내지 2term 사역할 평신도간사들의 모집계획안과 캠퍼스 집중 배치 계획안, ㈒1term 내지 2term 평신도간사의 사역비 모금을 50%는 지역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개인이 모금하는 방안과 15년차부터는 개인 풀링으로 전환하는 방안, ㈓여자 평신도간사의 신학교육 및 퇴직 연한에 대한 규정과 남자 평신도간사의 신학대학원 입학 시기와 신학을 이수하지 않을 시 퇴직에 관한 규정, ㈔간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예민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SNS나 강의, 설교를 통해 표현, 주장하여 운동원 개개인의 신앙양심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간사들의 신학적 견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 ㈖SFC 강령에 충실한 운동을 구현할 간사를 양육할 신입간사훈련계획안 및 간사 재교육 계획안, ㈗필수 인원만 장기 사역할 수 있도록 간사 사역 정년제에 대한 방안, ㈘사회참여에 대한 통일된 개혁주의 신학 정리 방안 – 이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확인점검하기 위해 본 조사위원회의 1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4.발의 : 통합기념교회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상석 목사

제목 : ①본 위원회 존속 및 재정 모금 청원의 건

(제안 설명) 위원회 존속을 1년 더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설립 기금마련을 위한 모금 허락 청원하오며, 위원으로는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서기, 회계, 사무총장, 천환 목사. 김관태 목사, 이성용 목사, 김동진 장로로 조직하고 모금을 위한 약간 명의 위원을 자체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15.발의 : 학교법인 이사장 황만선 목사

제목 : ①학교법인 고려학원 기본재산 처분 동의의 건

(제안 설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와치로 173-1 소재인 우리 학교법인 고려학원(고신대학교)의 기본재산을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제7조(재산의 관리)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재산의 표시 (단위:천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감정평가액	비 고
토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와치로 173-1)	225-155	대	560㎡	1,636,200 1,640,000	
	소계		1 필지	560㎡		
건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와치로 173-1) 한나라빌 제10동 (지하1층,지상5층)	225-155	업무시설 (오피스텔)	1층 322.42 2층 320.46 3층 320.46 4층 320.46 5층 320.46 지하276.08		
	소계			1,880.34㎡		
감정평가 평균액		-	-	-	1,638,100	

나. 처분사유

- 상기의 부동산은 지난 2007년 6월에 부족한 학생기숙사 용도로 활용하고자 구입한 교지 외 부동산으로 교지 2Km 이내에 위치한 교육지원시설입니다.

- 부족한 학생 기숙사 시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에 학생 기숙사 추가 건립계획을 세우고 지난 2017년 2월에 744명 수용 규모의 행복기숙사를 완공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 당초의 구입 목적에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상기의 잉여 부동산은 교지 2Km 이내에 위치한 교지 밖의 건물로 사생들의 생활지도를 비롯하여 건축물 안전 관리 및 유지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 처분금의 용도

- 상기의 잉여 교육지원시설의 매각 자금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전액 투자할 계획입니다.

16.발의 : 총회임원회 총회장 배굉호 목사

제목 : ③순장총회 교류위원회 설치

(제안 설명)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장총회는 1938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가 신사 참배를 결의하자 여기에 반대해 설립한 교단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 우리교단의 정신과 같은 총회로서 교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 유안건 (18건)

1. 협력위원제도 개선과 각 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칙의 개정 청원에 대한 연구 보고

☞ **제66회 총회 결정 :** 총회임원회와 행정위원회에 맡겨진 협력위원제도 개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실행위원회 구성은 1)목사, 장로 각 3명으로 구성하며, 2)각 노회는 1명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칙개정 청원은 1년간 보류하기로 하고 총회 임원회와 행정위원회에 맡겨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차기 총회에서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유안하기로 한 건에 대한 총회임원회와 행정위원회의 보고는 보류하고, 행정위원회에 맡겨 1년 더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 **행정위원회 보고 :** 66회 총회에서 행정위원회에 위임된 총회 임원회와 행정위원회에 맡겨진 협력위원 제도 개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실행위원회 구성은 1) 목사 장로 각 3명으로 구성하며 2)각 노회는 1명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칙 개정의 건에 대해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한 건은

1) 총회의 모든 총대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각 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동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과 협력위원으로 명칭을 구분함으로 인해 협력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므로 명칭의 구분을 없애고 모두 위원으로 통일하며 각위원회에 불참하는 총대 명단은 해당 노회에 통지하여 다음 총회 시 총대로 참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회의 진행 세칙 7조 참조)

2) 각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실행위원을 두며 실행위원회는 목사4 장로3 명으로 구성하며, 총회 공천위원회에서 각 노회 별로 안배하여 배정하고 노회의 추천으로 실행위원이 되는 것으로 하며 각 위원회 임원은 총회 기간 중 해 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실행위원 중에서 선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총회규칙 개정 청원을 합니다.
총회규칙 12조 12항 개정안
12. 노회의 파송을 받은 총회 총대는 총회 기간 중 각 위원회에서 반드시 참석하여 활동을 해야 하며 불참 시 해 노회에 통보하여 다음 총대로 참석할 수 없도록 한다.
부회와 각위원회에 배정된 안건의 결의는 과반수 출석이어야 하며, 결의 보고서에는 결의 당시 출석수를 기록한다. (회의 진행 세칙 7조 참조).

총회규칙 12조 13항 개정안
13.각 위원회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실행위원회를 둔다. 실행위원은 목사 4명 장로 3명으로 구성하며 총회 공천위원회에서 각 노회 별로 안배하여 노회에 배정하고 노회의 추천으로 실행위원이 된다 실행위원회 임원은 각 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2. 예산절감을 위한 총회 산하 상임위원회와 기관들의 회의방법 개선 청원에 대한 연구 보고

☞ **제66회 총회 결정 :** 경남노회장 이인덕 목사가 청원한 예산 절감을 위한 총회 산하 상임위원회와 기관들의 회의 방법 개선 청원 건은 행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 **행정위원회 보고 :** 66회 총회에서 행정위원회에 위임된 경남노회장 이인덕 목사가 청원한 예산절감을 위한 총회산하 상임위원회와 기관들의 회의방법 개선 청원 건은 각 위원회와 기관들 중 모임 횟수의 증가로 인해 경비가 추가되므로 예산 절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회의 방법과 공문서 전달과 회의비 감축안을 제안합니다.

1) 의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총회산하 임원회 위원회 각기관 노회 시찰회의 담당자들이 SNS(문자 email 단체카톡방 카톡그룹콜 스카이프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조율하고 최종결정 단계에서 전체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공문서 발송은 문서를 SNS(문자 email 단체카톡방 등)로 전달하는 것을 공인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임원회 위원회 기관에서는 문서로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3) 예산절감을 위해 임원회 위원회 기관의 회의비를 현재 수준의 2/3로 책정하는 것으로 한다.

3. 기관목사 기준에 관한 질의에 대한 연구 보고

☞ **제66회 총회 결정 :** 서울노회장 조현철 목사가 청원한 기관목사 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한 청원건은 행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 **행정위원회 보고 :** 66회 총회에서 행정위원회에 위임된 서울노회장 조현철 목사가 청원한 기관목사 기준에 관한 질의에 대한 청원 건은 각 노회에서 기관목사를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서 혼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기관목사의 기준을 제안합니다.

1) 교회정치 42조 목사의 칭호 5항에서 기관목사를 신학교 병원 학교 기타 기관에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목사라고 하였기에 고신교단 소속이 아닌 경우에라도 초교파적으로 한국교회에 잘 알려져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사역하는 목사는 기관목사로 인정하고 그 외의 기관은 교단 교회와 복음의 유익의 정도를 노회에서 살펴서 기관목사로 허락하는 것으로 하며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목사는 기관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총회의 효율적 감사를 위한 제도개선 청원에 대한 연구 보고

☞ **제66회 총회 결정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가 청원한 총회의 효율적 감사를 위한 제도개선 청원 건은 1년간 행정위원회에서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 **행정위원회 보고 :** 66회 총회에서 행정위원회에 위임된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가 청원한 총회의 효율적 감사를 위한 제도개선 청원 건은 감사부에서 총회의 모든 위원회와 각 기관을 감사하므로 감사부원들이나 각 위원회와 기관들의 수고와 경비지출이 가중되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1) 각 위원회 회의록과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감사부에 보내어 1차 서류감사를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 2차 출석감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2) 효율적 감사를 위해 각 위원회 기관의 회의록과 회계장부를 표준화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5. 부목사 대책 연구위원회 구성 요청 건에 관한 보고

☞ **제66회 총회 결정 :** 서부산노회장 우남복 목사가 청원한 부목사 대책 위원회 구성 요청 건은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 **미래정책연구위원회 보고 :**

○ 연구 애로 : 총회 안의 부목사들의 상황과 앞으로 은퇴할 목사들의 통계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를 노회들에 요청하였으나 40%에 달하는 노회가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아 정확한 통계 자료를 만들 수 없었다는 점을 먼저 보고합니다.

○ 개선 건의

1) 매년 총회 사무실에서는 목사들의 임직과 은퇴, 이동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은퇴와 담임목사 수급의 문제를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

2)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많은 인력과 재정을 필요로 함으로 미래정연구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연구조사를 하도록 위탁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아옵니다.

3) 대책

❶ 일정 규모의 교회들은 분립개척을 하도록 권장한다.
(500명 교회는 5년에 1회, 1,000명 이상 교회는 3년에 1회 등 구체적 명시)

❷ 신대원에서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목사양성(교육, 청소년, 노인복지 등)

❸ 유학생선교, 다문화가정 선교에 관한 연구와 지원
(고신총회세계선교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국내선교사 양성과 파송을 준비)

❹ 다양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여서 사회다방면으로 진출

❺ 해외 이민교회의 적극적인 개척과 지원

6. 총회행정부서와 사법부서의 독립방안 마련 청원

☞ **제66회 총회 결정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가 청원한 총회 행정부서와 사법부서의 독립 방안 마련 청원 건은 법제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 **법제위원회 보고 :** 현실적으로 인적 교환을 제한하게 되면 총대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총회 법제 위원회에서 “교회법 연수과정”을 신설하여 시행하므로 전문적인 인원이 확보되어 사법부서의 독립성을 키워가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7. 재판국의 판결관계 정립 청원

☞ **제66회 총회 결정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가 청원한 법제위원회의 답변과 재판국의 판결 관계 정립 청원 건은 법제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 **법제위원회 보고 :** 법적 해석은 법제위원회의 법해석을 근거로 재판국의 최종 판결이 되어지는 것이 유익한 줄 압니다.

8. 교회법 전문인을 세우는 전략수립 청원

☞ **제66회 총회 결정 :** 경남노회장 이인덕 목사가 발의한 “교회법 전문인을 세우는 전략수립 청원” 건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깊이 연구해야 할 과제로 법제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 **법제위원회 보고 :**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교회법 전문인 양성이 시급한 문제일 뿐 아니라 장기적인 면에서도 필요한 사안이므로 총회차원에서 교회법을 전문적으로 이수한 사람에게 법적인 문제를 맡겨 일하도록 함이 옳은 줄 알기에 총회 법제위원회에 “교회법 연수과정” 을 신설하여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오며 로 보완 수정하기로 하다

9. 노회 상설 재판국과 기소위원회 폐지 청원

☞ **제66회 총회 결정 :** 부산노회장 양승기 목사가 제출한 “노회 상설 재판국과 기소위원회 폐지 청원” 을 받기로 하고, 3분의 2 이상의 절대 다수 찬성으로 관련 헌법(교회정치 및 권징조례 등) 조항을 개정하기로 가결한 후 폐지에 따른 조문화 작업 등의 후속 조치 등은 법제위원회에서 1년 동안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한 후 각 노회에 헌법수의하기로 가결하다.

☞ **법제위원회 보고 :** 현 헌법의 개정되어야할 조문은

권징조례 제8조 4항 재판은 3심제로 하며 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2심은 노회재판부에서 제 3심은 총회 상설재판국에서 관장한다.

제12조 1항 당회 및 노회 재판국은 필요시에 각각 당회 및 노회에 총회 재판국은 상설로 총회에 설치한다.

3항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와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부에 속하되 총회 재판국에 상소할 수 있다.

제 3절 노회 재판부

제19조 1, 노회 재판부는 본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부원 7인(목사4인, 장로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부원은 동일한 교회 파송총대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재판부원 7인은 총대 중 교회법에 상당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목사는 임직 15년 이상 장로는 임직10년 이상 된 자 중에서 투표로 선임한다.

제 20조는 생략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 및 직무)

1.재판부 임원으로 부장과 서기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부원 중에서 선택한다

2. 재판부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부의 재판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서기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고 재판부의 재판사무를 관장하며 회계는 재판부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제21조(의결방법)
1. 재판부 회의는 재판부 재적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목사가 과반수라야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재판부 서기는 재판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부장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등본 날인하여 노회서기에게 한 통을 제출하고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한 통씩 교부하여야 한다.
3. 재판부는 그 판결의 .....
4. 재판부는 본 노회 회무 중에 .....
5. 노회가 재판부의 보고를 채용.....
6. 본 노회가 폐회한 후 재판부에서 재판한 사건은 .....
제22조 (재판사항)
노회 재판부는 다음의 사건을 재판한다
제 23조 ~제 27조
제28조(재판사항)
1. 노회 재판부의 판결에 .....
3항은 생략
3. 기타 총회 재판국의 권한에 속한 사항
4. 총회는 재판사건을 .....
29조~32조
제33조 (재판비용의 예납)
1.
34조~36조
제 37조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재판국은 30일 이내에 노회 재판부는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8조~56조
제 57조 생략한다
57조 ~64조
제 65조(항고및 재항고)
1..... 노회 재판부.....
2..... 제 64조의 규정에
3..... 노회 재판부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 재판국에 재 항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노회재판부는 재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단, 노회 재판부가 거부하면 부전을 붙여 제기할 수 있다.
4. 노회 재판부의 불기소처분 또는 .....
제 66조 (재판국의 결정)
1. 항고서.....수리한 노회재판부 또는 총회 재판국은 .....
제 67조~103조 (계속되는 재판 국장 이라는 명칭에 재판 부장도 함께 기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제 104조(상소)
5. 노회 재판부나 총회의 재판국이 판결한 것은 ....
제105조~121조
제 122조(상고의 일반규례)
제 2심 재판부 판결에 대하여.....
123조 ~176조

헌법적 규칙
계속되는 재판국원에 대한 명칭은 재판 부원및 국원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제 12조 (노회 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 , 자격) 생략 토록
제 12조~ 18조

10. 설교표절에 대한 대책 마련 청원

☞ **제66회 총회 결정 :** 전라노회장 김두한 목사가 청원한 “설교표절에 대한 대책 마련 청원” 의 건은 설교표절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신학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한 후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 **신학위원회 보고 :** 전라노회장 김두한 목사가 발의한 “설교표절에 대한 대책 마련 청원” 의 건은 설교표절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신학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한 후 보고하기로 가결하다는 결의에 따라 신학위원회는 2017년 1월 16일(월)에 고신언론사와 공동으로 설교표절에 대하여 좌담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기독교보에 게재하였으며, 2017년 2월 8일(수)에 실시한 설교표절에 대한 심포지움(주제발표자 : 한진환 목사)에서 수렴된 내용을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교표절이란 설교자가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자기가 작성한 설교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위선적이면서 의도적으로 도용하여 편집 또는 인용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첫째, 설교자는 목회대학원 수강 등을 통하여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둘째, 교회는 설교자의 더 나은 설교준비를 위해 더 많은 부분들을 배려하며, 셋째, 노회는 설교표절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교자를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하며, 설교표절의 행위자를 1차

견책하고, 지속적으로 설교표절하는 자는 엄중 시벌하여야 할 것이다.(*첨부 : 설교표절, 무엇이 문제인가?, pp.168 ~ 177)

11. 개체교회 적정규모 및 최대규모에 대한 연구 건의

☞ **제66회 총회 결정 :** 동부산노회장 박성배 목사가 청원한 "개체교회 적정규모 및 최대규모에 대한 연구 건의" 의 건은 신학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 **신학위원회 보고 :** 동부산노회장 박성배 목사가 청원한 "개체교회 적정규모 및 최대 규모에 대한 연구 건의" 의 건은 신학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는 것이 옳은 줄 아오며 라는 제66회 총회 결의에 따라 신학위원회는 2017년 6월 20일(화)에 심포지움(주제발표자 : 현유광 명예교수)에서 수렴된 내용을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체교회의 적정 규모는 담임목사가 성도들을 세심히 알고 각자에게 필요한 목회적 돌봄이 되어야 하므로 예배 출석 150여명(재적 250여명)이 좋으나 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사회적 책임 면에서 볼 때 예배 출석 300여명(재적 500여명)이며, 교회의 최대 규모로는 예배 출석 500여명(재적 900여명)이고 부목사에게 담임목사처럼 목회적 돌봄의 사역을 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규모도 가능하고 여겨진다.

교회의 규모가 큰 교회는 적절히 분립하여 적정규모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작은 교회를 도울 의무도 있으며, 적정 규모가 되지 못한 교회는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적정 규모를 이루어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첨부 : 지역교회의 적정규모는?, pp.178 ~ 194)

12. 다음세대의 출석 감소원인 분석과 성장 대안 마련에 대한 연구보고

☞ **제66회 총회 결정 :** 서부산노회장 우남복 목사가 청원한 다음세대의 출석 감소원인 분석과 성장 대안 마련 건은 총회교육원에 위탁하여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교육원 보고 :**

(1) 제안설명:

총회교육원은 지난 66회기 총회에서 결의하여 총회교육원에 위임한 "다음세대의 출석 감소원인 분석과 성장 대안 마련에 대한 연구" 를 66회기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총회교육원 이사회에서는 연구위원장에 조성국 교수를 선임하고 연구위원으로 고신대 조철현 교수, 이현철 교수, SFC의 박용성 박사와 총회교육원의 박신웅 박사, 이기룡 박사를

선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두 가지 주요한 연구의 내용을 담아 다음세대의 출석 감소의 원인 분석 및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첫 부분에서 지난 10년간 총회보고서에 따른 고신총회의 다음세대(유아, 유치, 초등부, 중·고등부)의 타교단과의 교육현황을 비교, 분석 보고하였고, 둘째 부분에서 고신총회 산하의 교회들의 설문을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분석에 따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를 이사회에서 살핀 후, 총회에 제출하오니 살펴보시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구보고서 첨부 :

보고서의 분량 관계로 연구보고서를 본 상정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보다 자세한 연구의 전체 내용은 책자로 총회 시 배부하고 간단히 보고할 예정입니다.(*첨부 : 다음세대의 출석 감소원인 분석과 성장 대안 마련에 대한 연구 보고서, pp.195 ~ 217)

13. "진해신학강좌 기념 표지석 설치" 의 건

☞ **제66회 총회 결정 :** 총회장 신상현 목사가 청원한 "진해신학강좌 기념 표지석 설치" 의 건은 총회 임원회와 진해노회가 표지석 설치 가능성 여부를 살핀 후 설치 및 관리하도록 가결하다.

☞ **총회임원회 보고 :** 총회장 신상현 목사가 청원한 "진해신학강좌 기념 표지석 설치" 의 건은 국방부와 협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았고, 설치와 관리는 진해노회가 추진하기로 하다.

14. 통합기념교회설립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구성

☞ **제66회 총회 결정 :** 통합후속추진위원회 위원장 신상현 목사가 발의한 "통합기념교회설립추진위원회 청원" 건은 받기로 가결하고, 준비위원회 구성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임원회 보고 :** "통합후속추진위원회 위원장 신상현 목사가 발의한 '통합기념교회설립추진위원회 청원' 건은 받기로 가결하고, 준비위원회 구성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한" 건은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서기 오성재 목사, 김관태 목사, 이성용 목사, 김동진 장로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하다.

15. 성도들의 다자녀 갖기 총회적 차원의 대책 마련 청원

☞ **제66회 총회 결정 :**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창도 목사가 청원한 "성도들의 다자녀 갖기 총회적 차원의 대책 마련 청원" 건은 담임목사(교역자)의 말씀과 목회적 돌봄을 통하여 다출산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또한, 매체(기독교보, 포스터 등)를 통하여

다자녀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 **총회임원회 보고 :**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창도 목사가 청원한 '성도들의 다자녀 갖기 총회적 차원의 대책 마련 청원' 건은 담임목사(교역자)의 말씀과 목회적 돌봄을 통하여 다출산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또한, 매체(기독교보, 포스터 등)를 통하여 다자녀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시행하도록 가결한" 건은 기독교보와 월간 고신 등을 통해 기획기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운동을 펼쳤다.

16.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총회적 대응을 위한 청원
☞ **제66회 총회 결정 :** 충청노회장 손종환 목사가 발의한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총회적 대응을 위한 청원 건' 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 **총회임원회 보고 :** "충청노회장 손종환 목사가 발의한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총회적 대응을 위한 청원 건' 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한" 건은 타 교단과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전총대원이 서명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사회 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도 하기로 하다.

17. 한국교회연합기관 참여
☞ **제66회 총회 결정 :** 한국교회연합기관 참여는 임원회 결의로 하도록 가결하다.
☞ **총회임원회 보고 :** "한국교회연합기관 참여는 임원회 결의로 하도록 가결한 건" 은 각 교단의 연합활동이 계속 진행 중이다.

18. 노회 구역조정의 건
☞ **제66회 총회 결정 :** 경북노회장 김종대 목사가 각 노회 명칭을 대한민국 행정구역에 맞게 조정 해 주시도록 청원한 건을 현 총회 내 각 노회 명칭이 행정구역과 맞지 않은 관계로 노회 이름만 듣고는 그 노회의 소속된 교회를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임원회에 맡겨서 각 노회 형편에 맞게 연구한 후 총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하도록 한 건 에 대해서, 총회임원회의 보고(제66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 153-155쪽)는 보고서대로 받고, 총회임원회에서 노회명칭 및 노회구역조정을 계속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수도노회장 방석진 목사가 발의한 '노회구역조정을 위한 전권위원회 설치 청원의 건' 과 총회장 신상현 목사가 발의한 '노회 명칭 개정에 따른 노회 지역 편성안에 대한 건' 은 총회임원회의 보고(제66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 153-155쪽)를 보고서대로 받고, 총회임원회에서 계속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임원회 보고 :**
1. 관련근거

가. 헌법적 규칙 제3장 교회정치 제5조(노회 구역 설정 및 변경)
1) 교회정치 제136조에 의거하여 총회가 결정하는 노회의 지역 구분 기준을 설정한다.
나. 총회결의사항(66회 총회, 2016. 9. 20-22. 천안 신대원 강당)
"노회명칭변경 및 구역설정키로 하고, 임원회에 맡겨 계속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2. 노회 명칭 및 노회 구역 설정의 개요
1) 노회구역설정은 장로교의 정치원리에 따라 노회의 지역성과 동등성을 추구합니다.
2) 노회의 지역성은 행정구역을 따라서 노회지역을 나누되 광역시·도를 경계로 나누지만 부득이한 경우 인접 광역시·도의 관련 노회가 합의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경남 양산-부산시 강서).
3) 노회간의 동등성을 위해 각 노회의 소속 교회를 60~80교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4) 큰 규모의 교회가 많은 대도시 지역 노회는 교회수가 다소 적어도(서울특별시의 경우 등), 작은 교회가 많은 농어촌지역 노회는 80개 이상이라도 허락할 수 있습니다(경상남도의 경우 등).
5) 광역시도에 속한 교회가 60개 이하라도 독립된 노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강원, 제주), 광역시·도를 합쳐도 교회수가 120여개 미달하여 2개 노회를 조직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 노회로 조직토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충청노회).
6) 노회 명칭은 광역(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를 원칙으로 하되 같은 광역시·도에 속한 노회 간의 협의에 따릅니다.
7)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교회는 관련 노회간의 협의가 있으면 소속을 3년간 유예할 수 있으나 2020년 10월 노회에는 지역의 소속노회에 소속되어야 합니다(대구서부노회 영남시찰 등).
8) 경기동부노회 및 경기서부노회 그리고 경기중부노회의 중부시찰은 적절한 시기에 각 노회의 결의에 따라 시찰이 재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9) 해외에 소재한 교회 교회들은 장기적으로 자매 해외 총회(미주고신, 대양주, 유럽총회)에 소속을 권장하고 한시적으로 1개 시찰로 편성합니다.

3. 전국 노회 명칭 및 구역설정안(별지는 제67회 총회 헌의안 및 보고서에 수록됩니다.)

설교 표절, 무엇이 문제인가?

한진환 목사(서울서문교회 담임)

작금의 한국 교회는 설교 표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재정 문제, 목사의 윤리성 문제와 아울러 설교 표절까지 문제가 되어 내홍을 앓고 있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다. 2007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가 교역자 3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교 준비, 설교문 작성 실태 및 의식조사" 에서 타인의 설교를 그대로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43%로 조사됐다. 기윤실은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 교회 홈페이지 활성화 같은 현대 문화의 특성상 상황은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어떤 목사는 아예 카페를 만들어 수천 편의 설교를 올려놓고 누구든지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즘같이 지적 재산권 문제가 첨예하게 되어 있는 시대에 그런 무분별한 설교 장사가 가능한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에 본고는 무엇이 설교 표절인지를 규정하고 그 해악과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설교, 선포된 계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실 때도 말씀의 방편을 사용하셨다. 선지자들은 이 말씀의 메신저로 선택된 사람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막 1:14). 신약시대에 이르면 하나님은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후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자신의 구원 사역을 증거 하기를 원하셨다. 각 지교회의 설교자들은 이 일을 위해 도구로 세움 받은 자들이다(딤후 4:2).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다. 그 일을 위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이면에서 말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일하신 설교자(the only true Preacher)이시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교회를 향하신 '설교자 하나님' 의 자기 계시이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 선포되는 자(the Proclaimed)가 동시에 선포자(the Proclaimer)가 된다.[1] 물론 옛적 선지자나 사도의 선포와 오늘날의 설교자의 선포를 동일선상에 놓고

---

1) James Daane, Preaching with Confidence, 29.

볼 수는 없다. 선지자와 사도의 선포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영원한 우주적 진리인데 반하여, 오늘날의 설교자의 선포는 구체적인 청중을 향한 제한적 선포이다.[2] 전자는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초월적인 계시를 자료로 한 선포지만, 후자는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의존적 선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설교자의 선포가 하나님의 계시일 수 있는 것은 설교 중에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 때문이다. 선지자와 사도들을 감동시켜 말씀을 선포케 하셨던 성령은 오늘날의 설교자들에게도 변함없이 역사하신다.

종교개혁자들은 설교를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이해했다. 루터나 불린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Praedicatio verbi Dei est verbum Dei*)이라고 단언했다. 칼빈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3]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많은 탁월한 은사들을 주셔서 인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특권은 황송하게도 인생들의 입과 혀를 성별하셔서 그들 속에 자신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하신 것이다."[4] 루터는 설교를 '복음의 살아있는 음성' (*viva vox Evangelii*)이라고 규정하면서 설교의 영원한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우리는 목회자나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 그 직무는 목회자나 설교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며, 그가 전하는 말도 목회자나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거기로 달려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당신은 당신 자신의 교회에서 당신 자신의 목회자로부터 듣는 말씀이 그것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5]

그러므로 설교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자신의 입을 열어 말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외쳤듯이 설교자도 담대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설교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

---

2) 리셔는 "설교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 Richard Lischer, A Theology of Preaching(Nashville: Abingdon, 1981), 79.

3) Homilies on 1 Samuel, xlii, 42.

4)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Grand Rapids: Eerdmans, 1989), IV, 1: 5.

5) Martin Luther, Saemmtliche Werke, ed. Johann Konrad Irmscher et al. (Erlangen: Heyder and Zimmer, 1826-98), III, 376. Henry J. Eggold, Preaching is Dialogue(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19에서 재인용.

신 뜻을 따라,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계시가 선포된 계시로서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설교자의 신학적 사고나 성경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는 장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설교자의 어떤 개인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겨서는 더더욱 안 된다. 설교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신학자 에밀 브룬너의 말처럼 "진정한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는 곳에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6)

설교자의 책무

설교자는 계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입' 으로 세움 받았지만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되는가? 강단에서 성경은 제쳐놓고 유치하고 경박스러운 자신의 말을 쏟아 놓으며, 회중을 즐겁게 하기 위한 연예(entertainment)에 열중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야 하는가? 여기에 설교의 영광과 한계라는 이중성이 있다.

설교자는 왕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령으로 부름 받은 것이지 그 자신이 왕은 아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왕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믿음이요 겸손함이다. 설교자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씨름해야 하며, 자신 속에 울려 퍼지는 말씀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 그는 오직 받은 말씀을 전달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경만을 전하는 본문의 종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지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기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전적으로 그 분을 의지해야 한다. 만약에 설교자가 강단에서 마음대로 자신의 말만을 쏟아 놓는다면 그런 설교자는 이미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자이다. 받은 것이 없이 받은 체 하며 들은 것이 없이 들은 체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일 뿐이다.

그런 사람은 왕의 징책을 면할 수 없다. 그가 설교자로 부름 받은 부름이 잘못이 아니라 그가 그 부름에 바르게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이 잘못된 것이다. 그 잘못에 대한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직책의 영광만큼 그 책무를 바르게 감당하지 못한 심판 또한 크고 중하다. 우리는 야고보의 경고를 명심해야 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약 3:1).

그러므로 설교자는 항상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자" 가 되어야 한다

6) 졸저, 「설교의 영광」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14에서 재인용

(고전 2:3). 만약 자신의 직무로 인하여 자만하며 목이 뻣뻣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설교의 본질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자이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피 값을 나에게서 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와 같은 설교의 영광과 책무를 생각하면 타인의 설교를 표절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단순한 절도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시키는 치명적인 죄악이다. '하나님의 입' 을 부정직한 속임으로 타락시킨 죄가 어찌 가벼울 수 있겠는가? 우선 무엇이 설교 표절인지를 살펴보자.

무엇이 설교 표절인가?

미국의 유명 대학들은 글쓰기에 있어 표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하버드대학: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가져다 쓴 정보나 데이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임을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것. 인용부호를 하지 않은 어구. 출처를 밝히지 않은 구조나 구성 전략." 예일대학: "인용부호 없이 원전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정보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원전을 조금 바꿨으나 거의 흡사한 경우." 프린스턴 대학: "다른 사람의 언어나 생각, 또는 다른 사람의 고유한 것에 대해 각주나 인용부호 등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경우. 몇 가지 변화를 주기는 했지만 원 저자가 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여 바꿔 쓰면서 각주를 달지 않은 것." 스탠포드대학: "합당한 자료의 출처나 작가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작업을 도용하는 것." [7]

이상에서 보듯 각 대학들의 공통적인 규정은 출처를 밝혀야한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일반적인 글쓰기와 설교는 다르다. 글쓰기에서는 남의 것을 인용할 때는 아이디어든 문장이든 출처만 밝히면 된다.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거의 없이 인용으로 점철되는 글이라도 학위를 받는 데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설교에서는 출처를 밝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설교 중에 '이것은 어느 주석에서 따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를 연발한다면 과연 교인들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러므로 설교 표절 문제를 다룰 때는 다음과 같이 일반 글쓰기와는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1) 의도적인가?

설교자가 처음부터 베끼기를 하겠다고 작심하고 시작했는가 아니면 설교자가 다른 사람의 자료로부터 받은 영향을 무의식중에 표출하게 되었는가 하는 의도성 여부

---

7) 전동진, "글쓰기 윤리의 정립과 윤리의식 제고 방안 연구: '표절유형과 인용법' 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55」(국제어문학회, 2012, 8호), 570

가 중요하다. 우리 주위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건서적들, 주석들, 강해서적들이 나돈다. 그 자료들을 접하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아이디어들, 영감들, 힘 있는 문구들이 끊임없이 목사 자신의 사고 속에 축적된다. 그런 자료들이 설교를 통해 흘러나온다면 그런 것을 표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자료들은 이미 깊은 묵상을 통해 목사 자신의 피와 살로 체화된 것이라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사고와 영성, 삶과 인격이라는 필터를 거쳐 선포되는 종합예술과 같은 것이다. 한 사람의 설교자가 강단에 서기까지는 자신의 고뇌 어린 몸부림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외부적 영향들이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 영향들 중에는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예화들 중에는 돌고 돌아서 전해지기 때문에 무엇이 오리지널인지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라든지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등의 단순한 포괄적 표현만으로도 충분하다. 자신이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만으로 설교자의 윤리적 책임은 다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 베끼기로 작정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대지를 가져오든 내용을 통째로 가져오든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남의 설교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도용이다. 일반 글쓰기와는 달리 설교에 있어서는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강단에 선 설교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이 다른 사람의 말만을 들고 선다면 그것은 설교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이기 때문이다.

(2) 반복적인가?

표절 행위가 단회적인가 반복적인가 하는 것도 표절 여부를 밝히는 척도가 된다. 그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행위였는가 아니면 습관적인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매주 서너 차례씩 설교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 속에서 때로는 초읽기에 몰려 불가피하게 남의 설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출처를 밝히기만 한다면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설교 가운데서 강한 성령의 감화를 받으며 현재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자신의 청중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 설교를 사용하는 것도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자신의 설교를 재탕하는 재탕설교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본다. 학자들에게는 자신의 논문을 중복 발표하는 이중게재가 문제가 되지만 설교자에게는 다르다. 교회사에 영성이 출중한 목사 가운데서 자신의 설교를 백 번 넘게 재탕한 사람도 있었다. 관건은 남의 설교를 사용하든 자신의 설교를 재탕하든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회중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적실한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경우의 표절 여부는 전적으로 설교자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상습적으로 남의 설교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작금에 설교 표절로 인해 내홍을 앓는 교회들도 대부분 목사의 장기간에 걸친 설교 도용 때문이다. 그런 경우는 100% 출처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목회 윤리적으로나 말씀의 종으로 세움 받은 사명의 차원에서나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표절행위에는 아편보다 더한 중독성이 있다. 설교자 자신을 위해서나 회중을 위해서나 그런 행위는 근절되어야한다.

(3) 위선적인가?

설교 표절 중에 가장 교묘한 것은 남의 설교를 기술적으로 자신의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다. 남의 설교를 이곳저곳에서 끌어와서 편집하거나 짜깁기해서 자신의 것처럼 둔갑시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설교자는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행위에 도덕적 면죄부를 주는 경향까지 있다. 짜깁기를 하더라도 자신의 관점이나 방향이 있어야 하고 또 자신이 일정 부분 노력도 했으므로 그렇게 짜 맞춘 설교를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깊은 묵상이나 자신의 고유한 창의적인 내용이 없이 남의 것을 편집한 것에 불과한 설교는 기술적인 표절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남의 예화를 편집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남의 예화에 나오는 이름과 일시를 살짝 바꾸어 사용하거나, 남의 체험을 마치 자신의 체험인양 둔갑시켜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저질스러운 변조 행위이다. 그런 비양심적인 행위를 동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위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설교 표절 행위의 해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설교 표절이 왜 잘못인가?

첫째, 표절은 하나님의 현재적 메시지를 가로막는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시대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신적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배후에서 말씀하신 진정한 설교자는 하나님이셨다. 설교자 하나님은 교회 시대에는 목사를 통해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주일마다 강단은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뜻과 음성을 전달하는 계시의 현장인 것이다.

그런데 설교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없이 베끼기만 한 원고를 들고 선다면 그보다 더한 잘못이 있겠는가? 바울 사도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preaching)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했다(고전 2:4). 그 어떤 인간의 지혜로운 말보다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재적 메시지를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설교자의 직무이다.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 설교자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 묵상하며 말씀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몸부림이 없이 ready made 된 인간의 말만을 들고 서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선생이 받을 더 큰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설교 표절은 윤리적 문제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가로막는 참람한 행위이다.

둘째, 표절은 설교자의 영혼을 고사시키는 행위이다.

혹자는 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만 있다면 표절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논문 표절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부도덕한 행위지만, 설교는 교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신학지식이나 지성이나 영성이 깊은 분들의 설교를 이용하는 것을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강변한다. 그것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어떠해도 좋다는 상황윤리적인 궤변이다.

계속되는 설교 표절 행위는 결국 설교자의 영을 죽게 만든다. 위로부터 공급받는 말씀이 없이 남의 대문만을 기웃거리는 영적 걸인 같은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건강하고 충만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빈핍한 영성으로 어떻게 교인들을 먹이며 교회를 이끌 수 있겠는가? 상습적인 설교 표절은 설교자의 영을 고사시켜 결국은 목사도 죽고 교인들도 죽게 만드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셋째, 표절 행위는 교회를 병들게 한다.

베낀 설교라도 은혜롭기만 하면 교인들은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교회마다 회중의 특징과 그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은혜로웠던 설교라고 해서 내 교회에서도 반드시 은혜로우리라는 보장은 없다. 성경에 담겨있는 영원한 진리를 '지금 여기에' 있는 청중에게 적실하게 (relevant) 들려지도록 전파하는 것이 설교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본문을 연구하는 것 못지않게 청중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 표절 설교는 청중을 완전 무시한 적실성 제로의 설교이므로 그런 설교에서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한 편의 설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영성은 물론 그의 지성과 인품, 가정생활, 인간관계, 사회생활, 취미생활에 이르기까지 설교자의 전 삶이 영향을 미친다. 한 편의 설교 안에 설교자의 전 인격이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목사는 "지난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몇 시간이나 걸렸습니까?" 하는 질문에 "55년이 걸렸습니다."라고 답했는데 그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표절 설교를 통해서는 그런 설교자의 전 인격적인 감화를 기대할 수 없다. 청중은 비 양심과 위선의 냄새를 맡을 뿐이다. 따라서 표절 설교는 교인들에게 일시적인 은혜를 끼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균형 잡힌 건강한 성장을 안겨줄 수는 없다.

현금에 한국 교회가 직면한 위기의 중심에는 신뢰성의 붕괴가 있다. 그 가운데서도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충격파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년 간 들었던 설교가 남의 것을 베낀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교인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해보라. 결국 목회 현장은 황폐화되고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설교 표절이야말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핵심 전략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보다 엄중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개선을 위한 제안들

설교 표절 문제는 목사 개인의 양식에 의존하는 개인 윤리의 성격이 강하므로 외부적인 제도나 환경의 변화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첫째, 설교 작성에 관한 전반적 교육의 강화이다.

댈러스신학교의 M.Div 과정은 신학의 전 과목들이 좋은 강해설교자를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필자도 개인적으로 신학의 꽃은 설교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중요성에 비해 한국 신학교들의 설교에 대한 교육은 빈약한 경우가 많다. 비전공자가 대충 가르친다거나 현장과는 동떨어진 지엽적인 이론 교육에 치우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본문 선택에서부터 주석과 아웃라인 작성, 그리고 전개의 전 과정을 스텝 별로 세밀하게 가르치는 실제적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런 든든한 기초도 없이 배출된 사역자들이 평생 남의 자료에 휘둘리며 살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신학교 시절부터 설교 작성의 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과제물 작성에 있어 신학생들의 정직성은 일반 대학생들보다 하등 나은 것이 없다. 신학교 시절에 짜깁기 같은 비양심적인 행위에 익숙하게 된 학생들이 평생을 그와 유사한 유혹에 노출되어 살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미국의 대학들은 학생들이 학문적 정직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명예규약(honor code)' 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도 2010년부터 리포트를 제출할 때 표지의 '배움의 윤리 서약' 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 '배움의 윤리 서약' 에 담긴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과제는 내가(우리가) 직접 연구하여 작성한 것이다.
2. 정확한 출처 제시 없이 다른 사람의 글이나 생각을 가져오지 않았다.
3. 인용한 문헌의 내용이나 자료(도표나 데이터)를 조작(위조 혹은 변조)하

지 않았다.

4. 과제물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구매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5. 과제물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동제출자로 명기하지 않았다.[8)]

신학교에서도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기본적인 글쓰기의 윤리에 대해 세밀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목사의 과중한 설교사역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작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목회자들은 일주일 동안 평균 7.5회 설교하며, 주일 낮 설교시간은 평균 45.9분, 그리고 설교준비 시간은 평균 4시간 4분으로 나타났다. 4시간 준비해서 설교해야 한다면 바울 사도라도 좋은 설교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설교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목사들이 표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므로 과중한 설교사역을 개선하기 위해 목사 자신과 교회 당국의 공동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목사는 대외적인 활동이나 목회 외적인 일에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절제해야 한다. 동시에 목사가 교회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여나 심방, 각종 모임 주도 같은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도록 교회 측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어야한다. 목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성경적 원리이다.

셋째, 목회 성공주의 신드롬을 극복해야 한다.

목사들은 초읽기에 몰린 다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설교를 베끼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유명 목사의 탁월한 설교를 도용함으로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작용하기도 한다. 출처를 밝히기만 하면 표절의 잘못은 면할 수 있는데도 굳이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이 그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랴? 좋은 설교를 통해 명예도 얻고 교회 성장도 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열매가 파멸의 길로 이끌었듯이 그러한 욕망은 망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세속적인 성공주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무분별하게 거짓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곧 자신을 망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지름길이다.

넷째, 설교사역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목사는 오직 말씀 증거를 위해 부름 받은 자이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입'으로 부름 받은 자이다. 그것은 인간이 땅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

---

8) 정소연 외, "대학생 글쓰기 과제물의 표절 실태와 표절 검사 시스템의 표절 예방 및 적발효과 연구" 「사고와 표현」 제4권 1호 (한국사고와 표현학회, 2011), 164

일 중에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직무이다. 20세기가 낳은 강해설교자 로이드 존스는 그의 책 「목사와 설교」의 첫 문장을 "설교사역은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소명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한다.[9] 잭 하일즈는 설교가 유한한 존재들에게 영원을 안겨주는 사역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강단에 가까이 갈 때에는 천사들도 날지 못하게 하고 천국의 호산나 소리도 잠잠케 하며, 어른들을 경청케 하고 아이들은 귀를 기울이게 하고 젊은이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천국이 응답하고 지옥은 떨도록 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거룩함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럴 때 영원한 모든 것은 떨며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두려움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다.[10]

---

9) D. Martin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71), 9
10) Jack Hyles, 「Teaching on Preaching」, 이황로 역, 「잭 하일즈의 설교가 보인다」(서울: 도서출판 예향, 1997), 263-263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

현유광 명예교수

매사(每事)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나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며, 크고 웅장한 건물을 갖춘 교회를 사람들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던 제자들을 향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막13:2)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순절 후 1만 명 이상이 모이던 예루살렘 교회를 사방으로 흩어 보내신다.(행 8:1)

영광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이다. 그의 뜻에 순종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만이 교인의 숫자나 교회당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비난한다. 한국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찾기 위해 고민한다. 아래의 건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시도 중 하나이다.

동부산 노회장 박성배 목사는 "개체교회 적정 규모 및 최대 규모에 대한 연구 건의" 를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제66회 총회에 제출했다. 아래는 이 건의의 제안 설명이다.[1)]

> 종교개혁 500 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국 개신교는 지난 120년 동안 온 세계 교회가 주목할 만큼 괄목할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근간 그 성장세가 급격히 저조 되어 마이너스 성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대형교회와 초대형교회가 기형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개체교회 간에 수평이동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개체교회의 균형적 성장이 깨어지고 개교회주의가 만연됨으로 개신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신교회는 부산노회 영도시찰과 일부 몇몇 교회에서 보여준 분립개척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대형교회 및 초대형교회의 출현이 적절하게 자제되어

1)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66회 회의안 및 보고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2016), 101~2.

왔지만 근간 몇몇 교회가 대형 교회화 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바 개체교회의 적정 규모 및 최대 규모에 대한 총회 행정적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현행 헌법 교회정치 '제2장 교회' 에서 개체교회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인 '장년교인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는 내용은 제14조 2항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개체교회의 적정규모 및 최대 규모에 대한 조항은 없으므로 개체교회의 적정규모를 정하여 제시함으로 각 개체교회가 적정규모로 성장하게 되면 분립 개척을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체교회의 최대 규모를 정하여 계도함으로 개체교회의 규모가 노회 규모보다 더 크게 되는 기형을 방지하고 행정질서를 원만하게 세울 수 있도록 총회 차원에서 성경적, 신학적, 목회학적으로 연구하여 개체교회의 적정 규모 및 최대 규모를 제시하여 주시기를 건의하오니 살펴보시고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는 이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신학위원회에 배정하였다. "동부산노회장 박성배 목사가 청원한 '개체교회 적정규모 및 최대 규모에 대한 연구 건의' 의 건은 신학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2)

본고의 주제는 위의 건의에 따른 개체교회의 적정규모와 관련된 것이다. 개체교회의 적정 규모 및 최대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할 것인가에 더하여 교회의 최소규모는 얼마인가를 추가하여 제시하려고 한다. 필자는 먼저 성경의 원리를 찾아보려 한다. 그리한 후에 교회 역사와 개혁신학 그리고 사회학으로부터 대답을 찾아보고, 21세기 한국사회와 교회의 목회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을 하려 한다.

1. 개체교회의 적정규모에 대한 성경의 원리

1) 성경은 개체교회의 적정 규모에 대해 무엇을 말하나?

성경은 개체교회의 적정 규모나 최대 규모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성경이 교회의 규모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세례를 받아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졌다(행 2:41). 얼마 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걷게 한 사건이 있

2)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66회 총회 중요결정사항 요약, 37. 고신총회, http://kosin.org/board_MBKc61/213183. (2016, 10. 24) 2017, 6. 8 접속.

었다. 그 뒤 사도들이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선포하고 가르쳤을 때에 남자만 5천 명이 믿고 교회로 들어왔다(행4:4). 여기에 여자를 포함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1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행2:46, 행5:42).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큰 은혜 안에 영광스런 교회를 이루었다(행4:32-37).

그러나 이런 일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고,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의 다툼이 일어났다. 교회는 위기에 부닥쳤다. 그러나 열두 사도들이 구제를 전담하는 일곱 사람을 세우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함으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반전(反轉)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런 수적(數的)부흥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큰 박해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교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러나 또한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아님도 알 수 있다.

안디옥 교회의 경우를 보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 중 일부가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함으로써 안디옥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 교회를 양육하게 했다.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내어 동역하므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로 발전하였다(행11:19-30).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양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만한 때에 성령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선교사로 보내신다(행13:1이하). 여기서도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의 수적인 성장보다 주 예수의 복음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심을 알게 된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 나타난 교회들을 보면 성전이나 두란노 서원과 같은 큰 장소를 이용하여 모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모임을 갖기도 했다. 로마에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셋에서 다섯 군데 정도 있었다는 로마서 16장을 근거로 한 추측도 있다.[3] 비록 변종길은 다음의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긴 하지만[4] 브레닉, 박응천 그리고

---

3) 에버레트 F. 해리스, 신성수 역, 『사도교회의 역사와 성장』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395~6.
빈센트 브레닉, 홍인규 역,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서울: KCBS, 2005), 102.
조병수, "초기 기독교의 가정 교회 - 자료 분석", Lectio Divina, http://lectio.tistory.com/1077 (2007, 5. 24) 2017, 6. 9 접속.

4) 변종길, "가정교회는 성경적인가?" "고린도전서 14:23의 '온 교회'가 과연 그런 '연합 예배'의 의미인지는 의심스럽다. '온(whole)'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홀로스(ὅλος)'는 '범위에 있어서 전체에 속하는(pertaining to being complete)'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온, 전체의, 완전한(whole, entire, complete)'으로 번역된다. 즉, '부분'에 대해 대비되는 '전체'의 개념이다. 따라서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는 문장에서 '온 교회'는 가정 교회들의 '연합

조병수는 고린도전서 14:23을 근거로 고린도에 가정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고, 때때로 이들이 '온 교회'로 연합하여 모였다고 추측한다.[5)]
주후 50년 경에 기록된 야고보서 2:2에는 '회당'이 언급된다. 이 회당은 유대주의자들의 회당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처소로 볼 수 있다고 변종길은 말한다.[6)] 이상에서 볼 때에 초대 교회의 집회 장소는 교인들의 숫자에 따라, 초기에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의 규모가 커감에 따라 더 큰 장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개체교회의 규모에 대해 성경이 언급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성경은 개체교회의 적정규모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가? 필자는 성경이 가르치는 목사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개체교회의 적정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 개역개정 한글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4:11에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한다. '목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포이멘'(π ο ι μ ή ν)이며, 원 뜻은 '목자'이다. 신약원어성경에 총 18회 나오는 단어인데[7)] 엡4:11 외에는 개역개정에서 모두 '목자'로 번역되었다. 개역개정 구약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는 당연히 전혀 나오지 않는다. 대신에 '라아'(רָעָה)라는 단어가 164회 나오며 이 중 개역개정에 '목자'로 번역된 것이 총 80회 등장한다.

'라아'와 '포이멘'이 목사의 역할에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는 대표적인 부분은 이사야 40:11과 에스겔 34장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1장과 베드로전서 5장이다. 이 성구들을 중심으로 이제 목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에스겔 34장1-6절은 당시 유다의 왕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의 임무 태만과 직무 유기 나아가 지위를 이용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당시 지도자들의 비리를 지적한 에스겔은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들을

모임' 이라기보다도 [한 개체]교회가 전체로, 즉 공적으로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안의 말은 필자가 덧붙임) 옥산개혁교회, http://cafe326.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R8F1&fldid=EXQy&datanum=187&contentval=&docid=R8F1|EXQy|187|20071103094956&q=%B0%A1%C1%A4%B1%B3%C8%B8%20%BC%BA%B0%E6%C0%FB%C0%CE%B0%A1&search=true#, (2007.11.03.) 2017, 6. 12 접속.

5) 브레닉, 앞의 책, 31-4. 박응천, "신약에서 본 목회사역" 『성경과 목회』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4), 44-5. 조병수, 앞의 글.

6) 변종길, "가정교회는 성경적인가?" 옥산개혁교회, http://cafe326.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R8F1&fldid=EXQy&datanum=187&contentval=&docid=R8F1|EXQy|187|20071103094956&q=%B0%A1%C1%A4%B1%B3%C8%B8%20%BC%BA%B0%E6%C0%FB%C0%CE%B0%A1&search=true# (2007, 11. 3) 2017, 6. 9 접속.

7) 개역개정 한글성경에서는 동사형인 '포이마이노'(π ο ι μ α ίν ω)에 '목자'를 집어넣어 번역한 마2:6, 유1:12과 계7:17을 포함해서 총 21회(요10:11에는 두 번; '목자'로 번역된 엡4:11은 제외)가 나온다.

벌하시고, 백성들을 회복시키며 강하게 하실 것을 34:7-16에서 밝히신다. 에스겔 34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연결할 수 있다. 이제 이사야 40장, 에스겔 34장과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21:15-18에서 베드로에게 양을 돌보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5:1-4에서 베드로 사도가 당시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목사의 역할과 연결하여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좋은 꼴, 살진 꼴을 먹인다. (사40:11; 겔34:14; 요10:9, 21:15, 17)

② 양을 품어주며 좋은 우리에 누워있게 한다. (사40:11; 겔34:14-15)

③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불러 쉬게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직무이다.

④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한다. (겔34:16)

⑤ 양무리 중 하나하나를 잘 알고, 세심하게 보살피며 각 양의 필요를 채워주며 돌본다. (사40:11; 겔34:16; 요10:14, 21:16; 벧전5:2)

⑥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한다.(요10:11)

⑦ 양들이 목자의 것이 아니요 목자장 되시는 주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양들을 위해 자신의 이득을 구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버린다. (겔34:6, 8, 11-16; 요10:11, 15, 21:15-17; 벧전5:2)

⑧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된다. (요10:4; 벧전5:3)

⑨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한다. (요10:16)

⑩ 악한 양들을 주의하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 (겔34:17-22)

위에 열거한 목자의 책임을 오늘 목사들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위의 책임 중 특별히 교회의 적정규모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목사는 자신이 맡은 양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알아야 한다.

② 목사는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한다.

③ 목사는 교인들 각각에게 필요한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야 한다.

④ 목사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한다.

이런 목자, 이런 목사가 되려면 양떼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가능해질 것이다. 예수님은 비유를 드실 때에 일백 마리의 양을 돌보는 목자를 말씀하신다. 여기서 '일백 명'의 교인이 교회의 적정규모라고 단정지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목사 외에 장로와 집사가 있고 교회학교 교사도 있다. 목사가 이들과 함께 목회를 할 때에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교인의 수는 일백 명을 훨씬 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팀이 되어 '일백 명'이 훨씬 넘는 교인들을 신실하게 돌볼 때에, 전도를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몇몇 사람들을 추가로 알아가며 돌보는 것은 그리 어려

운 일이 아닐 것이다.

2. 교회 역사가 교회의 적정규모에 대해 주는 교훈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을 추적하면서 오늘 한국교회의 적정규모에 대한 교훈을 찾아보려고 한다. 적정규모와 관련된 자료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역사상 교회의 규모를 알 수 있고 본 주제와 관련된 몇몇 교회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본다.

1) 예루살렘 교회

앞서 본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1만여 명의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부닥친 핍박으로 말미암아 각지로 흩어져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 한 교회의 교인 수는 1백 명을 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가정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야고보서에서 볼 수 있는 '회당'을 예배 장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12장을 근거로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목회자였지만 그는 결코 혼자서 사역을 하지 않았다. 그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랐으며 다른 동역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여 교회를 돌보았다. 이런 그의 모습은 벧전5:1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 기독교가 국교화 된 4세기 이후

역사상 초대형교회의 등장에 대해 스나이더는 이렇게 말한다. "역사를 통틀어 초대형 교회는 특히 4세기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 이래로 번창했다(그리고 쇠퇴했다)." [8](주후 313년) 이러한 사실은 당시에 건축된 초대형 교회당 건물을 통해서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기독교의 국교화(392년)와 함께 교구(敎區)가 형성되고, 지역의 한 교회는 전 주민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초대형 교회가 형성된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대형교회의 형태는 종교개혁 시대까지 이어졌다.

3) 종교개혁기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칼빈의 제네바 교회를 생각해 본다. 나피(Naphy)에 의하면 1530년대의 제네바 인구를 약 10,000 명으로, 피난민들을 포함하

8) 하워드 스나이더, 최형근 역, 『교회 DNA』 (서울: IVP, 2006), 90.

면 약 17,000 명으로 추산한다.[9] 당시 제네바 시에 세 교회당이 있었고 여기에 여덟 명의 설교자가 있었고 열 명의 교구목사가 있었다.[10] 대략 목사 1인당 약 1천명의 교인들을 돌보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시는 중세의 제도가 남아있어 교구를 중심으로 한 교회조직이 유지되고 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사가 돌보아야 할 인원이 상당히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1만 명 이상의 교인을 돌보는 제네바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목회와 제네바 시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대부분의 책임을 지며 목회를 했다.

개혁자 칼빈의 경우를 볼 때에, 목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서 해야 할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회의 적정규모의 원칙을 모든 목사나 교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이 말하는 '목자' 의 자세를 목회자는 신실하게 견지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때에 목회 대상 인원에 있어 예외를 허락할 수 있다고 하겠다.

4) 종교개혁기 이후

칼빈의 제네바 사역 이후 약 100년이 지난 영국교회의 형편을 리차드 백스터 청교도 목사의 경우를 들어 본다. 그의 책, 『참된 목자』(1656)의 서론에서 J.I. 패커는 백스터가 목회했던 키더민스터 시의 형편을 "800 여의 가호와 2,000여 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고 소개한다.[11] 그리고 백스터는 그 책에서 "우리들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일에 전념하여 일주일에 십오륙 가구를 심방하며 교구를 돌아다녀 일 년이면 팔백여 가구를 심방합니다."[12]라고 했다. '우리들' 이라고 한 것을 볼 때에 몇 명의 사역자가 함께 2,000여 명의 교구 사람들을 돌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벡스터를 중심으로 몇 사역자들이 팀으로 한 목회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이 이루어졌다.

낭트칙령(1598)을 통해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프랑스에서 유그노 건축가(Jacques Perret)는 1601년에 발간된 그의 책에서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개신교회당의 청사진을 제시했다.[13] 그의 생각은 현실화 되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가 구상했던

---

9) William G. Naphy, Calvin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Genevan Reformati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21. 당시 바젤은 9,000-10,000, 츄리히는 5,000-8,000, 베른이 약 5,000 명 인구로 추산한다.
Foster는 그의 앞의 책, 401면에서 1536년경의 제네바 인구를 13,000 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0) 김재성, 『Happy Birthday 칼빈』 (경기도 용인: 킹덤북스, 2012), 86.

11) 리차드 백스터, 지상우 역, 『참된 목자』 (경기도 고양시: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1), 24.

12) 백스터, 앞의 책, 49.

13) David E. Eagle, "Historicizing the Megachurch" Journal of social History (2015), 4.

1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회형태가 어떤 모습일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유그노로서 칼빈의 개혁신학의 영향을 받았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1만 명이 모이는 교회당을 구상했다는 것 자체는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에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중세 동안 국가교회로서 교구제(parish system)를 지니고 있던 서구의 교회는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조직적인 측면에서 하나 됨이 붕괴되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혁교회가 분리되었고, 다양한 신학에 따라 개신교회도 분열되어 교구와 상관없는 이합집산이 이루어졌다. 영국에서는 국교회와 청교도들의 장로회파와 회중교회파로, 독일에서는 루터파와 경건주의를 따르는 교회로, 네델란드에서는 개혁교회와 알미니안 교회로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개신교회는 교구와 상관없이 다양한 규모의 교회들로 나뉘어졌다.

5) 18세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조지 휫필드(1714-1770)는 대설교가로서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소를 두 개나 런던에 건축한다.[14] 약 100년 후인 1861년 대설교가 스펄전은 6천 명을 수용하는 Metropolitan Tabernacle을 완공한다. 이런 대교회 현상은 미국으로 이어져 찰스 피니, 헨리 워드 비처가 설교하는 교회들로 이어졌다.[15]

미국에서는 20세기 중반기이후 J. Frank Norris, Dr. G. B. Vick, Billy Sunday 그리고 Billy Graham과 같은 부흥사들의 출현과 교회성장학자들의 이론에 근거해서 많은 대형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한다.[16] 이런 현상은 20세기 후반에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 대형교회들이 세워졌다. 세계의 50개의 대교회 중 한국의 교회가 23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17]

한국에서 대형교회 추세는 2천년도를 전후해서 담임세습, 목사의 성추문 또는 재정비리와 더불어 여가활동의 확대와 저출산, 진학과 취업의 문제로 인한 신앙생활에 대한 무관심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18] 미국이나 한국의 대형교회의 형성과정을

---

14) Eagle, 앞의 책, 6.
15) 스나이더, 앞의 책, 90.
16) 2013년 기준으로 1만 명 이상 모이는 미국 교회는 46개, 6천 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100개로 Outreach Magazine은 파악하고 있다. http://www.outreachmagazine.com/2013-outreach-100-largest-churches-america-page-2.html, 2017, 6. 12 접속.
17) 대구동신교회, "세계의 50대 교회" http://ds-ch.org/sub06_/50202 (2009, 7. 15), 2017, 6. 12 접속.
18) 손인웅, "한국교회의 미래", 뉴스파워,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25587 (2014, 9. 12) 2017, 6. 12 접속.

보면 결국 목회자의 역량과 사회의 문화적 환경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19]

교회 역사에는 지속적으로 대형교회들이 존재해왔다. 대형교회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것이다. 스나이더는 "코끼리와 공룡은 인상적인 동물이지만, 특정한 환경에서만 번창한다." 는 말로서 대형교회가 성경이 제시하는 모범을 보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특정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20] 예외적인 현상으로 치부한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기독교역사를 살펴보며 갖게 되는 예감은, 아마도 교회의 최적의 크기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100명 내지는 200명 정도일 것" 이라고 제시한다.[21] 스나이더는 지역 교회 공동체라면 '서로' 에 대해 알고 돌보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함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힌다.[22]

3. 교회의 적정규모와 관련하여 사회학에서 얻는 지혜

교회의 적정규모를 생각할 때에 사회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사회학이 교회의 적정규모를 규정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적정규모에 대해 사회학적인 설명은 본 주제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1) 오규훈의 『153 교회』

오규훈은 "교회의 대형화에 대한 우려와 반성, 그리고 대안" 이라는 부제를 붙여 『153 교회』 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23] 그는 이 책에서 교회의 적정규모를 총 153명으로 단정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하셨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 것은 한 개체교회가 포용할 수 있는 최대 규모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한 목사가 150쌍의 부부를 목회해도 공동체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이 되면 목회자를 추가로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부부와 자녀를 모두 포함해서 공동체의 규모가 150명을 넘지 않을 때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24]

오규훈이 개체교회의 적정규모로 요21:11에 나오는 숫자 153을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황당' 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153' 이라는 숫자에 집착하

19) 찰스 스윈돌, 유정희 역, 『교회의 각성』 (서울: 두란노, 2012), 99-108.
20) 스나이더, 앞의 책, 91.
21) 스나이더, 앞의 책, 93.
22) 스나이더, 앞의 책, 94.
23) 오규훈, 『153 교회』 (서울: 포이에마, 2013).
24) 오규훈, 앞의 책 70.

는 것은 아님을 밝히면서 150명 내외의 사람이 공동체를 이룸이 적당함을 강조한다. 그는 "...사람이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치가 150명이라는, 이른 바 '던바[교수]의 수' 를 발표했다. 150명이 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사회관계의 '질' 이다." 25)

오규훈은 사회학적인 근거를 몇 가지 추가로 든다. 원시부족 사회에서 씨족(clan)의 규모가 약 150명 정도라든가, "수렵시대와 농경시대의 출산율에 근거하여 한 쌍의 부부가... 4대에 이르렀을 때 가족 구성원을 모두 합한 숫자"가 150이라든가. "이는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본인의 경험을 통해 기억할 수 있는 최대 인원에 해당한다."고도 말한다. 그는 "150명 미만의 집단에서는 사람들 간의 교류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뤄지지만, 150명을 넘어서면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우두머리도 필요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필요"하게 되므로 교회의 적정규모는 150명 정도라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도 "신기하게도 한 개인이 알고 지내는 사람 수의 평균이 135명으로 나타났"고, "사람들이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최대 150명 정도라는 기존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밝힌다.26)

2) 교회성장학자 윈 안(Win Arn)

이런 주장은 교회성장학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 윈 안은 "예배를 드리는데 한 교회에 교인 150명 당 전임교역자가 한 사람의 비율로 있어야 한다."면서 교역자 비율 1:150을 제시한다. 그는 교회성장학자답게 교인 수가 150-200명일 경우 파트타임 교역자를 1인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리고 교인이 200-300명일 경우 전임교역자가 2명 있어야 하고 그런 비율을 교인 수에 따라 유지해야 한다고 권장한다. 이를 도표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27)

예배에 참석하는 평균인원	전임 교역자 인원	파트타임 교역자 인원
0-150	1	0
150-200	1	1
200-300	2	0

25) 오규훈, 앞의 책, 56.
26) 오규훈, 앞의 책, 56~9.
27) 윈 안, "교회성장에 관련된 제 변수들" C.P. 와그너, 『교회성장학 개론』 (서울: 나단, 1992), 110~1.

300-400	2	1
400-500	3	0
500-600	3	1

3) 맥킨토시

맥킨토시[28]는 교회의 규모에 따라 목회 방식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는 교회를 소형교회(15~200명의 예배자), 중형교회(201~400명), 대형교회(401명 이상)로 구분하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목회를 할 것을 권고한다. 소형교회는 관계중심의 특성을 지녀야 하고, 담임목사는 사랑의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중형교회는 행정가인 목사가 소수의 부교역자와 더불어 프로그램 중심으로 목회를 하게 되며, 대형교회는 다수의 사역자들을 이끄는 지도자(리더)로서 담임목사는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경우 소형교회는 300명까지, 중형교회는 300~1,000명, 대형교회는 1천명 이상으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형교회가 되면서부터 담임목사는 목자라고 하기 보다는 행정가요 CEO(최고경영자)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형교회의 담임목사는 목자(牧者 shepherd)라고 하기 보다는 여러 명의 목자를 거느린 목장주(牧場主 rancher)의 모습을 갖추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즉 교인들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줄어들고, 행정가나 조직의 리더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4) 대형교회의 한계

대형교회를 사회학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 또는 부작용을 볼 수 있다. 조직 유지를 위한 인건비가 대폭증가하게 된다. 나아가 시설 유지의 경비 또한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가난한 교인들은 힘써 헌금한다 해도 이런 현실에 대해 실망감을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대형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출석하기 힘든, 교회의 속성 중 하나인 보편성을 상실한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대형교회의 질 높은 프로그램과 소그룹을 통해서 교인들 중 신앙의 내면화와 성숙과 실천에 유익을 얻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대형교회는 명목상의 교인이 증가하며, 헌신은 없는 '선데이 크리스찬' 같은 주일예배만 참석하는 구경꾼(spectator)들이 늘어나기도 쉽다. 한 교회라고는 하지만 서로를 잘 모르는 사람이 더

28) 게리 맥킨토시, 남예리 역, 『교회가 다르면 목회가 다르다』 (서울: 권서인, 2010), 113.

많게 됨에 따라 공동체성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 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상은 투표자 2/3의 찬성을 요구하는 장로선출이 매우 어렵다는 데서 쉽게 볼 수 있다. 대형교회에서 일반 교인이 담임목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평생 동안 기회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개체교회의 최대 규모를 벗어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실적주의 결과주의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피로사회', 자신의 마음을 나눌 대상이 없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유치원아로부터 노인들까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한 시대에 주님의 교회마저도 유기체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조직체의 모습만을 드러낸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가까이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이 '가나안 교인'을 증가시키는 원인이중 하나라고 하겠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로서 친밀한 사귐이 목사와 교인, 교인과 교인 사이에 풍성히 나타나야 한다. 그런 성도의 교통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적정규모의 교회라고 할 수 있다.

4. 교회의 적정규모와 연관하여 21세기 한국사회와 교회의 목회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제안

1) 필자가 제안하는 적정규모와 최대규모

개체교회의 적정규모를 말할 때에 사회학에서 발견한 사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나 사40:11; 겔34:16; 요10:14, 21:16; 벧전5:2에서 명하는 대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되기 위한 최대의 목회 인원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사회학의 원리를 참고하는 것은 합당하다. 따라서 목사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고, 세심하게 보살피며 각 교인의 필요를 채워주며 돌보기 위해 150명을 적정규모로 보는 것은 지침으로 삼을 만한 숫자라고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목회는 담임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승천하시는 주님은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장로들과 집사를 두셔서 그의 양무리를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교회에는 교회학교의 교사들도 있다.

고신교회 교회정치 제10장 제113조는 다음과 같다. "당회를 조직하는 요건은 세례교인 30명 이상과 장로의 자격자가 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촌교회(면 소재지는 제외)는 세례교인(입교인) 20명 이상을 요한다."[29] 교인들을 돌볼 수 있는 신앙인격과 성령께서 주시는 장로직에 합당한 은사를 갖춘 사람들이 많을 때에 개체교회의 적정규

29)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2011), 293~4.

모는 150명을 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한 명의 장로가 돌볼 최소 세례교인이 30명이라고 할 때에 그들 가운데에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다수 포함될 것이고, 이에 따라 어린이를 포함한 개체교회의 적정규모는 출석교인 약 300명 최대규모 약 500명 정도가 될 수 있다.

졸저 교회문턱에서 필자는 성장하는 교회가 분립개척할 시기를 아래와 같이 서술했다.[30]

대형교회도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인 모두가 서로 잘 알고, 한 담임목사가 교인 전체를 알고 돌보며 양육할 수 있는 규모의 공동체적인 교회가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런 교회의 규모는 성인 약 200명에 그들의 자녀 250명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공동체성을 살리기를 원하는 교회는, 성인 교인의 수가 250명 정도에 도달하면 그 중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나가서 새로운 분립교회를 세우겠다는 내규 또는 정관을 세워야 한다. 이미 25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는 기도하며 논의하는 가운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분립할 것인지 논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2) 교회의 최소 규모

교회의 최소 규모에 대해서 앞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지만, 여기서 간략히 생각해 본다. 교회의 최소규모는 아마도 마태복음 18:20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시작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개체교회 설립에 필요한 교인들의 수는 장년교인(원입, 학습, 세례) 2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다.[31] 그 이하의 사람들이 모일 때에 헌법은 ‘기도소’로 부른다.[32] 그리고 목사 1인, 장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당회에 의해 치리되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한다.[33] 세례교인 30명(농어촌교회 경우 20명) 당 장로 1인을 선출한다고 할 때에 조직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례교인 60명(농어촌교회 40명)이 있어야 한다. 이를 요약하자면 교회는 두세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최소 20명의 장년교인이 있어야 ‘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나아가 조직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례교인 최소 60명과 장로 2인이 있어야 한다.

두세 사람이 모임으로써 시작된 기도소(개척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받고,

30) 현유광, 『교회문턱』 (서울: 생명의 양식, 2016), 315.
31)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헌법』, 259.
32) 앞의 책, 261.
33) 앞의 책, 258.

나아가 '조직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척을 시작하는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일 것이다. 확신에 더하여 이 소명을 이룸에 필요한 신학과 열정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들이 개척을 하는 목사에게 있을 때에 교회는 조직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목사와 가족들과 교회를 위해 영육 간에 후원이 있을 때에 교회는 보다 더 힘차게 자라갈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아래와 같다.

① 가장 효과적인 개척의 방법은 분립개척이다. 따라서 교인 약 25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적극적으로 분립 교회개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34]

② 분립에 의해 개척이 되지 않고, 목사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개척이 시작된 교회도 있다. 이런 교회는 상황이 매우 나쁠 수도 있다. 이런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개척에 소명을 가진 목사는 개척에 나서기 전에 그 지역의 노회의 동의를 얻고, 노회의 조언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노회의 동의 없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도록 총회나 노회가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노회는, 개척교회와 노회 내의 유력한 교회(들)와 연계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힘 있는 교회들을 비롯한 노회의 모든 교회들이 개척교회를 지속적으로 도울 길을 찾아 협력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이다. 따라서 노회를 중심으로 서로에 대한 지체의식을 강화하고 서로가 돕고 협력해야 한다. 유력한 교회들 중 하나의 담임목사가 개척교회의 목사를 멘토링 하도록 관계를 맺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④ 협력의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는 재정적으로 개척교회의 목사의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후원하는 것이다. 노회는 매년 개척교회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의 생활비를 후원해야 한다. 그리할 때에 그 교회는 문을 닫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모색해 나아갈 수 있다. 유력한 교회들이 해외선교나 국내 개척교회를 돕는다고 하면서 노회 안에 있는 힘든 교회를 돕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책망 받을 일이다.

⑤ 재정후원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후원하는 교회가 교인들을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개척교회에 파송해서 동역하게 하는 것이다. 단기 해외선교에 참여하는 식으로 국내

---

34) 동네작은교회의 김종일 목사는 2007년 교회를 개척한 이후 20~30명이 모이면 분립개척을 시도했다. 2015년 11월 현재 다섯 개의 지역교회로 분립했다. 뉴스미션, "[교회탐방] 30명 되면 분립...공동체 키우는 '동네작은교회'" http://newsmission.com/news/news_view.asp?seq=63115 (2015, 11. 2), 2017, 8. 4 접속.

전도인 개척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이다. 개척교회의 주일 예배가 최소 20명 이상 모일 수 있도록 주위의 유력한 교회들이 유능한 교인들을 파송해야 한다. 특별히 반주자,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전도의 은사를 가진 이들을 파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개척에 매우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35]

⑥ 노회 또는 시찰회는 소그룹으로 목회자를 위한 독서모임이나 설교준비모임 그리고 친목모임을 가짐으로써 개척교회 목사를 도울 수 있다.

⑦ 오늘날 한 지역 안에 있는 유력한 교회들이 주변의 소규모의 교회들의 교인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한다. 고신교회는 시찰 내에 있는 교인들의 수평이동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노회/시찰에 속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돕고 섬길 때에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3) 동사(同事)목사의 활용

고신총회의 헌법은 목사의 칭호를 열 가지로 열거한다.[36] 이 중 위임목사와 전임목사만이 성경이 말하는 '목사'(엡4:11)와 가르치는 장로(딤전5:17)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오늘날의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다양한 목사의 정당성은 여기서 논외로 한다. 그런데 개혁신학을 표방하는 고신교회의 헌법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동사목사'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권주의로부터 자유를 얻은 개혁교회는 목사의 동등권을 확립하였다. 허순길은 이렇게 말한다.[37] "이 목사 세계에 계급이 있을 수 없다. 감독이 사제를 지배하는 것처럼, 한 목사가 다른 목사를 지배할 수 없다고 보게 된 것이다. 이런 목사직에 대한 칼빈의 사상이 개혁교회에는 철두철미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수백 년 동안 목사간의 동권을 지켜오게 되었다." 이어서 "...한 교회에 여러 목사가 있을 때에는 목회구역을 나누어 따로 돌보고 설교는 고르게 배정하여 교대로 하며, 교육면에 있어서는 자기 구역 청소년을 맡아 하게 된다."

오늘의 현실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일단 부목사를 한 명 이상 두고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는 부목사를 '동사목사'로 대우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목

35) 인천중앙교회(담임목사 안덕수)는 임직식을 한 후 44명의 새로운 직분자들을 지역의 5개 작은 교회에 파송했다. 한국성결신문, "일꾼 세워 남 주는 교회 '감동'" http://m.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86 (2015, 4. 8), 2017, 8. 4 접속.

36) 앞의 책, 271. 열 가지 칭호는 다음과 같다. 위임목사, 전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 선교사, 무임목사, 은퇴목사, 원로목사.

37) 허순길, 『개혁교회의 목회와 생활』 (서울: 총회출판국, 1994), 41~3.

사’ 의 칭호를 ‘동사목사’ 로 바꾸지 않고 담임목사가 시도할 수 있다. 현재 부목사가 맡고 있는 교구에 대해 그로 하여금 담임목사처럼 사역을 하도록 담임목사가 부목사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지도 할 수 있다. 이때에 관심의 초점은 담임목사나 부목사가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를, 서로 간에 그리고 교인들과 형성해 나가느냐에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목사가 ‘동사목사’ 의 역할을 원활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수행하는 데 따라 분립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사목사’ 의 칭호를 삽입하는 헌법의 개정은 오래 걸릴 수도 또는 혹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의지를 가지고 부목사와 책임을 분담하고 동사목사로 양육하고 격려할 때에 실질적인 개혁주의의 목사의 동등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관계가 바울사도와 디모데의 관계를 지향하며 겸손히 인내하면서 상호 권면해 나아갈 때에 교회 전체가 서로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분립 개척도 현실이 되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오규훈, 『153 교회』의 저자는 한 지역교회의 최대규모는 150명 정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그의 책 후반부에서 조금 충격적인 언급을 한다.[38]

…교회는 성도 수가 150명 내외일 때 공동체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성도 수를 15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본질을 잃지 않고 목회가 가능한 인원을 응용해서 적용하면 약 1,800명 또는 1,800 가정 정도다. 이 정도 숫자라면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숫자는 목회자의 능력이나 교회 구성원의 성숙도, 교회 위치, 교회 전통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800명이라는 숫자는 150명 규모의 공동체를 기본으로 할 때 기본 단위의 공동체가 한 교회 안에 12개까지 가능하다는 가정에서 나온 것이다. 즉 150명으로 구성된 153 공동체가 12개가 될 때의 숫자가 1,800명이다. 또한 나는 담임목회자가 멘토의 위치에서 인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목회 비전을 나누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부교역자 수가 최대 12명이라고 본다. 따라서 153 공동체의 최대 숫자가 12개 이듯 부교역자의 수도 최대 12명을 넘으면 안된다.

오규훈이 150명을 한 지역교회의 최대 규모로 자신의 주장을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그 규모를 1,800명으로 늘인 것은, 부교역자들을 동사목사의 성격으로 이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실제로 화란이나 호주에 있는 개혁교회의 대형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들은 여러 목회자들이 동사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 허

38) 오규훈, 『153 교회』, 190-1.

순길은, “개혁교회에서 3명 혹은 4명의 목사가 한 교회에서 동사목사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 다고 언급한다.[39] 결국은 목사와 교인 사이에 얼마나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느냐가 교회의 규모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라고 하겠다.

교회는 조직체이기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요 유기체이다. 무엇보다도 각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신실하게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례를 거행하며, 권징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돕는 성도의 교통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 할 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임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생수에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하고 교회로 나아올 것이다. 그런 선순환이 일어날 때에 개체교회는 최소 규모에서 출발하여 적정 규모로 그리고 최대 규모로 나아가 또 분립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영광스런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39) 허순길, 『개혁교회의 목회와 생활』, 30.

다음세대의 출석 감소원인 분석과 성장 대안 마련에 대한 연구 보고서

Ⅰ. 서론

2016년 9월 제66회 정기총회에 서부산노회는 “다음세대의 출석 감소원인 분석과 성장 대안 마련 건”으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청년부의 출석감소 원인 및 성장 대안을 총회교육원이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하였고, 이 안건을 총회가 받아들여 총회교육원에 1년간 연구 후 보고하도록 결의하였다.

이에 총회교육원 이사회는 연구위원장으로 고신대학교 조성국 교수를 선임한 후, 연구위원장과 협의하여 공동연구위원으로 고신대학교의 이현철, 조철현 교수, 총회교육원의 박신웅, 이기룡 박사, SFC의 박용성 박사로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본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7년 9월, 제67회 정기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21세기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저출산 기조로, 점차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한국 사회 인구 구성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교회의 위기로 이어지는데, 정부가 2005년 시행했던 인구주택총조사의 종교 부분 발표에서도 기독신자수 감소를 실제로 확인한 바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교회는, 도시교회에서조차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및 대학청년부의 급격한 감소 현상을 경험하면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저출산의 인구학적 추이와 학교 통폐합 등의 보도를 접하고, 인구와 경제 통계를 기반으로 구성된 종교사회학적 예측 자료들을 접하면서,[1] 한국교회도 지난 세기 후반의 서구교회 경험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지방의 소규모 교회들은 그 체감현상이 거세, 지금은 거의 체념 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시적으로는 오래 전부터 예측된 것이다. 근대 이후 신본주의를 대체하여 확립되어 온 인본주의 및 자연주의 세계관이, 현대와 후기 현대에 이르러서는 대세가 되었으므로, 탈종교화가 보편화되었다. 동시에 자본주의에 따른 산업의 변화로, 개인은 물질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를 갖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을 형성하는 학교교육과 취업 요건, 대중문화는, 교회를 선택 부분으로, 신앙을 개인의 기호로 간주하도록 만들었다. 개인주의 및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주요한 특징이 된 초저출산은, 한국사회만 아니라 한국사회 내에 소재하는 한국교회에도 거침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 오

1) 최윤식의『한국교회의 미래지도 2020 2040』1-2권은 이러한 자료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늘날 한국교회가 경험하는 미래 세대 구성원 급감현상의 근저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실제로 한국사회의 세속적 세계관에 있다.

우리 고신총회의 교육전문기관인 총회교육원과 고신대학교는 일찍이 이러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대안모색에 고심하며, 다양한 전략을 실행해오고 있다. 세계관과 한국사회의 특성에서 한국교회 미래세대의 위기문제를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논문들을 이미 발표해오고 있다.[2] 총회교육원은 교육대회에서 한국교회교육기관의 위기 문제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심포지엄을 진행하기도 했다.[3] 2013년에는 연구위원을 구성하여 위기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행한 후 『교단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제6차 교회교육 센서스』를 출간하였고, 2014년에는 『「교단교육발전 제1차 5개년 계획(2009-2015)」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한국교회의 미래세대 위기현상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총회교육정책서(2015-2020): 교단교육발전 제2차 5개년 계획서』를 출간하여 배포한 바 있다. 2015년에는 고신대학교 교수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학회의 공동조사연구로,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침체원인과 대안을 모색하는 전국규모의 조사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4] 아울러 총회교육원은 개교회의 교회교육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 방법으로, 개교회 교육기관의 실제를 합리적으로 진단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부족한 역량을 제고해 줄 수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을 시도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교육원의 연구 자료들과 정책이 개교회 목회자들과 교사들에게 여전히 충분히 전달, 이해되지 못한 데 반해, 교회 다음세대 부서의 위축 충격은 커서, 노회와 총회가 이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회복을 위한 대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더불어 2015년 이후 여론조사기관의 표집조사에서 이따금 개신교인의 수가 근소한 차로 우리나라 종교인구 내에서 1위로 드러나기도 했으나, 2016년 말에 발표된 2015년

---

2) 조성국, "한국사회 포스트모던 시대정신의 특성과 기독교교육전략",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 편, 『칼빈의 교육사상과 현대 기독교교육』, (서울: 총신대학교기독교교육연구소, 2009), 8-24; 조성국, "차세대 복음화를 위한 방향과 전략", 「고신신학」 13, 2011, 67-97.; 조성국, "한국교회 위축현상의 거시적 원인분석과 대응적 교육방안 모색", 「복음과 교육」 11, 2012, 11-34.

3) 총회교육원은 2008년 12월 교육대회에서 장로회신학대학교의 박상진 교수를 초청하여 "교회학교의 위기 진단과 부흥"의 특강을 제공하였고, 2011년 11월 교육대회에서는 "교회교육을 새롭게"라는 주제로 교회교육 위기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심포지엄을 진행하였다.

4) 이 조사연구는 2014년 한국복음주의기독교교육학회 회장 조성국의 제안과 착수기금마련(거제 섬김의 교회)과 연구위원 구성, 그리고 공동학회인 복음주의신학회의 기금마련 지원으로 이루어진 전국 규모의 광범위한 조사연구였고, 복음주의기독교교육학자 5명의 연구위원들 중 본 보고서의 연구위원이기도 한 고신대학교의 이현철, 조철현 교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했다. 조사연구 내용은 다음의 문헌에 있다: 함영주 외, "한국교회학교 침체 원인과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교육의 방향성", 제65차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정기논문발표회, 2015. 4. 25., 27-83.

인구주택총조사의 종교 부분 통계에서는, 개신교인의 수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종교 인구에서 1위에 확실히 올라섰고, 신자 수가 10년 전의 통계에서보다 15%나 증가한, 967만여 명에 이르렀음이 드러났다. 의견이 분분하여 혼란스러우나 이에 대해 추가로 미시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이러한 배경에서 총회가 위임한 과제를 수행한 본 연구위원들은 총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고신총회 산하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더 미시적인 자료들을 새로 정리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교회교육연구에서 발전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통합교단의 자료와 비교해보았으며, 2015년 한국복음주의신학회에서 이루어진 조사 연구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고신교회들에 대한 것을 별도로 추출하여 새롭게 검토하였고, 동시에 우리 고신교회의 경우를 한국교회 전체의 맥락에서 논의하는 방법으로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였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Ⅱ. 고신총회 주일학교 현황 분석 보고

본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한 방식은 총회보고서 및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고신총회 주일학교, 통합총회 주일학교, 학령기 일반학교 학생인구 변화 추이, 출산율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일학교 존재유무에 있어는 총회보고서의 노회시찰보고서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일학교의 존재유무는 주일학교 교사의 배치 유무를 기준점으로 잡았다.[5)]

1. 연구결과

1) 주일학교 학생 수의 변화

(1) 분석결과

고신총회 주일학교의 지난 10년간의 변화추이와 세부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일학교의 인원의 변화추이를 2006년부터 2015년까지로 선정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출발점을 2006년으로 잡은 이유는 2005년부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 휴무를 시작으로, 2006년에서 2011년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을 쉬는 놀토(쉬는 토요일)

5) 이 조사연구는 고신총회 주일학교 학생 수를 기반으로 한국학교의 학생 수의 변화, 타 교단(통합)의 주일학교의 학생 수의 변화에 관한 통계자료를 비교 분석을 하였다. 또한 고신총회 제65회(2015), 제66회(2016) 총회보고서 자료를 기반으로 주일학교 부서의 존재유무를 파악하였다.

가 사회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는 전면 주5일 수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06년도 통계자료를 주일학교 학생 수 변화의 시작점으로 잡았다. 동시에 2015년도를 종착점으로 잡은 이유는 고신총회의 경우 2016년부터는 자연적인 학생 수의 증감이 아니라 고려파 교회와의 통합으로 인해 인위적인 학생 수의 변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로 2006년도와 2015년도를 고신총회 주일학교 학생 수 변화의 기준점으로 잡았다.

통합총회의 경우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주일학교 학생 인원의 변동이 이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동일기간 두 총회의 주일학교 학생 수에 각각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관한 비교 분석도 가능하다.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2006년(56회)	26,597	66,482	37,773	29,096
2007년(57회)	23,205	62,311	38,268	29,293
2008년(58회)	22,117	59,125	37,688	27,134
2009년(59회)	21,611	54,579	37,828	28,524
2010년(60회)	20,755	50,954	37,756	27,483
2011년(61회)	20,213	46,600	36,732	27,381
2012년(62회)	19,883	45,107	36,218	27,003
2013년(63회)	20,234	40,631	35,151	26,636
2014년(64회)	19,850	37,843	32,288	26,243
2015년(65회)	19,040	36,583	30,311	25,779
2006년 대비 2015년 증감비율	−28%	−44%	−19%	−11%

〈표35. 고신총회 주일학교 학생 수 변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2006년(92회)	15,738	22,004	75,568	78,739	89,622	105,463	189,189
2007년(93회)	16,655	23,025	75,136	79,532	85,580	106,015	193,215
2008년(94회)	17,737	23,184	74,751	74,223	83,783	104,897	193,344
2009년(95회)	17,297	22,956	72,184	69,924	80,056	100,520	195,275
2010년(96회)	18,305	24,571	67,378	64,232	74,327	89,900	188,304
2011년(97회)	21,429	24,130	64,731	58,419	69,015	83,266	180,308
2012년(98회)	18,733	23,641	62,251	56,519	64,175	76,090	171,660
2013년(99회)	17,101	21,555	58,293	50,840	59,423	68,175	157,409
2014년(100회)	17,523	23,323	57,649	51,112	57,880	64,637	152,327
2015년(101회)	17,325	22,659	55,435	48,110	55,317	62,358	146,763
2006년 대비 2015년 증감비율	10%	2%	-26%	-38%	-38%	-40%	-22%

〈표36. 통합총회 주일학교 학생 수 변화〉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소계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2006년	545,812	3,925,043	2,075,311	1,775,857	1,281,508	494,349			46,316
2007년	541,550	3,829,998	2,063,159	1,841,374	1,347,363	494,011	0	0	48,136
2008년	537,822	3,672,207	2,038,611	1,906,978	1,419,486	487,492	0	0	46,419
2009년	537,361	3,474,395	2,006,972	1,965,792	1,484,966	480,826	0	0	47,444
2010년	538,587	3,299,094	1,974,798	1,962,356	1,496,227	466,129	0	0	48,047
2011년	564,834	3,132,477	1,910,572	1,943,798	1,425,882	63,727	340,227	113,962	49,657
2012년	613,749	2,951,995	1,849,094	1,920,087	1,381,130	64,468	330,797	143,692	49,863
2013년	658,188	2,784,000	1,804,189	1,893,303	1,356,070	67,099	320,374	149,760	47,704
2014년	652,546	2,728,509	1,717,911	1,839,372	1,314,073	66,928	313,449	144,922	47,778
2015년	682,553	2,714,610	1,585,951	1,788,266	1,278,008	67,529	302,021	140,708	48,547
2016년	704,138	2,672,843	1,457,490	1,752,457	1,256,108	67,607	290,632	138,110	48,856
2006년 대비 2016년 증감비율	29%	-31%	-29%	-1%					

〈표37. 일반학교 학생 수 변화〉

(단위 : 천명, %, 인구 1천 명당 명, 가임여자 1명당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출생아수		435.0	448.2	493.2	465.9	444.8	470.2	471.3	484.6	436.5	435.4	438.7
전년 대비	증감	-37.7	13.1	45.0	-27.3	-21.0	25.3	1.1	13.3	-48.1	-1.0	3.3
	증감률	-8.0	3.0	10.0	-5.5	-4.5	5.7	0.2	2.8	-9.9	-0.2	0.8
조출생률		8.9	9.2	10.0	9.4	9.0	9.4	9.4	9.6	8.6	8.6	8.6
합계출산율		1.076	1.123	1.250	1.192	1.149	1.226	1.244	1.297	1.187	1.205	1.24
전년 대비	증감	-0.078	0.047	0.127	-0.058	-0.043	0.077	0.018	0.053	-0.110	0.018	0.03
	증감률	-6.8	4.4	11.3	-4.6	-3.6	6.7	1.5	4.3	-8.5	1.5	2.9

〈표38.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2005-2015〉

① 유아유치부 학생 수의 변화

2006년도와 비교하여 2015년 고신총회 유아유치부 학생인원은 28% 감소하였다. 동일기간 통합총회의 주일학교 부서별 학생인원 변동을 살펴보면 영아부의 경우 10%, 유아부의 경우 3%가 증가한 반면 유치부의 경우 고신총회와 비슷한 26%가 감소하였다. 이 기간 일반 유치원 학생 수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 오히려 28%가 증가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는 이 기간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2012년부터 시행된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3-4세까지 확대되어 유치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출생아 수에 있어 2005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3%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유치부의 경우 고신총회는 일반 유치원 학생 수의 변화보다 큰 폭의 감소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출생아 수와 비교하였을 때도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합총회의 경우 영아부 및 유아부는 소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유치부의 경우에는 고신총회와 비슷한 폭으로 줄어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감소의 요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놀토의 시행과 함께 주5일제로 인한 여가 시간을 가족 간 주말모임과 여행 등을 가지면서, 함께 동반할 수 밖에 없는 유아, 유치부의 어린이들도 주일에 참여가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② 유초등부 학생 수의 변화

2006년도와 비교하여 2015년 고신총회 유초등부 학생인원 수는 44% 감소하였다. 동일기간 통합총회의 주일학교 부서별 학생인원 수의 변동을 살펴보면 유년부(1-2학년)의 경우 38% 감소, 초등부(3-4학년) 38% 감소, 소년부(5-6학년) 40%가 감소되었다. 그리고 이 기간 일반 초등학생 수는 31%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유초등부의 경우 고신총회는 통합총회와 비교하였을 때도 비슷하게 학생 수가 감소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초등학생 수의 변동보다 10% 이상 더 많이 감소(−13%)했다. 이러한 감소의 추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놀토의 시행으로, 지속적인 전도의 장이었던 학교 앞 전도가 사라지고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후 이러한 유초등부의 학생 수는 자연적인 감소 외에도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③ 중고등부 학생 수의 변화

2007년도와 비교하여 2015년 고신총회 중고등부 학생인원은 19% 감소하였다. 동일기간 통합총회의 주일학교 부서별 학생인원 변동을 살펴보면 중고등부의 경우 고신총회와 비슷하게 22% 감소하였다. 이 기간 일반 중, 고등학교 학생인원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29% 감소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 1%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고등부의 경우 고신총회는 중학생의 경우 일반학교의 학생 수 감소보다 조금 나은 상태에 있지만 고등부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감소(−18%) 상태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의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는 하나 상위학교로 진학할수록 주일학교의 학생 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고신총회와 더불어 통합총회에도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에 박상진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는 오늘날 한국의 교회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은 상당 부분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기인하고 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6)]

2) 주일학교 부서 존재 유무

(1) 분석결과

고신총회의 주일학교 존재 유무에 관한 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주일학교 존재 유무는 총회보고서 안의 시찰보고서를 중심으로 65회기, 66회기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주일학교 존재유무에 관해서는 학생이 기준이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의 존재 유무로 판단하였다.

---

6) 박상진, “다음세대 교회교육의 현황의 진단과 미래전망”, 「목회와 신학」, 318호, 74.

노회	전체 교회 수				교회대비 부서비율		
(41개)	총 교회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대	유아유치	초등부	중고대
경인	34	22	24	22	65%	71%	65%
거창	49	20	26	23	41%	53%	47%
경기	36	20	26	25	56%	72%	69%
경남	27	21	23	22	78%	85%	81%
경남남부	82	47	52	49	57%	63%	60%
경남중부	55	21	29	34	38%	53%	62%
경동	63	42	44	39	67%	70%	62%
경북	42	27	34	32	64%	81%	76%
경서	81	44	62	52	54%	77%	64%
경안	39	11	15	17	28%	38%	44%
김해	82	56	63	63	68%	77%	77%
남노회	12	10	10	8	83%	83%	67%
남마산	34	17	21	20	50%	62%	59%
남부산	60	41	46	44	68%	77%	73%
남서울	29	22	25	23	76%	86%	79%
대구	61	38	46	44	62%	75%	72%
동대구	41	19	24	25	46%	59%	61%
동부산	51	40	44	42	78%	86%	82%
동서울	31	17	19	20	55%	61%	65%
마산	74	33	48	42	45%	65%	57%
부산	77	64	70	68	83%	91%	88%
북부산	21	14	19	17	67%	90%	81%
서경	88	47	57	54	53%	65%	61%
서부산	65	49	52	49	75%	80%	75%
서울	32	25	29	24	78%	91%	75%
서울남	43	29	33	27	67%	77%	63%
수도	32	19	23	21	59%	72%	66%
수도남	44	27	33	31	61%	75%	70%
영남	25	12	15	7	48%	60%	28%
울산	31	27	28	28	87%	90%	90%
울산남	51	32	42	36	63%	82%	71%
전남동부	31	19	23	20	61%	74%	65%
전라	55	33	38	36	60%	69%	65%
전북	26	15	18	15	58%	69%	58%
제주	15	11	12	11	73%	80%	73%
중부	60	29	38	28	48%	63%	47%
중부산	49	34	40	40	69%	82%	82%
진주	148	68	97	91	46%	66%	61%
진해	20	15	17	17	75%	85%	85%
충청	86	53	70	62	62%	81%	72%
호남	15	10	9	7	67%	60%	47%
총합	1997	1200	1444	1335	60%	72%	67%

〈표5, 교회학교 부서별 존재 유무 자료(66회기_2016년 3월 보고서)〉

노회	전체 교회 수				교회대비 부서비율		
(36개)	총 교회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대	유아유치	초등부	중고대
경인	45	23	31	32	51%	69%	71%
거창	49	21	26	22	43%	53%	45%
경기	34	21	26	21	62%	76%	62%
경남	66	47	57	54	71%	86%	82%
경남남부	79	44	54	48	56%	68%	61%
경남중부	54	22	30	32	41%	56%	59%
경동	62	41	45	41	66%	73%	66%
경북	41	28	30	32	68%	73%	78%
경서	60	32	39	35	53%	65%	58%
경안	39	12	16	14	31%	41%	36%
김해	72	43	51	48	60%	71%	67%
남마산	35	19	24	23	54%	69%	66%
남부산	54	39	41	42	72%	76%	78%
남서울	28	21	19	20	75%	68%	71%
대구	61	39	44	42	64%	72%	69%
동대구	39	30	35	34	77%	90%	87%
동부산	48	39	44	45	81%	92%	94%
동서울	48	28	30	31	58%	63%	65%
마산	68	46	55	49	68%	81%	72%
부산	75	66	69	67	88%	92%	89%
북부산	22	10	18	16	45%	82%	73%
서경	87	53	61	55	61%	70%	63%
서부산	63	47	51	49	75%	81%	78%
서울	24	20	23	20	83%	96%	83%
수도	35	20	23	22	57%	66%	63%
수도남	47	21	23	24	45%	49%	51%
울산	31	29	30	30	94%	97%	97%
울산남	50	32	41	36	64%	82%	72%
전남동부	30	21	23	21	70%	77%	70%
전라	55	33	38	34	60%	69%	62%
전북	26	15	18	14	58%	69%	54%
제주	16	12	15	12	75%	94%	75%
중부산	49	40	45	41	82%	92%	84%
진주	103	50	70	61	49%	68%	59%
진해	20	16	17	17	80%	85%	85%
충청	82	53	68	61	65%	83%	74%
총합	1797	1133	1330	1245	63%	74%	69%

〈표6, 교회학교 부서별 존재 유무 자료(65회기_2015년 3월 보고서)〉

위 자료에 의하면 고신총회의 경우 평균적으로 유아유치부는 62%, 유초등부는 73%, 중고대학부는 68% 주일학교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 65회기와 66회기의 자

료를 대조해 본 결과, 1년 동안 주일학교 부서의 감소 비율이 증가(부서를 유지하는 교회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유치부의 경우에는 3%, 유초등부의 경우에는 2%, 중고대학부의 경우에는 2% 감소되었다.

Ⅲ. 고신총회 주일학교 쇠퇴원인분석 보고:

교사, 교역자, 담임목사, 학부모, 청소년을 중심으로

1. 연구방법

이번 장의 보고서는 2015년 4월 25일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정기논문발표회에(서 본 보고서의 연구위원들도 참여하여) 발표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였다.[8] 이 연구는 합동, 통합, 고신, 감리, 성결, 침례, 순복음, 백석 등 총 9개의 교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얻은 연구결과였다. 그 연구는 한국교회교육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방식을 선택하였다. 교회교육의 다섯 주체들인 담임목사, 부교역자, 교사, 학부모, 청소년을 선정하여 설문을(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위 조사 연구의 전국 단위 표본들 중 교사 영역과 학생 영역은 고신교단의 자료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고, 담임목사, 부교역자, 학부모 연구결과는 고신교단 자료가 포함된 전국 단위의 자료를 해석하였다. 고신교단의 적은 표본 수 때문에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표본을 따로 추출하여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각 교단의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역량평균값을 비교한 도표를 볼 때, 고신교단의 표본 평균값과 전체 표본의 것이 거의 유사하였으므로 전체표본의 결과를 고신교단의 결과로 의미 있게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설문지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각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문헌연구를 토대로 연구의 취지인 교회교육의 현상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에 적합한 설문지를 직접 제작하였다.

---

7) 이 기간 통합총회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전체 8,300여 개의 교회 가운데 5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졌다고 보고되었다.

8) 본 연구결과 부분의 교역자, 담임목사 연구결과를 비롯한 마지막부분의 정책모형은 2015년 4월 25일 복음주의신학회에 발표한 내용을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

담임목사용 설문지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본적인 정보와 교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부교역자용 설문지는 총 6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 영역으로는 소명, 헌신도, 영성, 인성, 신학교리 이해, 학생 이해, 교수-학습 능력, 리더십 기술 능력, 부서 분위기, 사역 만족도, 학교 연계, 가정 연계 등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학교 교사용 설문지는 총 6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 영역으로는 소명, 헌신도, 영성, 인성, 신학교리 이해, 학생 이해, 교수-학습 능력, 리더십 기술, 부서 분위기, 사역 만족도, 가정 연계 등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학부모용 설문지는 총 35문항이며 하위 영역으로는 교회교육 관심도, 가정 신앙교육 실행, 교회교육 만족도, 신앙교육 가치, 교회의 협력, 성경적 양육 등 6개가 있다. 청소년용 설문지는 총 79문항이며 하위영역으로는 교사 수업 능력, 수업 참여 능력, 수업 만족, 목회자와의 관계, 설교 이해, 부서활동 참여, 자아 개념,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삶의 만족도, 학업 스트레스, 교육내용 적용 등 13개로 구성되어 있다.

2) 연구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채택한 교회교육의 여섯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개인정보 영역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본적으로 각 영역에 대하여 그룹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각 영역에 구조방정식(SEM)을 활용하여 모형을 도출하였다. 교회학교 내 주요 구성원들(청소년, 교회학교 교사, 학부모)의 인식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IBM SPSS 19.0,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각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IBM SPSS 19.0을 통해 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를 통해서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정규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 모형에 투입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교회학교 내 다양한 변수들의 종합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였으며, 표본의 크기를 고려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분석하였다.

2.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안 제시[9)]

9) 본 절에서는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 분석에 의해 도출된 대안을 중심으로만 기술하였으며, 통계 및 세부 분석결과를 삽입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통계 및 세부 분석결과는 총회교육원의 자료집을 참고바란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포스트모던 문화의 전략적 침투 속에서 한국기독교가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교회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다. 고용수가 지적한 대로 그동안 한국 교회교육은 심각한 분리현상을 보여 왔다.[10] 그래서 목회와 교육의 분리, 삶과 앎의 분리, 공동체적 신앙으로부터의 분리 등 다양한 분리현상으로 인해 교회교육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장애물로 작용했다. 따라서 이러한 분리의 현상을 극복하고 위기의 한국 교회교육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교육에 있어서의 개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회교육을 담당하는 내부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교회교육의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교육에 대한 실태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래방향성에 대해 제언을 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교회교육의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향후 10년을 바라보며 한국 교회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1) 담임목사의 의식 변화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하그로브 교수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역량 중 하나로 '변화' 를 언급하며 불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변화는 불확실한 기업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리더는 파괴적인 혁신적 열린 자세로 현재 자신의 조직이 가진 역량과 전략들을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며 재수립해야 한다. 비록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변화와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의 전략이 내일의 전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CEO 중에 겨우 3%만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나머지 97%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그동안 자신의 조직을 위해 투자한 매몰비용(sunk cost) 때문에 기존의 전략과 방향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은 현실에 안주하다가 결국 역사의 수많은 사례들처럼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다.

교회학교 전략도 마찬가지이다. 매년 교회학교가 상당히 빠른 비율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미디어와 세속문화가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교회학교의 구조는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담임목사는 교회교육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가진 목회철학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자기반성도 없다. 그러나 자신의 목회철학에 대한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열린 자세가 없다면 교회학교의 성장시스템도 곧 멈추고 말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담임목사는 교회학교의 쇠퇴 원인 중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자신들의 '목회철학' 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다음세대에 신앙적 영향력을 끼치는

10) 고용수, 『하나님 나라와 교육목회』, 17.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이 바로 '담임목사' 자신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담임목사들이 교회학교 쇠퇴의 결정적 요인으로 자신의 목회철학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실제적인 변화는 그다지 추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교육부서에 투입해야 할 비용을 매몰 비용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담임목사들은 목회와 교육을 분리한다. 그래서 역량과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교육비는 겨우 5% 이내의 투자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교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다음세대에 대한 양육은 소위 부서의 '부교역자' 에게 맡기고 '양적으로 성장했는가?' 하는 물량적 성공에만 관심을 갖는다. 부교역자를 전문성을 갖춘 팀사역의 동역자로 생각하기보다 단순히 담임목사의 목회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조력자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교육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시행하기보다는 장년 중심의 목회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 그러나 이러한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교회학교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 불가능한 미래를 꿈꾸며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목회철학에 대한 혁신적인 열린 자세가 없다면 교회교육의 쇄신과 성장은 요원한 일이다.

불가능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지향적인 목회철학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신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목회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프락시스(실천)적 교육목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목회자 스스로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How question보다는 Why question을 통해 교회학교 교육을 왜 해야 하는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야 프로그램이 아닌 본질로 승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강한 교육목회 철학을 가진 목회자와 교회의 사례분석을 통해 일종의 모델링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통전적인 목회철학을 수립할 수 있는 컨설팅 및 코칭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왜냐하면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 변하지 않으면 교육시스템도, 교육의 가치도, 그리고 교회 내의 인적자원들도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교육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교육의 혁신은 역발상에서부터 시작한다. 즉 지금의 교회교육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어 새로운 프레임을 구성하고 이전에 행하던 모든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에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교육의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교육의 혁신은 거꾸로 가는 신앙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특히 지금의 교육내용,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방법은 대부분 미래지향적이 아닌 과거 지향적이다. 그래서 과거에 하던 교육내용, 과거에 하던 교육방법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 멈추어 서서 가던 발길을 돌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교회교육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

현재 교회교육시스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공부 시간의 절대적 부족이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10-20분 정도의 공과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1주일에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예배를 다 포함해도 1시간에 불과하다. 이러한 신앙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거꾸로 가야 한다. 일부 소형, 중형, 대형 교회들 중에 이러한 교회 내에서의 신앙교육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one point lesson'을 실행하여 성경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 더불어 '10-2시 신앙교육 시스템(10시에 만나서 2시까지 신앙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즉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함께 하고 충분한 시간을 활용하여 한 가지 주제로 삶을 나누는 성경공부를 통해 신앙의 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 따라서 예배 시간과 관련된 교육 시스템을 확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주일에 이루어지는 장년부 예배 시간의 조정도 더불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교육과정상의 문제는 공과의 내용이 아이들의 현실의 삶을 자극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역자나 교사들의 설문을 보면 가장 부족한 역량이 가정 및 학교와의 연계 능력으로 나왔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내용은 배우지만 그것이 아이들의 삶으로 연계되는 내용은 공과 자체 내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도 않으며 교사들도 실제 어떻게 응용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실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성경-문화 연계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성경을 현대적인 상황에 맞게 가르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도 거꾸로 가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과교수 방법은 '강의식' 방법이다.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아이들을 앉혀 놓고 일방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경직된 구조에서는 인지적인 자극은 물론 정적인, 행동적인 자극도 주지 못한다. 따라서 학습자 참여적인 공과 교수 방법을 시급히 들여와야 하며 교사교육을 통해 다양한 현대적 교육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성경공부를 가정과 연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꾸로 학습법(flipped learning)'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가정에 성경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회에서는 심도 있는 대화와 적용으로 학생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며 다시 가정과 학교로 적용하는 구조의 교육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핵심은 간단하다. 거꾸로 가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의 과정과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거꾸로 가야 한다. 지금하고 있는 것에 익숙함을 느끼고 변화를 두려워하여 그대로 가다가는 모두 자멸할 수 있다는 경고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이다.

3) 삶의 참된 가치에 기초한 신앙교육

교육은 가치를 심어주는 일이다. 무엇이 옳은 일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기독교교육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삶의 표준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표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이다. 만약 가치관이 잘못되면 교육의 내용과 실천도 모두 다 잘못된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주체와 교육을 받는 주체 모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회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도 바로 이것이다. 왜 교회교육이 필요한가, 그리고 교회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결국 교회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담임목사는 교회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다음세대의 교육에 대한 실질관심도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다음세대를 향한 목회자의 교육적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시간과 돈이 얼마나 투자되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교육투자 비용은 5% 미만이다. 교육시간 투자는 한 주일에 겨우 20분 미만이다. 왜 그런가? 담임목사의 목회의 초점이 다음세대가 아니라 성인 중심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의 양적 성장과 부흥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량적이고 성공 지향적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다음세대를 위한 진정한 교육은 실현될 수 없다. 교회교육에서 담임목사의 가치관은 거의 절대적이다. 담임목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수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4-14 windows'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14세가 되기 전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말이다. 담임목사도 다음세대 교육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목회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부교역자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한다. 부교역자가 교육부서에서 사역하는 것은 결국 훗날 자신이 담임목사가 되어 장년목회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부서는 그저 거쳐 가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자신이 맡은 교육부서에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 이런 사고와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학교 교육은 성공할 수 없다.

학부모의 가치관 역시 바뀌어야 한다.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성적과 입시에 매몰되어 자녀의 신앙교육은 2순위, 3순위로 내몰린다. 주일과 시험기간이 겹치면 당연히 시험을 선택하고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자녀에 대한 부모의 세속적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교육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학부모 소그룹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교회는 가정 신앙교육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하여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적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담임목사도, 부교역자도, 교사도, 그리고 학부모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스르는 가치관을 소유해야만 다음세대 교육에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다.

4) 신앙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회교육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교회학교 교육의 목적은 이 신앙의 본질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에서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한 것이지만 이것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학교의 교육은 그 철학, 과정, 방법 모두 본질로 돌아가 학생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어야 한다. 교회학교의 프로그램은 바로 이 본질을 세워주는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자신들의 신앙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발달과정상 또래집단의 영향력과 그로 말미암은 또래 압력이 신앙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법도 하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고 응답하였다. 적어도 청소년들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생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나오기 힘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개인적인 이유들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통계 결과를 종합하면 결국 학생들에게 본질을 세워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교회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하도록 돕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사실상 오늘날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하고 새로운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이목을 끌고 주목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만일 이러한 모든 시도들이 학생들의 신앙의 본질을 세워주고 우선순위를 신앙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한다면 새로운 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결국 교회교육의 모든 관심은 다음세대들이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

어야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바른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경 자체에 대한 교육과 교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같은 교리교육이라도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리교육의 방법이 아닌 관계 중심적 소그룹을 통한 교육이 본질을 세워주는 데 보다 효율적인 방식이라 하겠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EPIC small group 방법이다. EPIC은 experiential, participatory, imagery, connected의 약자로서 경험적이고 참여적이며 창조적인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것들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connected)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모든 철학과 과정들을 통해 학생들의 신앙본질을 세워주고 삶의 우선순위를 성경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다.

5) 교사의 탁월한 역량 강화

교사는 교회교육에서 실질적인 의미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장 최전선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생들을 가장 지루하게 만들어 교육적 동기와 참여, 그리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데 실패하는 요인도 바로 교사이다. 학생들이 설교나 공과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교훈들이 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입장에서 설교와 공과는 집에서 하는 엄마의 잔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더군다나 뻔한 스토리를 뻔한 방법으로 전하다보니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는 떨어지고 결국 관심에서 멀어진 학생은 교육을 통한 신앙적 성장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더 이상 교사들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그래서 뻔한 이야기가 아닌 펀(fun)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교사들의 설문을 분석해 보면 교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의 신앙적 역량에 비해 학생 이해 역량과 교수학습 역량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즉 교사가 되었지만 실제로 학생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칠 것인가 하는 실질 역량에서 상당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교회학교는 교사들을 리크루팅(Recruiting)하는 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해야 한다.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노회 혹은 총회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어떻게 가르칠 때 학생들이 더 흥미를 느끼고 의미를 자극할 수 있는지, 학생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깊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키워주는 교사학습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수방법 세미나, 리더십 코칭, 학생 이해 등과 같은 과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또한 공과만 제작하여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의 상황에 맞는 '교육패키지' 를 제공하여 교사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교사교육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삶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한편 펀(fun)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교사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교사의 만족도는 부서의 분위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사들이 같은 부서 내에서 높은 만족도를 가질 수 있는 관계 중심적 소그룹과 리트릿을 활성화해야 하며 또한 교사의 헌신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교사 인센티브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결국 교사 스스로가 더 높은 헌신도와 만족도를 갖게 해야 하고 결국 학생들에게 지루한 이야기가 아닌 재미있는 이야기로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6) 교육사역자들의 전문성 확보

거의 모든 사람들은 블루오션과 레드오션 중에 블루오션을 선택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 블루오션의 바다에서 맘껏 헤엄치기 위해서는 거세게 밀려오는 파도와 거친 싸움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서 외로운 사투를 벌여야 한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사투하다보면 블루오션에서 맘껏 헤엄치는 날이 오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분야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기에 먼저 고난의 바다를 거쳐 온 사람이 모든 것을 선점하게 된다. 이것이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의 부교역자들은 모든 사역자들이 가는 레드오션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 레드오션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다양한 스펙을 쌓으며 애쓰고 있다. 그 경쟁의 승리자는 결국 소위 말하는 좋은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학교가 자신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지금의 교육부서 사역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출 필요도 없고 열정과 에너지를 과도하게 투자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비전문적 사역의 결과가 한국교회 학교의 중요한 쇠퇴원인일지 모른다.

본 연구에서 부교역자들은 교회학교 쇠퇴의 원인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모의 우선순위와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 가장 중요한 쇠퇴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응답을 한 부교역자들 자신은 학생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교육적 전문성과 역량을 구비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 부교역자들은 자신의 교회사역에서 가

장 큰 도움을 주었던 과목이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과목으로 꼽았다. 사역자로서 설교적 역량을 발휘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학습 능력, 학생에 대한 이해, 리더십 기술, 성경 자체에 대한 이해에서는 낮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생들을 직접 지도해야 하는 사역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역자를 길러내는 신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목회학 석사 과정 내에 세부전공제를 두고 있어서 청소년 사역 전공, 어린이 사역 전공, 가족상담 전공, 설교학 전공 등과 같이 이론신학을 실제화 할 수 있는 구조와 전문사역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기본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교육전문가, 청소년상담사, 가족상담사와 같은 전문적인 인재가 배출되어야 한다.

우리의 신학교 체계도 이러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졸업인증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고 이것을 토대로 교육전문가인 교육디렉터를 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교육디렉터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전문사역자들을 위한 급여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교역자로서 자신이 현재 맡고 있는 교육사역을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려는 개인적인 시도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가가 되면 그야말로 블루오션에서 맘껏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7) 신앙가치에 기초한 부모들의 자녀교육 의식변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17세가 될 때까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800시간인 반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2,000시간에 이른다고 한다. 단순하지만 이런 통계조차도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본다.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역시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부모의 의식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을 자기 자녀의 신앙성장과 발달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기대를 채워 주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교회는 자녀들의 신앙을 모두 다 책임질 수 없다. 오히려 가정이 신앙교육의 핵심적인 장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보조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교육의 미래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신앙교육에 큰 관심이 있지만 고등학생으로 진학할수록 부모의 신앙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시험기간에 자신의 자녀가 주일에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학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서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더 선호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적인 지위의 더 나음' 을 위해 '신앙적인 다름' 을 포기하고 있다. 그러나 신앙교육의 핵심은 나음이 아니라 다름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 후에 신앙생활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결국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교육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학부모 교육이어야 한다. 아무리 자녀의 신앙이 좋아도 학부모의 신앙과 세계관이 신앙적이지 않으면 자녀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교회교육의 매우 중요한 한 축으로 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부모코칭이 필요하다.

기독교 가정교육 전문가인 리치 멜하임은 부모의 신앙교육의 방식을 Faith 5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시한다. Faith 5는 Share, Read, Talk, Pray, Bless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함께 나누고(share) 성경을 함께 읽으며(read)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talk) 자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pray) 서로를 축복하는(bless) 것이 부모의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주장한다.

기술적으로는 '밥상머리 교육' 이나 '침상머리 교육' 과 같은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녀들과 대화하고 삶을 나누며 신앙을 지도할 수 있다. 한편 아버지를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로 삼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상당히 많은 경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신앙교육의 주체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버지 기도회나 아버지 학교, 아버지 멘토링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버지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부모의 교사화를 통해 자녀들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바로 나음이 아닌 다름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말이다.

3. 결론

본 연구보고서의 전반부는 고신총회의 주일학교 출석 변화추이에 대한 것을 살폈고, 중반부와 후반부는 구체적인 설문을 통한 변화추이에 따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교회교육에 대한 대안이나 방향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현상적 분석보다는 문헌을 통한 예측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특히 교회교육의 내부 주체들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과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현 실태를 사회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래 방향성에 대한 함의를 기술하였다.

교회교육의 쇠퇴원인은 종합적이다. 담임목사의 교육목회적 철학의 부재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며 그로 인한 교육시스템에도 근본적인 성장한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불가능한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한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도전을 하기 보다는 지금의 체계와 결과에 만족해한다. 이러한 철학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이 한국교회학교 쇠퇴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또한 교육의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교육에 대한 가치도 세속화 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학생들의 우선순위도 더 이상 신앙이 아니다. 교사도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성경교수보다는 식상한 이야기를 한다. 사역자도 교육부서 사역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단지 거쳐 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기르지 않는다. 학부모의 가치관은 이미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음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름을 포기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요인들이 한국교회학교 쇠퇴의 중요한 요인들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고용수. 『하나님 나라와 교육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9.

곽안련. 『한국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1.

김득룡. “주일학교 교육사”. 「로고스」 12 (1966): 54.

김찬목. “교회의 사회적 책임 범주에 관한 실증분석”. 「로고스경영연구」 (2008): 41-64.

김희자. “제2의 주일학교 부흥을 위한 교회교육의 과제”. 「신학지남」 317 (2013): 316-339.

박경순. 『기독교교육행정』. 서울: 기독한교, 2009.

박상진. 『교사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예영, 2010.

박상진. “한국기독교 교육의 미래적 대안과 과제”. 「교회와 교육」 200, (2013): 66-83.

박상진. “다음세대 교회교육 현황의 진단과 미래전망”, 「목회와 신학」318(2015): 73-75.

박흥철. 『변화하는 교사 새로워지는 주일학교』. 서울: 영문, 1998.

배상률.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과 교육.”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춘계발표」 (2014): 15-31.

신국원. “해체의 문호와 샬롬의 영성 : 포스트모던의 기독교교육비전”. 「기독교교육정보」. (2013): 45-69.

이대웅. “교회학교 학생들, 교회 안나오는 진짜 이유는?”. 「크리스천투데이」 (2008년 10월 23일).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196283.

이영규. “저출산문제, 대한민국 명운걸고 해결해야”. 「아시아경제」 (2015년 2월 10일).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21011171890590;

이현주. “청소년 절반이상 종교는 중요”. 「아이굿뉴스」 (2014년 7월 1일),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595

임도빈. “질적연구방법의 내용과 전략: 양적인 질적연구와 질적인 질적 연구”. 「정부학연구」 15/1 (2009): 155-187.

전성표. “개신교인과 무종교인 사이의 도덕상차이와 개신교인의 도덕성에 미치는 종교적 영향”. 「한국사회학」34 (2000): 1069-1104.

조민규. “저출산 대한민국”. 「쿠키뉴스」 (2015년 1월 29일),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091326&code=46111201&cp=nv.

조성국. “한국교회 위축현상의 거시적 원인분석과 대응적 교육방안 모색”. 「복음과 교육」 11 (2012): 11-34.

조성국. “현대 한국교회교육 위기의 근본원인과 혁신 방향”. 「교회와 교육」 195 (2012): 6-18.

조성돈.『목회사회학: 현대사회속의 기독교회와 생활신앙』. 서울: 도서출판 토라, 2004.
최윤식, 최현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편집국. "대화끊긴 가족밥상 밥상머리교육 실태". 「Doctor W」. (2012년 11월 16일). http://www.doctor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94
한춘기. "한국기독교교육의 역사적 특징", 「교회와 교육」 200 (2013): 22-30.
함영주. "기독교청소년의 교육생태체계와 영적발달의 상관성연구". 「개혁논총」 28 (2013): 281-312.

(제67회 총회회순 끝.)